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363-10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추진단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Ⅰ. 개요 ····· 3
Ⅱ. 사업 주요내용 ····· 9
Ⅲ. 추진체계 ····· 14
Ⅳ. 사업수행절차 ····· 16

제2장 사업자 선정 방법

Ⅰ. 사업신청방법 ····· 19
Ⅱ. 참여기관 선정방법 ····· 23

제3장 고혈압 관리 서비스 제공

Ⅰ. 환자등록 ····· 27
Ⅱ. 케어플랜 수립 ····· 30
Ⅲ. 환자 관리 ····· 38
Ⅳ. 점검 및 평가 ····· 42

제4장 당뇨병 관리 서비스 제공

Ⅰ. 환자등록 ····· 45
Ⅱ. 케어플랜 수립 ····· 48
Ⅲ. 환자관리 ····· 55
Ⅳ. 점검 및 평가 ····· 59

제5장 전산시스템

Ⅰ. 요양기관용 ····· 63
Ⅱ. 지역사회 연계기관 ····· 89

제6장 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Ⅰ. 요양급여 기준 ····· 111
Ⅱ. 산정지침 ····· 112
Ⅲ.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114
Ⅳ. 청구 원칙 ····· 115
Ⅴ. 명세서 작성요령 ····· 116
Ⅵ. 보완 및 추가청구 ····· 118

제7장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지침

Ⅰ. 사업 개요 ····· 121
Ⅱ. 사업 운영 ····· 123
Ⅲ. 시범사업 지역 및 참여기관 ····· 127
Ⅳ. 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 ····· 128

제8장 자주 묻는 질문

Ⅰ. 전산시스템에 대한 내용 ····· 135
Ⅱ. 급여청구 등에 대한 내용 ····· 137
Ⅲ. 검진바우처 이용에 대한 내용 ····· 144
Ⅳ. 기타 사항 ····· 148

제9장 부록

부록 1. 사업 참가 신청서류 ····· 151
부록 2. 사업 관련 서류 ·····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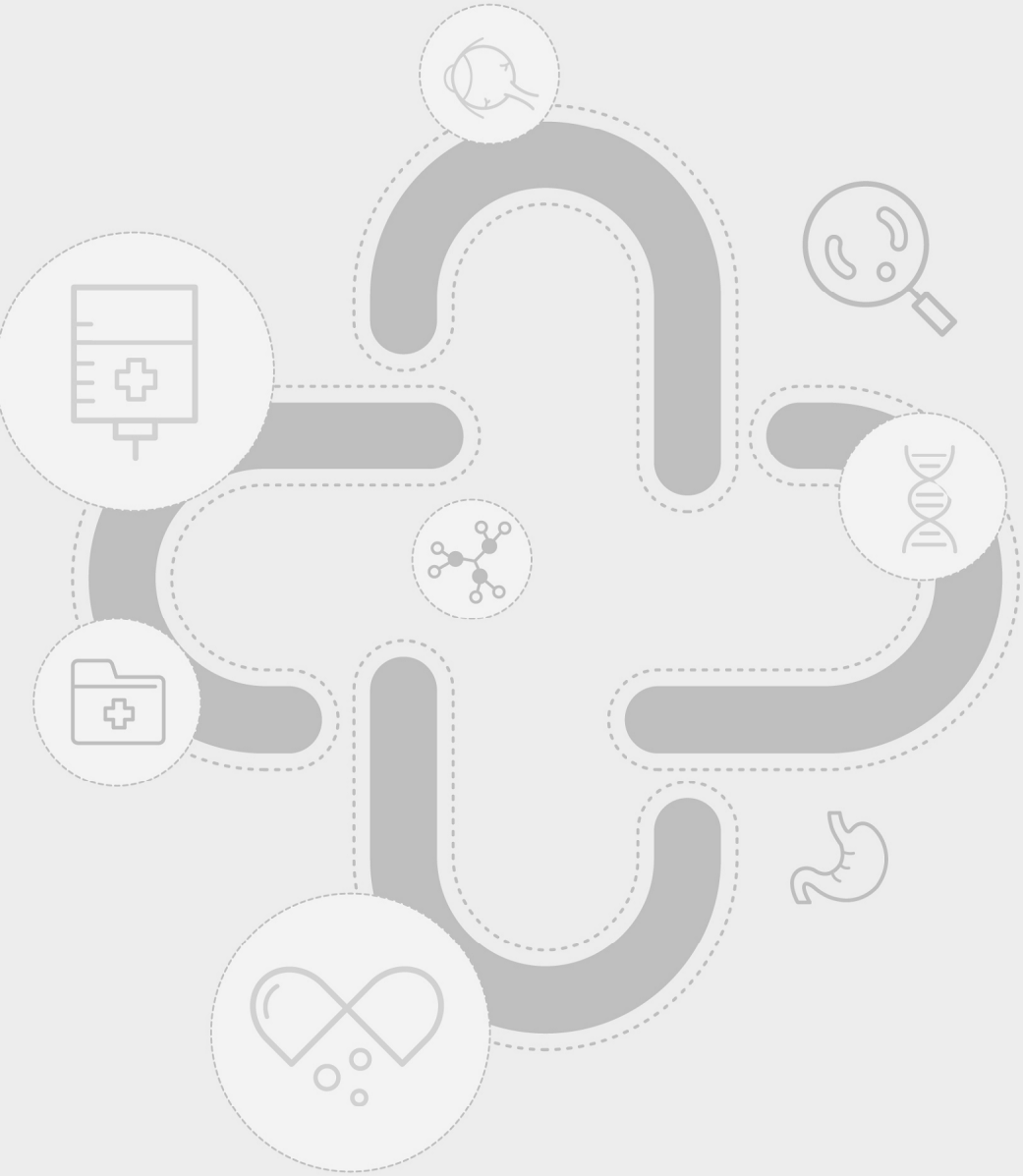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Chapter 01

사업 개요

Ⅰ. 개요
Ⅱ. 사업 주요내용
Ⅲ. 추진체계
Ⅳ. 사업수행절차

Chapter 01

사업 개요

Ⅰ 개요

1.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 심각**

- 만성질환자는 약 1,730만명(전체 인구의 33.6%), 만성질환 진료비는 28.2조원(고혈압·당뇨병 5.3조원)으로 전체 진료비(69조원)의 41%임

  * 만성질환진료비 비중(건보) 26.8%('03) → 32.9%('07) → 41.0%('17)

● 만성질환 중 **고혈압 및 당뇨병의 진료비 증가 추세**

- 생활환경의 변화, 비만율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및 당뇨병의 환자수 증가 보다 진료비 증가가 더 가파르게 증가함
- 고혈압 및 당뇨병의 진료비는 '17년 5조 3,363억원으로 규모로 '10년에 3조 8,420억원에 비해 38.9%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고혈압은 3.2%, 당뇨병은 7.4% 진료비가 증가 추세임

표 01 2010년-2017년 만성질환 진료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구 분	진료실인원(천 명)					진료비(억 원)				
	2010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연평균	2010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연평균
계	14,025	16,790	17,297	3.0	3.0	168,106	260,447	282,813	8.6	7.7
고혈압	5,133	5,899	6,054	2.6	2.4	24,904	30,177	31,124	3.1	3.2
당뇨병	2,019	2,704	2,863	5.9	5.1	13,516	20,434	22,239	8.8	7.4
심장질환	1,038	1,389	1,458	5.0	5.0	12,924	20,666	23,396	13.2	8.8
대뇌혈관질환	746	902	921	2.1	3.1	16,086	25,279	25,915	2.5	7.0
악성신생물	960	1,435	1,513	5.4	6.7	38,055	59,247	66,224	11.8	8.2
간의질환	1,522	1,607	1,627	1.2	1.0	6,089	9,456	9,797	3.6	7.0
정신 및 행동장애	2,167	2,786	2,924	5.0	4.4	18,826	34,161	37,091	8.6	10.2
호흡기결핵	89	68	60	-11.8	-5.5	902	1,229	1,353	10.1	6.0
신경계질환	2,340	2,918	2,974	1.9	3.5	10,038	19,684	22,796	15.8	12.4
갑상선의 장애	1,024	1,264	1,299	2.8	3.5	2,019	2,921	3,127	7.1	6.4
만성신장병	97	191	206	7.9	11.4	10,731	16,914	18,126	7.2	7.8
관절염	3,907	4,636	4,709	1.6	2.7	14,018	20,279	21,625	6.6	6.4

●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질환 관리수준 저조**

- 30~49세 젊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 고혈압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이 모두 50% 미만이며, 당화혈색소 8.0% 이상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는 20.9%, 당뇨병 환자 중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모두 조절되고 있는 환자는 8.4%에 불과함

  *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 관리 미흡(혈압관리율 46%, 혈당관리율 14%)

-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효율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으로 50대 성인의 고혈압 관리대책 및 당뇨병 환자의 치료율과 조절률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경증 만성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개선기반 마련** 필요

-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일차의료의 역할이 미흡하여, 경증 만성질환자 상당수가 의원급이 아닌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외래 만성질환 진료비 중 **의원급 비중감소**(41.6%('07) → 38.3%('14) → 37.8%('16)

-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입원비중*이 높고, 당뇨병 환자의 입원 기간이 길어** 일차의료시스템 개선과 일차의료 질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됨

  * (OECD 평균) 인구 10만명 당 고혈압 78명, 당뇨병 137명,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고혈압 130명, 당뇨병 281명

  ** (OECD 평균) 당뇨병 8.1일, (우리나라) 당뇨병 16.5일

2. 그 간 만성질환 시범사업의 추진경과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07.9월 대구광역시에서 시범사업 시작*

- ('09) 광명시 참여 → ('10) 경기 남양주시 등 4개소(3개 지역) 추가 → ('12) 서울 성동구 등 20개소(15개 지역) 추가

  * '10년 대구광역시 사업종료

  * 현재 전국 25개 보건소(국비 50%), 6개 보건소(지방비 100%)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12년 4월 시행 → '17. 12월 7,782개 의원 참여 → '18.6월 7,804개소 참여

  * 사업참여율 ('17) 59.3% → ('18) 58.4%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4.3월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시작 → '17.11월 16개 지역**으로 확대, 행위별 서비스 비용 지불체계 변경***

*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 13개 지역 추가 선정, 전북 무주군 사업종료
*** 공단 사업비 → 건강보험 수가

- ('14) 건강동행센터 4개소 → '18.5월 건보공단 일차의료 지원센터 설치 운영(7개소)

●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 '16. 9월 시범사업 시작, 전국 1,870개 의원 참여 → ('17.10월) 1,165개소(41,702명) → ('18.7월) 1,173개소(51,000명)

- ('16.6월) 시범사업 도입 건정심 보고 → ('17.5월) 급여 포털 연계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동네의원의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사업 장점을 연계한 통합모형 마련, '18년 12월 서비스 제공 준비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의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및 의료계 중심의 **실행위원회** 구성·운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근거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17.5월)
-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① 지역사회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3. 사업목적 및 목표

● **사업목적**

- 고혈압 및 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만족도 증가 및 **의료전달체계 효율화**에 **기여**
- 근거기반 진료지침(Evidence-based Practice Guideline)에 따른 치료를 통해 **조절률**을 **향상**시키고, **합병증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예방**

● **사업목표**

- 근거 기반 진료지침에 따른 환자 진료 및 관리 적용 확대
- 의사와 케어 코디네이터 간 team-approach 활성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확대
-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
- 동네의원 진료환자의 고혈압 및 당뇨병 조절률 향상

그림 0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전략 체계도

4. 기본방향

- 기존 4개의 만성질환 관련 시범사업*의 모델, 재정, 전산에 대한 통합 모델 구축 및 운영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1단계('18~'19년) 통합
  - '19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20년 서비스 제공 예정

- **(질환별 서비스 모형 분리)** 근거 기반 포괄적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 프로토콜을 분리하여 모형 개발**

  * '18년도는 서비스 콘텐츠 등 내용 분리,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고혈압과 당뇨병 프로토콜 분리 예정

-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의사-케어 코디네이터 등 팀 협력(team approach)을 통한 환자관리 활동 강화

5. 기존 시범사업 대비 개선사항

●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모델 개발

	기존 시범사업 문제점		시범사업 개선사항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 케어플랜 수립 이후 지속적인 환자 관리 부재 • 생활습관 관리 및 교육을 위한 인프라 접근성 한계 • 교육 제공 프로세스의 획일화 •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 및 활용성 부족 • 합병증 관리체계 및 타 의료기관과의 협진체계 부재	➡	• 환자관리 활동 강화 및 구체화 • 환자관리료 수가 도입 • 보건소·공단 연계 체계 구축으로 접근성 제고 • 교육 제공 프로세스의 현장 활용성 및 자율성 강화 • 환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 합병증 관리를 위한 활동 구체화 • 체계적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검진바우처 제공 등 환자 인센티브 제공 • 대상자관리를 통해 사업 중복 해소 및 만성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 비대면 관리의 한계로 지속관리율 저하 •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 부재 및 활동의 구체성 모호 • 의원 대상 평가체계 부재로 서비스 질 관리 미흡 • 지역자원과의 연계 체계 부재		
총괄	• 환자 인센티브 부재 • 대상자의 사업 중복참여		

Ⅱ 사업 주요내용

1. 사업 대상 및 참여조건

- **(사업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범사업 지역 고혈압·당뇨병 신규환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및 기존 시범사업 등록자
  * 환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중복참여 불가

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프로세스

① **환자 등록** → ② **케어플랜 수립** → ③ **환자관리**(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등) → ④ **점검 및 평가**

- **(케어플랜 수립)** 포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년간의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 **(환자관리)** 환자의 체계적 질환관리를 위해 **내소진료 F/U**, **환자관리모니터링***, **교육, 상담,**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실시
  * ① 혈압 및 혈당 수치 ② 약물복용 여부 및 부작용 ③ 합병증 발생 유무 ④ 생활습관 목표 달성 추이
  - **(교육)** 교육수행 방법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해 10분 단위의 교육 콘텐츠를 **조합하여 환자에게** 제공
  - 환자관리 내용은 전산 시스템에 기록하여 의료진(의사와 케어 코디네이터) 간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의**
- **(점검 및 평가)** 환자의 관리계획 이행정도 및 질환관리 상태를 점검·평가

그림 0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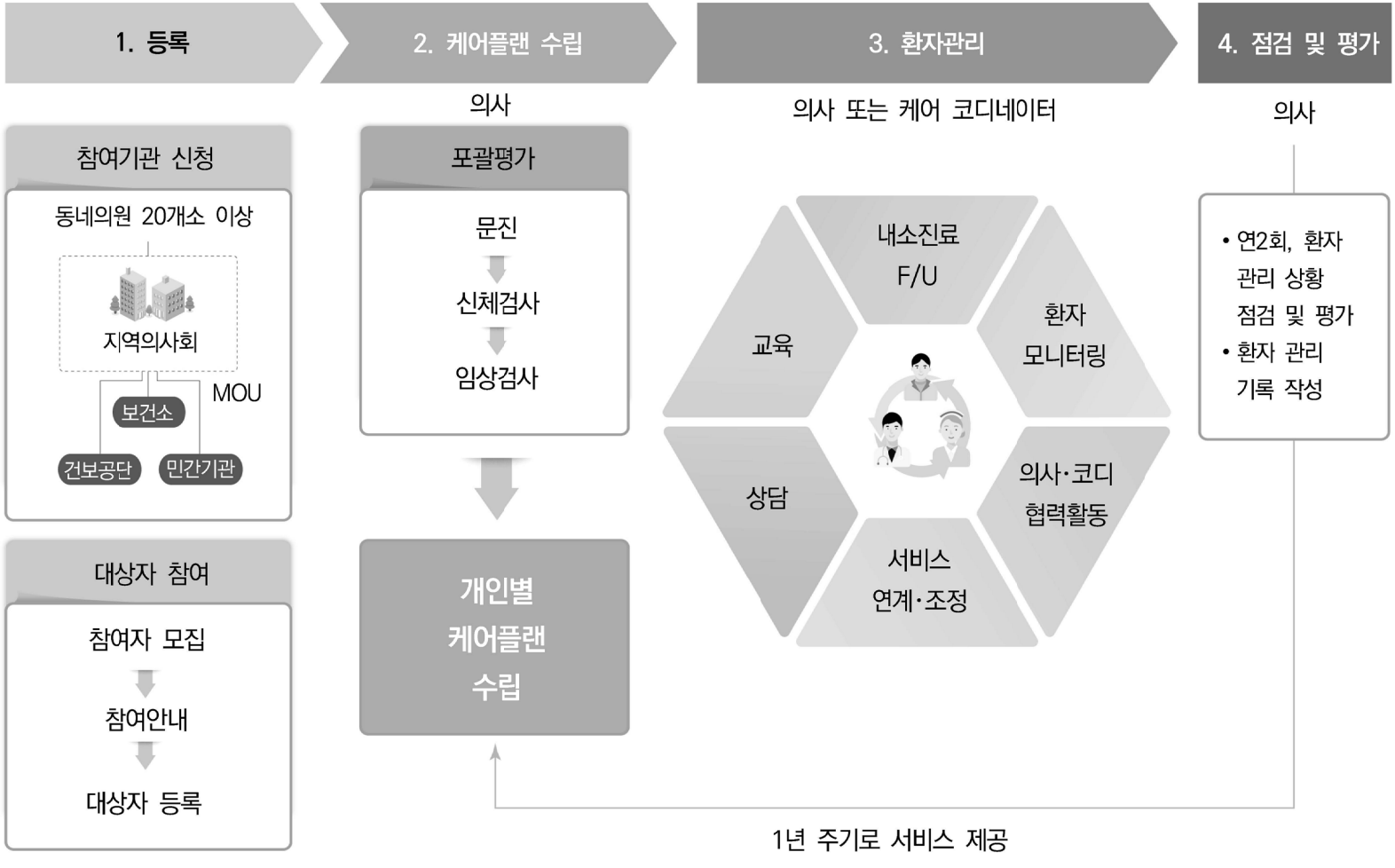

그림 03 시범사업 간 서비스 비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4~'18.12)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9.초~)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16~'18.12)
[케어플랜 수립] • 1년 단위	[케어플랜 수립] • 1년 단위, 항목 조정·개편	[케어플랜 수립] • 1개월 단위
[교육상담] • 기본교육 (연8회, 각 10분 이상)	[교육상담] • 초회교육·상담(연1회, 30분 이상) • 기본교육·상담(연8회, 각 10분 이상) • 집중교육·상담(연1회, 30분 이상)	
	[환자관리] • 환자 모니터링(혈당/혈압/콜레스테롤 수치, 약물복용 등) • 대면/비대면 환자관리 • 서비스 연계·조정 • 의사·코디 협력활동	[환자관리] • 환자 모니터링 (혈당/혈압 수치 등) • 비대면 환자관리 (앱, 문자, 전화, 메일)
[점검평가] • 참여중단자 대상 • 계획이행, 건강상태 점검	[중간점검 및 평가] • 환자관리상태 기록 • 케어플랜 변경 가능	

3. 케어 코디네이터 운영모델

● 시범사업 모형 : 2개 모델 중 참여의원에서 자율 선택

【모형1】 의원 내 케어 코디네이터 직접 고용

- 동네의원에서 케어 코디네이터를 직접 고용하여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

  * **케어 코디네이터 자격기준**
    - 간호사,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케어 코디네이터로 등록한 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케어 코디네이션 교육과정 이수 필요)

【모형2】 의사 직접 서비스

- 환자관리 업무, 질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등을 모두 의사가 직접 수행

그림 0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케어 코디네이터 운영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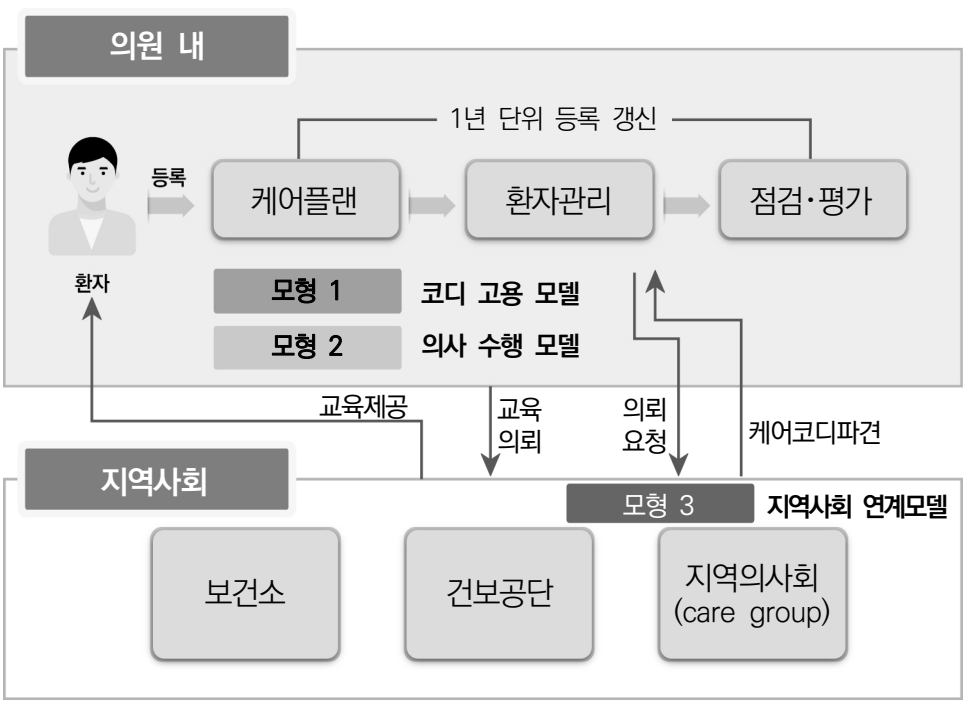

※ [모형 3] 지역사회 연계 케어 코디네이터 운영모델은 '19년 모델 개발

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수가

- **(수가 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 3가지 항목으로 수가 적용
- **(환자 본인부담률)** 환자관리 수가를 제외한 케어플랜수립, 교육, 상담, 점검 및 평가 수가의 경우 건강보험 내 단계적인 진입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10%**로 산정

  * 환자관리료의 본인부담금은 면제

5. 환자 인센티브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환자 대상 **맞춤형 검진 바우처** 제공

  * 맞춤형 검진바우처는 '제7장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지침' 참조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질환별 해당 검사항목 검사 실시 (시범기간 내 1회)

표 02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 항목

구 분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 + 당뇨병
검사항목	심전도, 포타슘(K), 소디움(Na)	미세알부민뇨, 안저검사*, 당화혈색소	심전도, 포타슘(K), 소디움(Na), 미세알부민뇨, 안저검사, 당화혈색소

* 안저검사는 시범사업 지역 내 안과의원에서 검사 가능

Ⅲ 추진체계

1. 사업 추진 체계도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사업기반 조성 및 지원
- 시범사업 참여지역 선정 및 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 및 서비스 개발
- 사업지침 개발 및 보급
- 시범사업 운영 및 기술지원
- 등록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 참여의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환자 관리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확산
- 시범사업 평가 체계 개발 및 적정성 평가

지역의사회

- 사업 참여의원 모집 및 사업 운영 관리
- 지역 내 보건자원과 연계 협약 체결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시범사업 결과 모니터링 및 성과 환류

동네의원

- 고혈압, 당뇨 환자 대상 참여 안내 및 홍보
- 케어플랜 수립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타 의원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협력
- 요양급여 청구 신청 및 정보시스템

2.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총괄 및 지원
- **(지역의사회)** 사업 참여 의원 관리, 연수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의사 및 참여인력 역량 강화, 효과적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원 간 연계협력 계획 수립
  - 해당 지역 내 안과 등 타 의료기관, 검진기관, 상급병원과의 협업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과의 연계
  - 지역의사회 차원의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 등
- **(동네의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델 개발 및 관리**

3. 연계협력기관

- **(보건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지원, 지역사회 만성질환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 시·군·구 고혈압, 당뇨병 관리 목표 및 전략 수립
  - 지역의사회 및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등과 고혈압, 당뇨병 관리 운영위원회 지원
  - 만성질환자 교육을 위한 시설·인력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거나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지원
  - 보건소,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과 연계·협력 및 지원
  - 시·군·구별 만성질환관리 모니터링 및 지표 산출 지원 등
- **(그 외 연계협력기관)**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관련 시설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자 지지그룹 구성·운영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지역간호사회, 지역영양사회, 기타 민간기관 등

Ⅳ 사업수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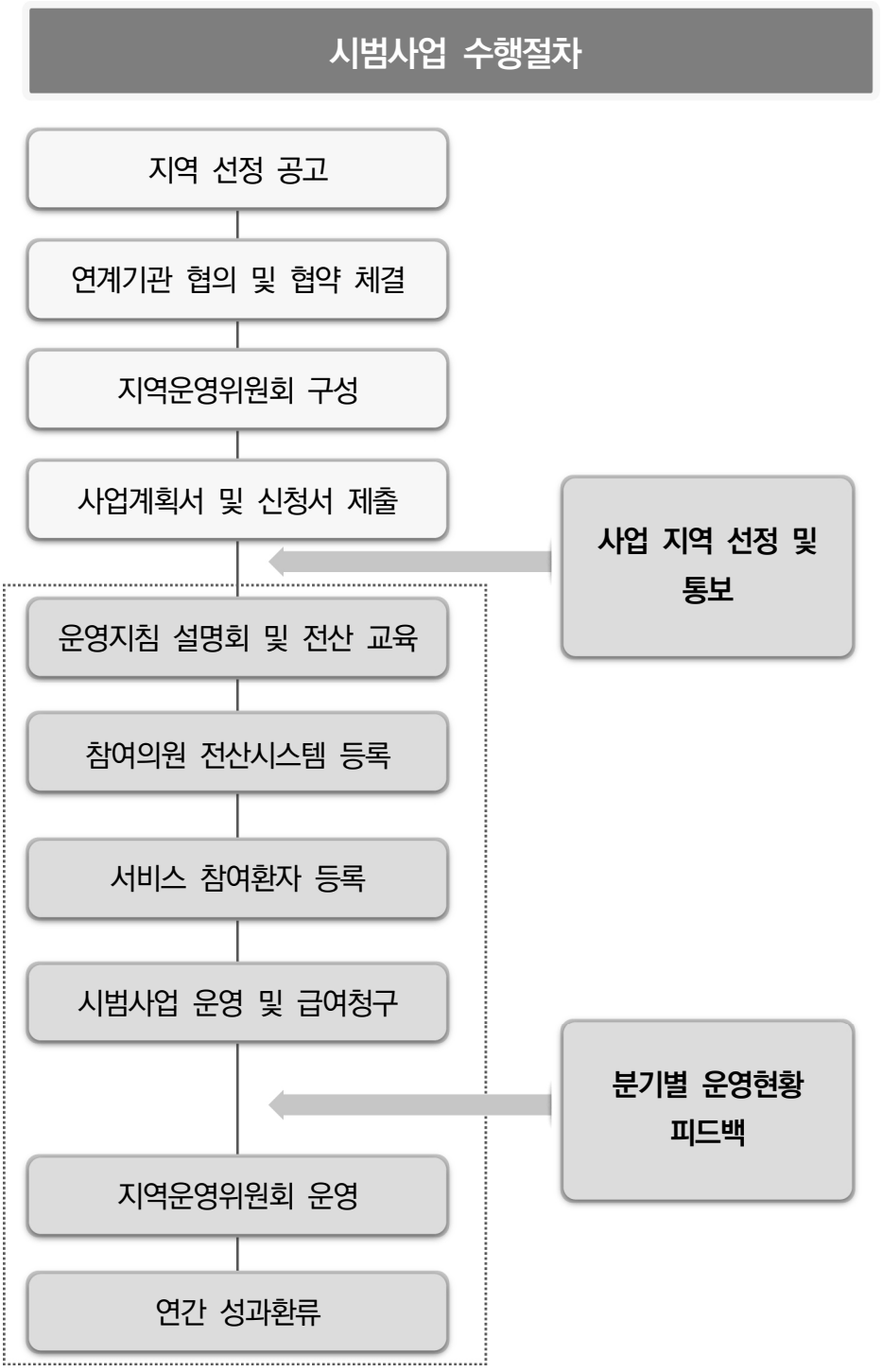
시범사업 수행절차
지역 선정 공고
연계기관 협의 및 협약 체결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사업 지역 선정 및 통보
운영지침 설명회 및 전산 교육
참여의원 전산시스템 등록
서비스 참여환자 등록
시범사업 운영 및 급여청구
분기별 운영현황 피드백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연간 성과환류

Chapter 02

사업자 선정 방법

Ⅰ. 사업신청방법

Ⅱ. 참여기관 선정방법

Chapter 02

사업자 선정 방법

Ⅰ 사업신청방법

1. 사업자 선정 절차

추진절차		주관 기관
사업 공고	사업 참여 신청 안내 (공문 및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연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지역의사회·연계기관
사업신청서 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지역의사회
사업신청지역 선정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통해 참여지역 선정	보건복지부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사업참여지역 통보	최종 참여지역 통보	보건복지부

2. 사업 참여 대상지역

- **(의원 참여조건)** 지역의사회가 관할 지역 20개 이상의 의원을 모집하고,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네트워크 구축 후 시군구 단위로 사업 신청
  - 의원 당 등록 환자수 : 최대 300명
    - * 시범기간에 한해 의원 당 등록 환자수 제한하나 시범기간 동안 사업결과 분석 등을 통해 의원 당 환자 관리수 근거 마련 후 제시 예정
    - * 2인 이상의 의사가 공동개원한 의원의 경우에도 의원별 최대 300명까지 등록 가능
- **('18년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지역(89개) 중 참여희망 지역

표 03 '18년도 사업참여 대상 지역

시·도	시·군·구 명
서울 (23개소)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부산 (8개소)	금정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연제구, 해운대구
대구 (6개소)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 (4개소)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대전 (4개소)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광주 (5개소)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울산 (3개소)	남구, 동구, **중구**
경기 (15개소)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평택시
강원 (1개소)	원주시
충북 (3개소)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전북 (4개소)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전남 (5개소)	광양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경북 (6개소)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영천시, **포항시**
경남 (1개소)	창원시
제주 (1개소)	**제주시**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지역(12개)은 지역명에 진하게 표기되어 있음

3. 참여 신청방법

- **(공고방법)** 보건복지부(www.mohw.go.kr)·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및 접수방법 안내

- **(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닥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http://hi.nhis.or.kr/main.do) 접속 → '건강동행 닥터원' 배너 클릭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참여 신청 가능**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화면〉

【초기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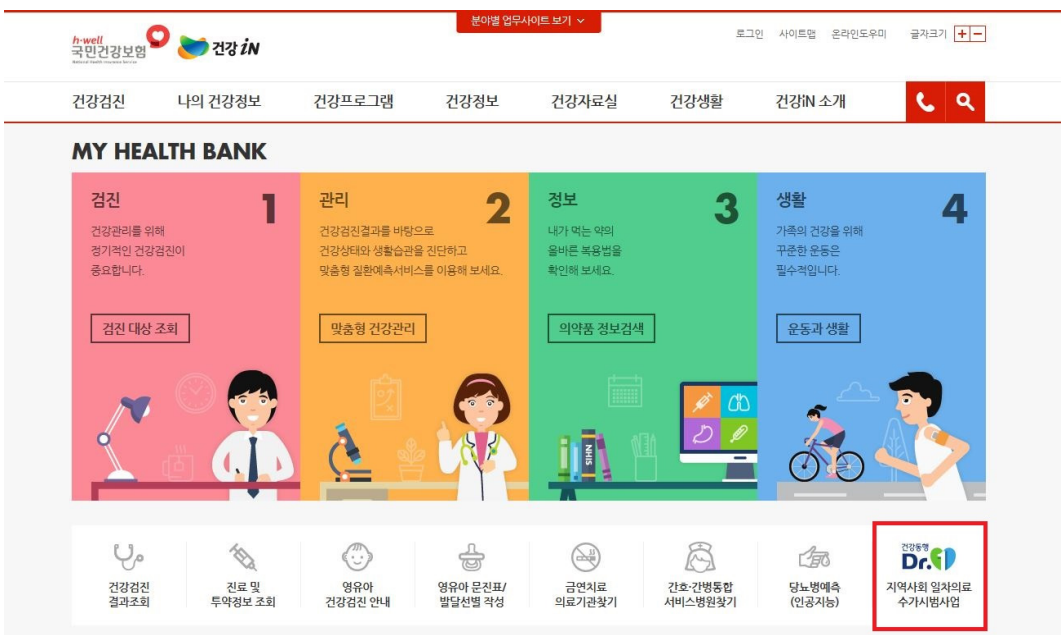

※ 향후 홈페이지 화면이 변경될 수 있음

【등록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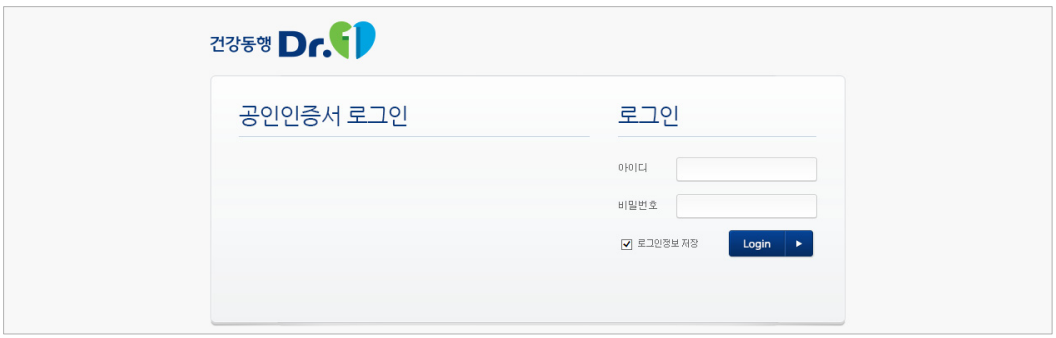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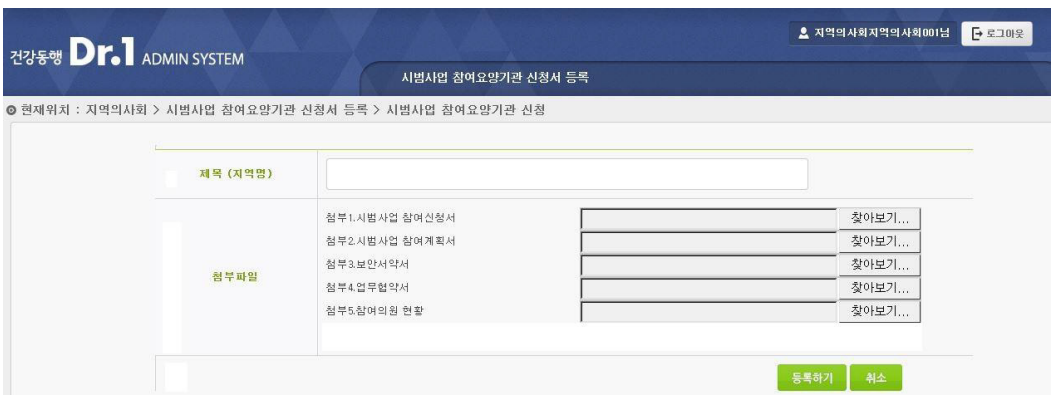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외 4부

항목	파일형태
(첨부파일1)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한글파일
(첨부파일2) 시범사업 참여 계획서	한글파일
(첨부파일3) 업무협약서	한글 또는 PDF 파일
(첨부파일4) 보안서약서(지역의사회장)	한글 또는 PDF 파일
(첨부파일5) 참여의원 현황	한글 또는 엑셀 파일

Ⅱ 참여기관 선정방법

1. 선정방법

- **(심사방법)** 지역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
- **(평가위원)** 지역선정심사위원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 예정
- **(심사기준)** 평가위원 점수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역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1.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지역 만성질환관리 목표 및 추진방안 - 사업 준비의 충실성, 적정성, 담당자 지정 등 추진체계	20점
2.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 방안	-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한 연계기관 확보 및 사전 협의 여부 - 연계방식과 협력체계, 의뢰체계 등 운영 계획의 적절성	20점
3. 지역사회 내 협력 방안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협력기관 간 모니터링, 평가, 환류, 질 개선 역할분담	30점
4. 사업 추진의지	- 환자관리 지원인력(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활성화 노력 - 환자관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 지원 인력, 예산 등 확보 여부 - 지역 보건사업과 연계 방안 마련 여부	30점
총계		100점

2. 선정결과 통보

- **(통보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결과 발표 게시, 해당 지역 의사회 및 보건소로 최종 승인 통지 공문 발송
- **(통보일정)** 선정심사 후 1주일 이내 통보

* 심사결과 통보 시 사업운영지침(전산시스템 활용 안내 포함) 설명회 일정 공지 예정

3. 선정지역 의원 참여방법

-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지침·전산시스템 설명회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의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로그인 후 '일차만성질환' 메뉴에서 '참여기관신청'을 통해 의원참여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서명하여 최종제출

  * 해당 서류 제출 이후 업무 메뉴 접속이 가능함, 관련내용은 5장 전산매뉴얼 참고

Chapter 03

고혈압 관리 서비스 제공

Ⅰ. 환자등록
Ⅱ. 케어플랜 수립
Ⅲ. 환자 관리
Ⅳ. 점검 및 평가

Chapter 03

고혈압 관리 서비스 제공

Ⅰ 환자등록

의원방문	대상자 확인	사업 참여안내	참여신청	대상자 등록
	• 고혈압 환자 진단 또는 확인	• 사업내용, 참여 방법 등 설명	•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 전산 시스템에 환자정보 등록

1. 대상자 확인

● **(사업대상)** 고혈압(질병코드 I10~13, I15)으로 진단된 환자

* 고혈압과 당뇨병 둘 다 동반한 경우 당뇨병 프로세스에 따름

- (신규진단 환자) 처음 고혈압 진단 받은 환자

  * 가면고혈압, 백의고혈압을 평가하는데 가정혈압, 활동혈압 또는 진료실자동혈압을 측정할 수 있음

- (기 진단 환자) 과거에 고혈압을 진단받아 치료 중인 환자

  *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환자도 신규 등록 필요

표 04 혈압의 분류

혈압 분류	수축기혈압(mmHg)		이완기혈압(mmHg)
정상혈압*	< 120	그리고	< 80
주의혈압	120~129	그리고	< 80
고혈압 전단계	130~139	또는	80~89
고혈압 1기	140~159	또는	90~99
고혈압 2기	≥ 160	또는	≥ 100
수축기 단독 고혈압	≥ 140	그리고	< 90

* 심뇌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혈압

표 05 측정 방법에 따른 고혈압의 진단 기준

측정 방법	수축기혈압(mmHg)	이완기혈압(mmHg)
진료실혈압	≥ 140	≥ 90
24시간 활동혈압		
하루 평균혈압	≥ 130	≥ 80
주간 평균혈압	≥ 135	≥ 85
야간 평균혈압	≥ 120	≥ 70
가정혈압	≥ 135	≥ 85
진료실자동혈압	≥ 135	≥ 85

2. 사업 참여안내

- **(사업설명)** 사업 내용*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참여 권유
  - 제공 서비스, 참여방법,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설명 포함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방안

- 기존 참여자 연계 : 기존 사업 종료 안내문 발송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 홍보 및 참여 안내문 발송
- 신규 참여자 발굴 : 신규 확진된 대상자(1일 이상 약제처방 등) 및 참여의원에 다니는(6개월 이상 내원) 환자에게 서비스 내용 등 신규 사업 홍보 및 참여 안내문 발송

3. 환자 참여신청

- 참여 의사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방법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내용에 대한 안내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 스마트폰이 있는 환자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바로 서명 가능하며,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작성하여 해당의원에서 보관

    * 환자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부록 2, 별지 제8호 서식(p.167)' 참고

4. 대상자 등록

- 환자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시범사업 전산 시스템에 등록
  * 환자등록 화면 '제5장 전산시스템' 참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원의 시범사업 대상자 등록 절차 안내사항

•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사업 참여의원의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자 여부 확인 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신규환자로 등록
-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사업 참여자의 경우 본 시범사업과 중복등록이 불가하며,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참여 환자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사업에서 불참 처리해야 함

- **(등록종료)** 아래의 등록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종료 처리함
  - (종료사유) 서비스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사망한 경우
    *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또는 타 의료기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환자가 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등록하는 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신규 등록여부 확인 후 등록해야 하며, 기존 의원에서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종료 처리됨
  - 환자가 6개월 이상 의원 미 방문 시 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연락하여 등록 종료여부를 확인해야 함

Ⅱ 케어플랜 수립

포괄평가			케어플랜수립
문진	신체검사	임상검사	
• 병력 청취 • 생활습관 평가	• 신체계측 • 혈압측정 • 합병증 확인	• 혈액검사 • 소변검사 • 합병증 검사	• 혈압목표 설정 • 생활습관목표 설정 • 치료 및 관리계획 수립

1. 포괄평가

1) 문진

- **(과거 및 현재 병력)** 고혈압 관련 병력 확인
  - 과거 진단자의 경우 고혈압 유병기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 여부, 혈압 조절 여부를 확인함
-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 고혈압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 진단여부 확인

고혈압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

- 뇌질환 :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혈관성 치매
- 심장질환 :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 혈관질환 : 대동맥질환(대동맥 박리, 협착, 확장), 말초혈관질환
- 신장질환 : 만성콩팥병(3기 이상)
- 대사질환 : 이상지질혈증
- 안과질환 : 고혈압성 망막증

- **(가족력)** 부모·형제·자매 중에 고혈압 진단 또는 심뇌혈관질환 진단 환자(남자 55세 미만, 여자 65세 미만) 유무 확인

● 이차성 고혈압 여부 확인

이차성(저항성)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

- 이뇨제를 포함한 3제 병용요법을 충분한 용량으로 사용 중에도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 안정적으로 혈압이 유지되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 경우
- 30세 이전에 비만하지 않고 고혈압의 가족력이 없는 고혈압의 경우
- 악성 고혈압인 경우 (180/120 mmHg 이상)
- 심한 고혈압과 함께 말초 장기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망막 출혈 또는 유두부종, 심부전, 신경학적 손상, 급성 신부전)
- 저칼륨혈증 또는 대사성 알칼리증이 동반된 고혈압인 경우
- Renin-angiotensin system blocker (ACEI, ARB) 사용 중에 발생하는 신기능 저하 또는 고칼륨혈증이 있는 경우

● **(우울증)** 우울장애 여부에 대해 평가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2(PHQ-2)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표 06 PHQ-2 항목형 측정도구

문항 (최근 2주간)	기록
생활에서 즐거움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가?	☐ 예 ☐ 아니오
기분이 우울한가?	☐ 예 ☐ 아니오

● **(약물복용력)** 혈압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고혈압 약물 처방 시 고려해야 할 약물 복용력 확인

고혈압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약물 복용력

☐ 스테로이드성 약제 ☐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 면역억제제 ☐ 항응고제
☐ 항혈소판제제 ☐ 항우울제 ☐ 항히스타민제 ☐ 피임약
☐ 여성호르몬 ☐ 부신 스테로이드 호르몬 ☐ 한약제 (감초, 마황)

● **(생활습관)**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파악

- (흡연) 평생 흡연 여부, 흡연한 경우 흡연력에 대해 확인함

• 비흡연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미만으로 피웠거나 전혀 피우지 않은 경우
• 현재 흡연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도 피우는 경우
• 과거 흡연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으나 현재에 피우지 않는 경우
• '과거 흡연'의 경우 금연 시점(OO 년 전)을 조사함
• '현재 흡연'과 '과거 흡연'의 경우는 흡연력(하루 평균 OO갑 x OO년)을 조사함

- (음주) 현재 음주 여부와 음주력을 확인함

• 비음주 :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주 1회 미만으로 마시는 경우
• 현재 음주 : 평균 주1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경우
• '현재 음주'인 경우 평균 음주 빈도(주 OO회)와 한번 마실 때 음주량(OO잔)을 조사함
  * 소주1잔, 맥주1잔(200cc 기준), 양주1잔 등은 동일한 양의 알코올을 포함하므로, 혼합하여 드시는 경우 마시는 잔의 총합으로 표기함

- (식이/영양) 식이습관에 대해 평가하며, 영양사를 통해 영양평가 및 진단 가능함

• 불규칙한 식사 : 식사 횟수가 불규칙하거나,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
•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 : 식사량이 많거나, 주2회 이상 튀김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 짜게 먹는 식습관 : 국이나 찌개 섭취 시 국물 위주로 섭취하거나 또는 소금을 첨가하는 경우, 주1회 이상 젓갈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 (신체활동/운동) 평소 운동여부, 운동의 종류, 강도 등을 평가하며, 운동처방사를 통해 체력측정 및 진단 가능

• 운동여부 : □ 운동하지 않음 □ 불규칙한 운동 □ 규칙적 운동(주3회 이상)
• 운동종류 : □ 걷기 □ 유산소 운동(조깅, 수영, 빠르게 걷기 등) □ 근력운동(뎀벨 등)
• 1회 운동 시 운동 강도 : □ 150분/주 이하 □ 150-180분/주 □ 180분/주 이상

- (수면) 수면무호흡증 진단, 코골이, 또는 주중 졸림 현상 등 수면 장애 여부를 확인함

2) 신체검사

-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혈압** 및 맥박 측정, 이차성 고혈압 감별 및 표적장기 손상 평가
  - 혈압 측정은 대한고혈압학회 권고를 참고하여 올바르게 측정함

대한고혈압학회 권고사항 : 진료실 혈압 측정 방법

- 혈압 측정 전 최소 5분 동안 안정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측정한다.
- 혈압 측정 30분 이내에는 흡연,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 1~2분 간격을 두고 적어도 2번 이상 혈압을 측정한다.
- 커프 내의 공기주머니의 길이는 위팔 둘레의 80~100% 이상을 감을 수 있고 너비는 위팔 둘레의 40%가 되어야 한다. (성인의 표준크기 : 너비 13cm, 길이 22~24cm).
- 위팔을 심장 높이에 위치시키고 커프 아래에 3cm의 공간을 확보하여 커프를 감는다.
- 처음에는 양팔에서 혈압을 측정한 뒤, 혈압 수치가 더 높은 팔을 다시 측정한다. 이후에는 높은 팔을 기준으로 혈압을 측정하도록 한다.
-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맥박에 따라 혈압이 변하므로 3번 이상 측정하여 평균을 구한다.

  - 이차성 고혈압 감별 또는 무증상 장기 손상 평가를 실시함

이차성 고혈압 또는 무증상 장기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

- 흉부 : 심잡음, 수포음
- 복부 : 간비대, 신장비대, 복부잡음, 박동을 동반한 복부종괴
- 사지 : 좌우 양팔 혈압차, 하지 냉감, 말초부종, 족부동맥 박동 감소 또는 비대칭
- 경동맥 수축기 잡음, 갑상선 비대 등

3) 임상검사

- 최소한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사주기 변경 가능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임상검사 대체 가능함
    - * 단, 전해질, 혈당 또는 당화혈색소는 3개월 이내 임상검사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

표 07 검사항목

구분	검사 항목	목적
혈액검사	혈당검사 :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당뇨병 선별검사 이뇨제, 베타차단제 사용 시 혈당 모니터링 필요
	지질검사 :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확인 이뇨제, 베타차단제 사용 시 콜레스테롤 모니터링 필요
	신장검사 : 크레아티닌,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	콩팥기능 저하
	포타슘(K)	일차성 알도스테론증, 당뇨병, 신기능장애 확인 이뇨제 사용 시 저칼륨혈증 모니터링
	혈색소, 적혈구 용적률	빈혈
	요산	이뇨제 투여 시 모니터링 필요
소변검사	단백뇨검사 : 유린스틱 또는 임의뇨 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	콩팥질환 확인
	혈뇨검사	콩팥질환 확인
	요당검사	당뇨병 확인
심장혈관 검사	12-유도 심전도	좌심실비대, 좌각차단, 심근경색
	흉부 X-선 검사	심비대, 심부전, 동맥경화

2. 케어플랜 수립

- (정의)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위험도를 구분하여 혈당 목표와 생활습관 개선 목표 설정, 약물치료, 교육 및 상담, 자가 관리 등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표 08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

위험인자	내용
연령*	남성 ≥ 45세, 여성 ≥ 55세
가족력	조기 심뇌혈관질환의 가족력 (남성 < 55세, 여성 < 65세)
흡연	흡연
비만 또는 복부비만	체질량지수 ≥ 25 kg/m^2 or 허리둘레 (남 ≥ 90 cm, 여 ≥ 85 cm)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 220 mg/dL, or LDL-콜레스테롤 ≥ 150 mg/dL, or HDL-콜레스테롤 < 40 mg/dL, or 중성지방 ≥ 200 mg/dL
당뇨병 전단계	100 ≤ 공복혈당 < 126 mg/dL
당뇨병	공복혈당 ≥ 126 mg/dL or 경구 당부하 2시간 혈당 ≥ 200 mg/dL or 당화혈색소 ≥ 6.5 %

* 65세 이상은 위험인자 2개로 간주

표 09 심뇌혈관 위험도*와 치료방침

위험인자	고혈압 전단계 (130~139/80~89)	1기 고혈압 (140~159/90~99)	2기 고혈압 (≥160/100)
위험인자 0개	최저위험군	저위험군	중위험 또는 고위험군
	생활요법	생활요법 또는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위험인자 1~2개	저위험 또는 중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생활요법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위험인자 3개 이상, 당뇨병, 무증상장기손상	중위험 또는 고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생활요법 또는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심뇌혈관질환, 만성콩팥병	고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생활요법 또는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 10년 심뇌혈관질환 발생률 : 최저위험군 5%미만, 저위험군 5~10%, 중위험군 10~15%, 고위험군 15% 이상

- **(혈압목표)** 수축기/이완기 혈압 140/90 mmHg 미만
  - 단, **심혈관질환**(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심부전, 좌심실비대) 또는 **알부민뇨 동반 시 목표혈압**은 **130/80 mmHg 미만**
- **(약물치료 계획)** 환자의 고혈압 정도와 심뇌혈관 위험도에 따라 단일/병용 여부 및 약제 선택
  - 환자에게 약물 복용 방법, 약물 부작용 및 대처방법에 대한 안내

표 10 질환에 따른 추천 고혈압약

동반질환	ACEI 또는 ARB	베타차단제	칼슘차단제	이뇨제
심부전	○	○		○
좌심실비대	○		○	
관상동맥질환	○	○	○	
만성콩팥병	○			
뇌졸중	○		○	○
노인 수축기단독고혈압	○		○	○
심근경색 후	○	○		
심방세동 예방	○			
당뇨병	○	○	○	○

- **(생활습관 개선 목표)** 생활습관 문제를 바탕으로 환자가 개선해야 할 생활습관 목표를 설정함

표 11 생활습관에 따른 혈압 감소 효과

생활요법	혈압 감소 (수축기/이완기 혈압, mmHg)	권고사항
소금 섭취 제한	-5.1 / -2.7	하루 소금 6g 이하
체중 감량	-1.1 / -0.9	체중 1kg 감소 당
절주	-3.9 / -2.4	하루 2잔 이하
운동	-4.9 / -3.7	하루 30~5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식사 조절	-11.4 / -5.5	건강한 식습관*

* 칼로리와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생선류, 견과류, 유제품 섭취를 증가시키는 식이요법 권고

* 출처 : 대한고혈압학회, 2018년 고혈압 진료지침

- **(비만)** 체질량지수 25 kg/m^2 미만, 허리둘레 남자 90 cm, 여자 85 cm 미만
- **(영양 및 식습관)**

영양문제		영양 케어플랜 내용
불규칙한 식사	➡	☐ 규칙적 식사횟수(하루3회) ☐ 규칙적 식사시간 ☐ 아침식사 하기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		☐ 식사량 감소 / 하루 섭취에너지 500kcal씩 줄이기 ☐ 튀김음식 등 고지방식품 주1회 미만으로 줄이기
짜게 먹는 식품		☐ 국물 섭취 줄이기 ☐ 젓갈류 등 짠 식품 주1회 미만으로 줄이기

- **(신체활동)** 일주일에 주3회 이상(주 150분 이상)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 또는 주2회 근력운동 권고함

근력운동을 제한해야 하는 환자

•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이거나, 아래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근력운동을 제한함
- 울혈성 심부전, 조절되지 않는 부정맥, 심한 판막 질환, 5MET 이하의 유산소 대사 능력

- **(흡연)** 금연
- **(운동)** 금주, 또는 일주일에 1~2회, 1회에 2잔 이내로 제한

● **(교육 계획)** 환자 중증도 및 요구도에 따라 질병 및 합병증 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 위험요인 관리 등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표 12 고혈압 교육 리스트

No.	주제	주요내용
1	고혈압에 대한 전반적 내용	고혈압에 대한 설명, 혈압의 측정방법
2	고혈압 관리 목표와 방법	상황에 따른 혈압 목표, 고혈압 치료와 약물복용
3	고혈압의 식이요법	식이요법의 효과, 식이요법의 방법
4	고혈압의 운동요법	운동요법의 효과, 운동요법의 방법
5	특별한 상황별 고혈압 관리	어지럼증, 두근거림, 급격한 혈압강하, 급격한 혈압상승
6	고혈압과 생활	음주, 사우나, 인삼 복용, 한약, 영양제, 흡연, 성생활, 계절/온도

Ⅲ 환자 관리

내소진료 F/U		환자관리 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		교육
• 최소 3개월 마다 내소 방문	+	• 혈압 • 약물복용 • 합병증 발생 유무 • 생활습관 목표 달성 추이	or	• 대면 상담 • 전화 상담 • 리콜, 리마인드	or	• 의원 및 상급 병원으로 연계 • 보건소, 공단, 민간체육시설 등으로 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	or	• 케어플랜에 따라 교육 내용 및 시간 등을 조합하여 제공

의사·코디 협력활동
• 환자관리를 위한 의사·케어코디 간 연계·협력 • 환자진료 경과 공유 • Problem List 작성 및 의견교환

1. 환자관리 모니터링

- **(혈압 모니터링)** 내원하여 측정하거나 환자가 자가 측정한 혈압 기록을 확인하여 목표 달성 여부 평가
- **(약물 복용)** 복용약물 종류, 순응도, 부작용 발생 확인
  - (복약 순응도) 최근 일주일간 약 복용 일수, 남은 알약 세기 등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순응도를 80% 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장함
  - 복약 순응도가 낮을 경우 순응도 관련 행위 요인(예, 동기 수준과 지식 수준) 파악 후 상담 시행

표 13 수정된 Morisky 설문도구

질문	동기	지식
1. 약 먹는 것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예(0) / 아니오(1)	
2. 약 먹는데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까?	예(0) / 아니오(1)	
3. 상태가 좋다고 느끼면 약을 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예(0) / 아니오(1)
4. 약을 먹는데도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으면 약을 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예(0) / 아니오(1)
5. 의사나 약사가 말한 대로 약을 먹을 때의 장기적 이점에 관하여 아십니까?		예(1) / 아니오(0)
6. 때 맞추어 처방약을 다시 받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예(0) / 아니오(1)	

※ 동기/지식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동기/지식의 높고(2, 3점) 낮음(0, 1점)을 평가함

* 출처 : 김성옥. 한국임상약학회지 2011

- **(합병증 유무 평가)** 정기적인 합병증 선별검사 시행 및 결과 확인

표 14 무증상 장기손상 및 심뇌혈관질환

항목	내용
뇌	뇌졸중, 일과성 허혈발작, 혈관성 치매 진단 여부
심장	좌심실비대,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진단 여부
콩팥	만성콩팥병 진단여부 사구체여과율 감소, 단백뇨 검출 여부
혈관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진단 여부

- **(생활습관 목표 달성 추이 모니터링)** 비만*, 영양 및 식습관, 신체활동,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개선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

  * 매 방문 시 체중 및 허리둘레를 측정

- 혈압 관리가 안 될 경우 복약순응도, 생활습관, 기타 가정·직업·심리적 요인 등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환자와 논의하고 계획을 수정함**

  * 환자에게 안내하고 내원이 필요한 경우 진료 예약 또는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운동처방, 심리상담 등)에게 의뢰 권장

2. 교육

- 교육수행 방법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해 10분 단위의 **교육 콘텐츠를 조합하여 환자에게 제공**
- **(교육내용)** 질병 및 합병증 관리, 생활습관 개선 교육
- **(교육형태)** 1:1 교육이 원칙이며, 최대 10명 이내 소규모 집단 교육 가능

  * 소규모 교육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함께 교육하는 팀 접근방식(Team Approach)을 권장함

- **(교육구분)** 초회·기본·집중 교육으로 구성됨
  - (초회교육)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올리기 위하여 의사가 1대1로 30분 이상 제공하는 교육

    * 신규 진단자의 경우 가급적 등록 당일에 초회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장함

  - (기본교육) 질환 또는 생활습관 관련하여 의사 또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1대1 또는 소규모 집단으로 10분 이상 연간 8회 이내 제공하는 교육
  - (집중교육) 기본교육 4회 이상 시행 후에도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의사 또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1대1 또는 소규모 집단으로 30분 이상 제공하는 교육

표 15 환자관리교육 구성

구 분	내용	교육시간	교육형태	수행주체
초회교육	질병 및 생활습관 관련 전반	30분 이상	1:1	의사
기본교육	질환 및 생활습관 개선	10분 이상	1:1 또는 소규모 집단교육	의사
	생활습관 개선			간호사, 영양사
집중교육	환자별 맞춤형 교육	30분 이상	1:1 또는 소규모 집단교육	의사, 간호사, 영양사

- 시행한 교육명, 시행날짜, 교육 결과 등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며, 필요시 의료진과 공유하고 협의하여 환자관리 계획에 반영
- 대규모 집단 교육, 실습교육 등이 필요할 경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일차의료 지원센터, 건강동행센터), 지역사회 체육시설(국민체력100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등에 연계가능

3. 상담

- **(대면 및 비대면 상담)** 질병관리나 생활습관 관련하여 환자가 요구하거나 의사 판단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문자, 전화, 이메일 등) 방식으로 상담을 제공
- **(리콜·리마인드)** 환자관리를 위한 진료 예약 알림, 진료 미방문 시 환자에게 연락하여 미방문 사유를 확인 등
- 상담 결과는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며, 필요시 상담 내용을 의료진과 공유하고 협의하여 환자관리 계획에 반영

4. 서비스 연계·조정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지원
  - **(의료기관 연계)** 합병증 선별검사나 관리를 위한 타 의료기관 연계 또는 우울증, 수면장애 등 타 동반질환에 대한 진료 의뢰
  - **(보건소 연계)** 영양(요리교실 등 실습포함), 체력측정·운동실습 등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 또는 상담, 보건소 내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에 연계
  -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자원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차의료지원센터, 건강동행센터, 지역사회 내 민간 체육시설 등에 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 환자관리를 위해 복지서비스(밑반찬 배달서비스 등)연계가 필요한 경우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에 연계

Ⅳ 점검 및 평가

1. 점검 및 평가 내용

- **(케어플랜 점검)** 환자관리 상태에 따라 최소 6개월 이내 주기적으로 케어플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점검·평가하고, 환자관리내역을 정리하여 환자관리 상태를 시스템에 기록
- **(케어플랜 수정)** 케어플랜 수립 이후 임상검사, 환자 관리, 또는 점검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케어플랜을 수시로 수정·보완 가능
- **(지속 케어플랜 재수립)** 전년도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12개월 후 신체진찰·임상검사를 재시행하고, 이에 따른 **차기년도 케어플랜 수립**

2. 점검 및 평가 양식

- 대부분의 항목은 통합서비스 시스템의 환자관리에서 자동 연동되며, 필요 시 수정 가능함

  * 제5장 전산시스템 참고

Chapter 04

당뇨병 관리 서비스 제공

Ⅰ. 환자등록
Ⅱ. 케어플랜 수립
Ⅲ. 환자 관리
Ⅳ. 점검 및 평가

Chapter 04

당뇨병 관리 서비스 제공

Ⅰ 환자등록

의원방문	대상자 확인	사업 참여안내	참여신청	대상자 등록
	• 당뇨병 환자 진단 또는 확인	• 사업내용, 참여 방법 등 설명	•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 전산 시스템에 환자정보 등록

1. 대상자 확인

● **(사업대상)** 당뇨병(질병코드 E10~14)으로 진단된 환자

* 고혈압과 당뇨병 둘다 동반한 경우 당뇨병 프로세스에 따름

- (신규 진단 환자)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
- (기 진단 환자) 과거에 당뇨병을 진단받아 치료 중인 환자

*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환자도 신규 등록 필요

당뇨병 진단 기준

• 다음 중의 하나에 속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음
① 당화혈색소 6.5% 이상
② 8시간 이상 공복혈장혈당 126 mg/dL 이상
③ 75 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200 mg/dL 이상
④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 혈장혈당 200 mg/dL 이상

• ①, ②, ③인 경우 다른 날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여 확인함

2. 사업 참여안내

- **(사업설명)** 사업 내용*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참여 권유
  - 제공 서비스, 참여방법,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설명 포함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방안

- 기존 참여자 연계 : 기존 사업 종료 안내문 발송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 홍보 및 참여 안내문 발송
- 신규 참여자 발굴 : 신규 확진된 대상자(1일 이상 약제처방 등) 및 참여의원에 다니는(6개월 이상 내원) 환자에게 서비스 내용 등 신규 사업 홍보 및 참여 안내문 발송

3. 환자 참여신청

- 참여 의사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방법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내용에 대한 안내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 스마트폰이 있는 환자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바로 서명 가능하며,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작성하여 해당의원에서 보관
    * 환자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부록 2, 별지 제8호 서식(p.167)' 참고

4. 대상자 등록

- 환자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시범사업 전산 시스템에 등록
  * 환자등록 화면 '제5장 전산시스템' 참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원의 시범사업 대상자 등록 절차 안내사항

-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사업 참여의원의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자 여부 확인 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신규환자로 등록
  -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사업 참여자의 경우 본 시범사업과 중복등록이 불가하며,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참여 환자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사업에서 불참 처리해야 함

- **(등록종료)** 아래의 등록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종료 처리함
  - (종료사유) 서비스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사망한 경우

    *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또는 타 의료기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환자가 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등록하는 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신규 등록여부 확인 후 등록해야 하며, 기존 의원에서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종료 처리됨
  - 환자가 6개월 이상 의원 미 방문 시 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연락하여 등록 종료여부를 확인해야 함

Ⅱ 케어플랜 수립

포괄평가			케어플랜수립
문진	신체검사	임상검사	
• 병력 청취 • 생활습관 평가	• 신체계측 • 혈압측정 • 합병증 확인	• 혈액검사 • 소변검사 • 합병증 검사	• 혈당/혈압목표 설정 • 생활습관목표 설정 • 치료 및 관리계획 수립

1. 포괄평가

1) 문진

- **(과거 및 현재 병력)** 당뇨병 관련 병력 파악
  - 과거 진단자의 경우 당뇨병 유병기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 여부, 혈압 조절 여부를 확인함
    *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에 대한 병력도 청취함
-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 당뇨병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 진단여부 확인

당뇨병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

- **(동반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부전, 기관지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류마티스 질환, 암
- **(합병증)**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만성신부전, 말초혈관질환, 족부병변, 망막병증, 말초신경병증

- 실명, 신대체요법, 하지 절단, 말초부위의 감각저하나 통증, 자율신경계 이상 등 **당뇨병 합병증 관련한 상태나 증상 여부** 확인
- **(가족력)** 부모·형제·자매 중에 당뇨병 진단 또는 심뇌혈관질환 진단 환자(남자 55세 미만, 여자 65세 미만) 유무
  *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관련 가족력도 병력 청취함
- **(우울증)** 우울장애 여부에 대해 평가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2(PHQ-2)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표 16 PHQ-2 항목형 측정도구

문항 (최근 2주간)	기록
생활에서 즐거움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가?	☐ 예 ☐ 아니오
기분이 우울한가?	☐ 예 ☐ 아니오

- **(약물복용력)** 당뇨병 약물 처방 시 고려해야 할 약물 복용력 확인

당뇨병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약물 복용력

- **(고혈압 약제)** ☐ 이뇨제 ☐ 베타차단제 ☐ 칼슘차단제 ☐ ACE억제제/ARB ☐ 기타
- **(이상지질혈증 약제)** ☐ 스타틴 ☐ 파이브레이트 ☐ 에제티마이브 ☐ 오메가3
- **(항혈소판제)** ☐ 아스피린 ☐ 클로피도그렐

- **(예방접종력)** 인플루엔자, 폐렴사슬알균 백신 접종 여부
- **(생활습관)**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에 대해 파악
  - **(흡연)** 평생 흡연 여부, 흡연한 경우 흡연력에 대해 확인함

- 비흡연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미만으로 피웠거나 전혀 피우지 않은 경우
- 현재 흡연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도 피우는 경우
- 과거 흡연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으나 현재에 피우지 않는 경우
- '과거 흡연'의 경우 금연 시점(OO 년 전)을 조사함
- '현재 흡연'과 '과거 흡연'의 경우는 흡연력(하루 평균 OO갑 x OO년)을 조사함

  - **(음주)** 현재 음주 여부와 음주력을 확인함

- 비음주 :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주1회 미만으로 마시는 경우
- 현재 음주 : 평균 주1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경우
- '현재 음주'인 경우 평균 음주 빈도(주 OO회)와 한번 마실 때 음주량(OO잔)을 조사함
  * 소주1잔, 맥주1잔(200cc 기준), 양주1잔 등은 동일한 양의 알코올을 포함하므로, 혼합하여 드시는 경우 드시는 잔의 총합으로 표기함

- **(식이/영양)** 식이습관에 대해 평가하며, 영양사를 통해 영양평가 및 진단 가능함

• 불규칙한 식사 : 식사 횟수 및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
• 에너지/당류/지방 과잉 섭취 : 하루 식사량이 많거나, 설탕 등 단당류 섭취가 많거나, 주2회 이상 튀김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 영양불균형 : 밥 위주의 식사 또는 주2회 이상 감자, 고구마, 면류 등을 지속적으로 섭취
• 단백질 섭취 저하 : 육류, 생선류 섭취량이 총 에너지 섭취량의 15% 미만 일 경우, 또는 주4회 미만인 경우

- **(신체활동/운동)** 평소 운동여부, 운동의 종류, 강도 등을 평가하며, 운동처방사를 통해 체력측정 및 진단 가능

• 운동여부 : □ 운동하지 않음 □ 불규칙한 운동 □ 규칙적 운동(주3회 이상)
• 운동종류 : □ 걷기 □ 유산소 운동(조깅, 수영, 빠르게 걷기 등) □ 근력운동(덤벨 등)
• 1회 운동 시 운동 강도 : □ 150분/주 이하 □ 150-180분/주 □ 180분/주 이상

2) 신체검사

●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혈압 및 맥박 측정, 발 진찰

- 혈압 측정은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권고를 참고하여 올바르게 측정함

대한고혈압학회 권고사항 : 진료실 혈압 측정 방법

• 혈압 측정 전 최소 5분 동안 안정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측정한다.
• 혈압 측정 30분 이내에는 흡연,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 1~2분 간격을 두고 적어도 2번 이상 혈압을 측정한다.
• 커프 내의 공기주머니의 길이는 위팔 둘레의 80~100% 이상을 감을 수 있고 너비는 위팔 둘레의 40%가 되어야 한다. (성인의 표준크기 : 너비 13cm, 길이 22~24cm).
• 위팔을 심장 높이에 위치시키고 커프 아래에 3cm의 공간을 확보하여 커프를 감는다.
• 처음에는 양팔에서 혈압을 측정한 뒤, 혈압 수치가 더 높은 팔을 다시 측정한다. 이후에는 높은 팔을 기준으로 혈압을 측정하도록 한다.
•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맥박에 따라 혈압이 변하므로 3번 이상 측정하여 평균을 구한다.

- (발 진찰) 피부 상태, 발과 발가락의 모양을 관찰하고, 상처 또는 궤양 여부 등을 확인함
- (말초신경병증 선별검사) 모노필라멘트 검사, 온도/진동감각검사, pin-prick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음

3) 임상검사

- 당뇨병의 중증도 평가, 동반질환 및 합병증 평가
- 최소한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사주기 변경 가능
  - 당화혈색소는 최소 연 2회 이상 측정을 권장함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임상검사 대체 가능
    * 단, 전해질, 혈당 또는 당화혈색소는 3개월 이내 임상검사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

표 17 검사항목

구분	검사 항목	목적
혈액검사	혈당검사 :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당뇨병 중증도 평가
	지질검사 :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확인 이뇨제, 베타차단제 사용 시 콜레스테롤 모니터링 필요
	신장검사 : 크레아티닌, 추정 사구체 여과율	콩팥기능 저하, 신장 합병증 확인
	간기능검사 : AST, ALT, r-GTP	간질환 확인 약물 복용 시 모니터링 필요
소변검사	단백뇨검사 : 유린스틱 또는 임의뇨 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	신장 합병증 확인
심장혈관검사	12-유도 심전도	좌심실비대, 좌각차단, 심근경색
	흉부 X-선 검사	심비대, 심부전, 동맥경화
안과검사	안저검사	안과 합병증 확인
신경/족부 검사	모노 필라멘트 검사	신경병증 및 족부 합병증 확인

2. 케어플랜 수립

- (정의)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위험도를 구분하여 혈당 목표와 생활습관 개선 목표 설정, 약물치료, 교육 및 상담, 자가관리 등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혈당* 및 혈압, 콜레스테롤 목표 설정**
  - (혈당목표) 당화혈색소(HbA1c) 목표에 따라 공복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 목표를 연계하여 설정함

당화혈색소와 혈당 목표

- HbA1c 6.5% 미만(일반적인 경우) : 공복혈당 110 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 mg/dL 미만
- HbA1c 7.0% 미만(고령, 동반질환이 많거나 기대여명이 길지 않을 경우) : 공복혈당 80~130 mg/dL, 식후 2시간 혈당 180 mg/dL 미만

  - (혈압목표) 140/85 mmHg 미만
    - 단, **심혈관질환**(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심부전, 좌심실비대) 또는 **알부민뇨 동반 시 목표혈압은 130/80 mmHg 미만**
  - (콜레스테롤 목표) LDL-콜레스테롤 100 mg/dL 이하, 중성지방 150 mg/dL 미만, HDL-콜레스테롤 남자 및 여자 각각 40 및 50 mg/dL 이상

- **(약물치료 계획)**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주사용/경구용 선택 및 단일/병용 요법 여부, 약제 선택

혈당강하제 종류

- 주사형 : 인슐린, GLP-1 수용체 유사체
- 경구형 : 메트포르민, DPP-4 억제제, 설폰요소제/메글리티나이드, TZD, SGLT2 억제제,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 약물 치료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저혈당 및 약물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

- **(생활습관 개선 목표)** 생활습관 문제를 바탕으로 환자가 개선해야 할 생활습관 목표를 설정함
  - **(비만)** 비만한 환자는 초기 체중에서 5~10% 감량을 목표로 하고, 감량을 위한 식이 조절 및 운동을 권고함
    * 적정 체중 체질량지수 25 kg/m^2 미만, 적정 허리둘레 남자 90cm 미만, 여자 85cm 미만
  - **(영양 및 식습관)**

영양문제		영양 케어플랜 내용
불규칙한 식사	➡	□ 규칙적 식사횟수(하루3회) □ 규칙적 식사시간 □ 아침식사 하기
에너지/당류/지방 과잉 섭취		□ 식사량 감소 / 하루 섭취에너지 500kcal씩 줄이기 □ 단순당 섭취 월1회 미만으로 줄이기 □ 튀김음식 등 고지방식품 주1회 미만으로 줄이기
영양불균형		□ 골고루 식사하기(5가지 식품 모두 섭취) □ 감자, 고구마, 면류 등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단백질 섭취 저하		□ 매끼 육류 또는 생선류 섭취량 늘리기(1회 섭취 시 탁구공 크기)

  - **(신체활동)** 일주일에 주3회 이상(주 150분 이상)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 또는 주2회 근력운동 권고함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환자

-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말초 및 자율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미세 혈관 합병증이 있는 경우, 정형외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 (흡연) 금연
  - (음주) 금주, 또는 일주일에 1~2회, 1회에 2잔 이내로 제한

- **(교육 계획)** 환자 중증도 및 요구도에 따라 질병 및 합병증 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 위험요인 관리 등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 교육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 등을 고려함

교육 계획 수립 시 고려할 항목

- 당뇨병 상태 : 연령/성별, 당뇨병유병기간, 혈당조절 상태
- 치료의 종류 : 생활습관관리, 경구혈당강하제, 인슐린요법, 인슐린 펌프치료
- 생활습관 및 위험인자 : 비만/과체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 당뇨병 합병증 상태 및 중증도 : 망막병증, 신증, 말초신경병증, 대혈관합병증, 당뇨병발, 위마비 등
- 환자의 정신건강 및 활동능력 : 일상생활활동능력(ADL), 인지능력,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태, 주거상태 및 경제적인 능력, 교육정도
- 당뇨병에 대한 지식의 정도, 환자의 당뇨병 관리 의지

표 18 당뇨병 교육리스트

주제	주요내용
당뇨병 전반적 내용	당뇨병의 이해
당뇨병의 합병증	심뇌혈관합병증, 미세혈관합병증
당뇨병의 관리	당뇨병의 약물 치료, 생활습관 점검, 당뇨병의 동반질환(고혈압/이상지질혈증) 관리, 자가혈당 측정, 발관리, 저혈당 관리
당뇨병의 식사요법	식사요법의 기본과 원칙, 혈당조절을 위한 식품선택, 외식과 기호식품, 식품 선택의 오해와 진실, 당뇨병 동반질환(고혈압/이상지질혈증)의 식사요법
당뇨병의 운동요법	당뇨병에서 운동의 효과 및 권장운동, 당뇨병에서 운동의 계획 및 방법, 운동 전후 주의사항, 합병증 동반 시 운동 방법
특별한 상황에서의 혈당관리	(아픈 날/여행 시) 혈당 관리 방법

Ⅲ 환자 관리

내소진료 F/U		환자관리 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		교육
• 최소 3개월 마다 내소 방문	+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 약물복용 • 합병증 발생유무 • 생활습관 목표 달성 추이	or	• 대면 상담 • 전화 상담 • 리콜, 리마인드	or	• 의원 및 상급 병원으로 연계 • 보건소, 공단, 민간체육시설 등으로 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	or	• 케어플랜에 따라 교육 내용 및 시간 등을 조합하여 제공

의사·코디 협력활동
• 환자관리를 위한 의사·케어코디 간 연계·협력 • 환자진료 경과 공유 • Problem List 작성 및 의견교환

1. 환자관리 모니터링

- **(혈압 및 혈당 모니터링)** 내원하여 측정하거나 환자가 자가 측정한 혈당과 혈압 기록을 확인하여 목표 달성 여부 평가

- **(약물 복용)** 복용약물 종류, 순응도, 부작용 발생 확인
  - 주사용 투여자의 경우 주사 부위 이상 여부(통증, 감염, 부종, 위축 등)를 확인함
  - (복약 순응도) 최근 일주일간 약 복용 일수, 남은 알약 세기 등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순응도를 80% 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장함
  - 복약 순응도가 낮을 경우 순응도 관련 행위 요인(예, 동기 수준과 지식 수준) 파악 후 상담 시행

표 19 수정된 Morisky 설문도구

질문	동기	지식
1. 약 먹는 것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예(0) / 아니오(1)	
2. 약 먹는데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까?	예(0) / 아니오(1)	
3. 상태가 좋다고 느끼면 약을 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예(0) / 아니오(1)
4. 약을 먹는데도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으면 약을 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예(0) / 아니오(1)
5. 의사나 약사가 말한 대로 약을 먹을 때의 장기적 이점에 관하여 아십니까?		예(1) / 아니오(0)
6. 때 맞추어 처방약을 다시 받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예(0) / 아니오(1)	

※ 동기/지식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동기/지식의 높고(2, 3점) 낮음(0, 1점)을 평가함

* 출처 : 김성옥. 한국임상약학회지 2011

- **(합병증 유무 평가)** 정기적인 합병증 선별검사 시행 및 결과 확인

표 20 당뇨병 합병증 평가 항목

항목	내용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평가	- 성별, 나이, 혈압, 흡연여부, 관상동맥질환 가족력,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성 족부병변	- 하지 절단 여부 - 맥박, 감각, 변형, 상처나 감염, 궤양 여부 확인
당뇨병성 신증	- 크레아티닌, 추정 사구체여과율 감소 - 임의뇨 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
당뇨병성 신경병증	- 원위부의 양측성 감각신경 장애 확인 (감각저하, 통증 등) - 10g 모노필라멘트 검사, 온도/진동감각검사, 발목반사검사, Pin-prick 검사 등
당뇨병성 망막병증	- 안저검사

- **(생활습관 목표 달성 추이 모니터링)** 비만*, 영양 및 식습관, 신체활동,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개선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

  * 매 방문 시 체중 및 허리둘레를 측정

- 혈당 관리가 안 될 경우 복약순응도, 생활습관, 기타 가정·직업·심리적 요인 등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환자와 논의하고 계획을 수정함**
  * 환자에게 안내하고 내원이 필요한 경우 진료 예약 또는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운동처방, 심리상담 등)에게 의뢰 권장

2. 교육

- 교육수행 방법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해 10분 단위의 교육 콘텐츠를 **조합하여 환자에게 제공**
- **(교육내용)** 질병 및 합병증 관리, 생활습관 개선 교육
- **(교육형태)** 1:1 교육이 원칙이며, 최대 10명 이내 소규모 집단 교육 가능
  * 소규모 교육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함께 교육하는 팀 접근방식(Team Approach)을 권장함
- **(교육구분)** 초회·기본·집중 교육으로 구성됨
  - (초회교육)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올리기 위하여 의사가 1대1로 30분 이상 제공하는 교육
    * 신규 진단자의 경우 가급적 등록 당일에 초회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장함
  - (기본교육) 질환 또는 생활습관 관련하여 의사 또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1대1 또는 소규모 집단으로 10분 이상 연간 8회 이내 제공하는 교육
  - (집중교육) 기본교육 4회 이상 시행 후에도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의사 또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1대1 또는 소규모 집단으로 30분 이상 제공하는 교육

표 21 환자관리교육 구성

구 분	내용	교육시간	교육형태	수행주체
초회교육	질병 및 생활습관 관련 전반	30분 이상	1:1	의사
기본교육	질환 및 생활습관 개선	10분 이상	1:1 또는 소규모 집단교육	의사
	생활습관 개선			간호사, 영양사
집중교육	환자별 맞춤형 교육	30분 이상	1:1 또는 소규모 집단교육	의사, 간호사, 영양사

- 시행한 교육명, 시행날짜, 교육 결과 등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며, 필요시 의료진과 공유하고 협의하여 환자관리 계획에 반영
- 대규모 집단 교육, 실습교육 등이 필요할 경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일차의료지원센터, 건강동행센터), 지역사회 체육시설(국민체력100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등에 연계가능

3. 상담

- **(대면 및 비대면 상담)** 질병관리나 생활습관 관련하여 환자가 요구하거나 의사 판단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문자, 전화, 이메일 등) 방식으로 필요한 상담을 제공
- **(리콜·리마인드)** 환자관리를 위한 진료 예약 알림, 진료 미방문 시 환자에게 연락하여 미방문 사유를 확인 등
- 상담 결과는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며, 필요시 상담 내용을 의료진과 공유하고 협의하여 환자관리 계획에 반영

4. 서비스 연계·조정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지원
  - **(의료기관 연계)** 합병증 선별검사나 관리를 위한 타 의료기관 연계 또는 우울증, 수면장애 등 타 동반질환에 대한 진료 의뢰
  - **(보건소 연계)** 영양(요리교실 등 실습포함), 체력측정·운동실습 등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 또는 상담, 보건소 내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에 연계
  -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자원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차의료지원센터, 건강동행센터, 지역사회 내 민간 체육시설 등에 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 환자관리를 위해 복지서비스(밑반찬 배달서비스 등)연계가 필요한 경우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에 연계

Ⅳ 점검 및 평가

1. 점검 및 평가 내용

- **(케어플랜 점검)** 환자관리 상태에 따라 최소 6개월 이내 주기적으로 케어플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점검·평가하고, 환자관리내역을 정리하여 환자관리 상태를 시스템에 기록
- **(케어플랜 수정)** 케어플랜 수립 이후 임상검사, 환자 관리, 또는 점검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케어플랜을 수시로 수정·보완 가능
- **(지속 케어플랜 수립)** 전년도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12개월 후 신체진찰·임상검사를 재시행하고, 이에 따른 **차기년도 케어플랜 수립**

2. 점검 및 평가 양식

- 대부분의 항목은 통합서비스 시스템의 환자관리에서 자동 연동되며, 필요 시 수정 가능함

  * 제5장 전산시스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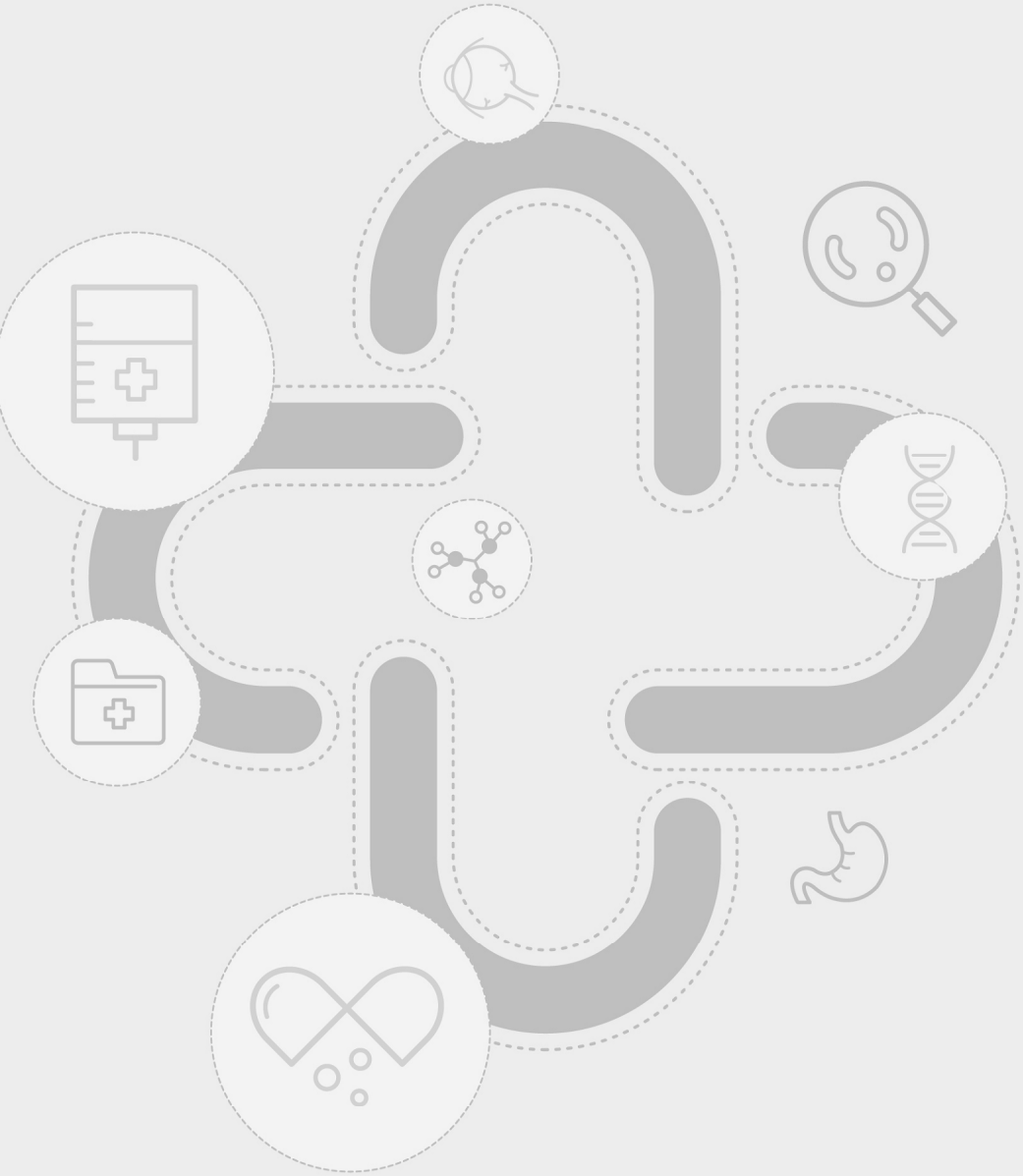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Chapter 05

전산시스템

Ⅰ. 요양기관용

Ⅱ. 지역사회 연계기관

Chapter 05

전산시스템

Ⅰ 요양기관용

요약
*

1) 시스템 명칭 : 요양기관정보마당(일차의료 만성질환)

※ 접속URL : http://medi.nhis.or.kr/

2) 운영목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함
-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하기 위함
- 의원과 연계기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함

3) 시스템 사용자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의사 및 케어 코디네이터(간호사 등)

4) 시스템 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5) 주요기능

- 기관등록
- 대상자 등록
- 계획/교육/점검
- 대상자 관리
- 청구지원
- 현황관리
- 게시판

시스템 메뉴

메뉴명	주요기능
• 기관 등록	
참여기관 신청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정보를 입력함 • 참여기관 신청을 완료해야만 이후 시스템 로그인이 가능함
참여인력 등록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을 등록함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 대상자 등록	
대상자 조회(검색)	• 등록된 대상자 목록을 검색조건에 따라 조회함
대상자 등록	• 본 사업에 대상자를 등록함
바우처 대상자 조회	• 바우처 대상자를 조회함
• 계획/교육/점검	
케어플랜/교육	• 대상자의 포괄평가, 임상검사, 케어플랜, 교육상담, 검사이력을 기록함
소그룹 교육	• 대상자의 소그룹 교육을 기록함
대상자 점검 및 평가	• 대상자의 질병상태를 점검·평가함
바우처 검사 및 결과관리	• 바우처 대상자의 검사기록 및 결과를 확인함
• 대상자 관리	
대상자 모니터링	• 대상자의 방문, 전화, 문자 시 모니터링 한 사항을 기록함
문자발송	•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기록함
전화상담	• 대상자에게 전화상담한 내용을 기록함
혈압/혈당 기록	• 대상자별 혈압/혈당 측정(자가, 원내 등)정보를 등록·확인함
• 청구지원	
청구지원	• 대상자별 청구내역을 조회·다운로드함
바우처 청구의뢰여부	• 검진 바우처 청구내역을 조회·저장·다운로드함
• 현황관리	
대상자 관리현황	• 등록·이상수치·서비스 현황 등 대상자 관리현황을 조회함
• 게시판	
공지사항	• 공지사항을 조회함
자료실	• 사업 관련 자료를 조회·다운로드 받음

1. 기관등록

1.1 참여기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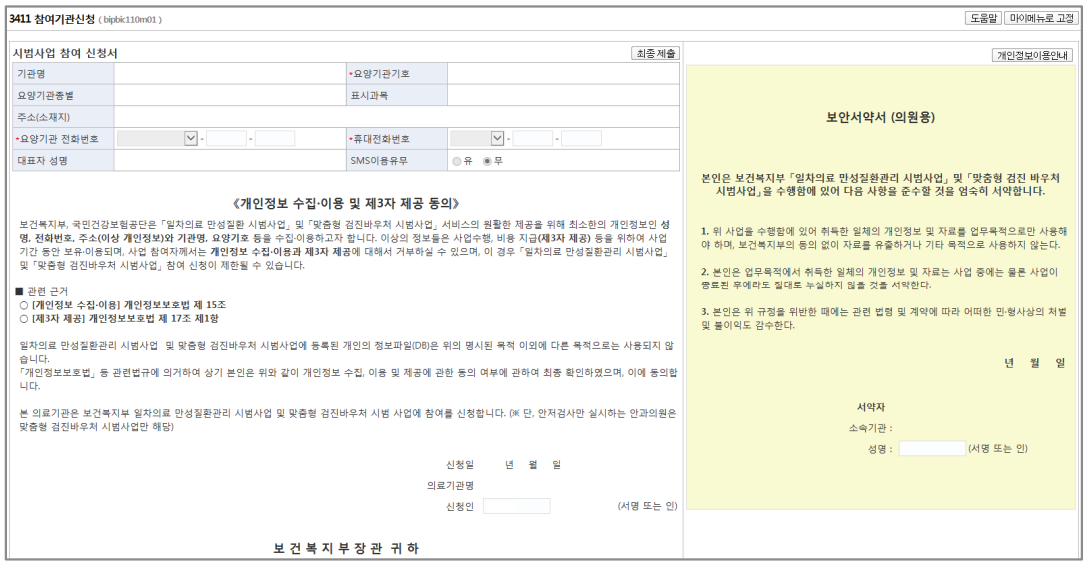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시범사업 참여 신청과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제출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기관등록 〉 참여기관 신청
업무설명	참여기관 신청 ① 참여신청서 : 기관명, 연락처, 신청인 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서명 입력 ② 보안서약서 : 서약자 성명 입력 ③ [최종제출] 클릭
주의사항	참여기관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음

1.2 참여인력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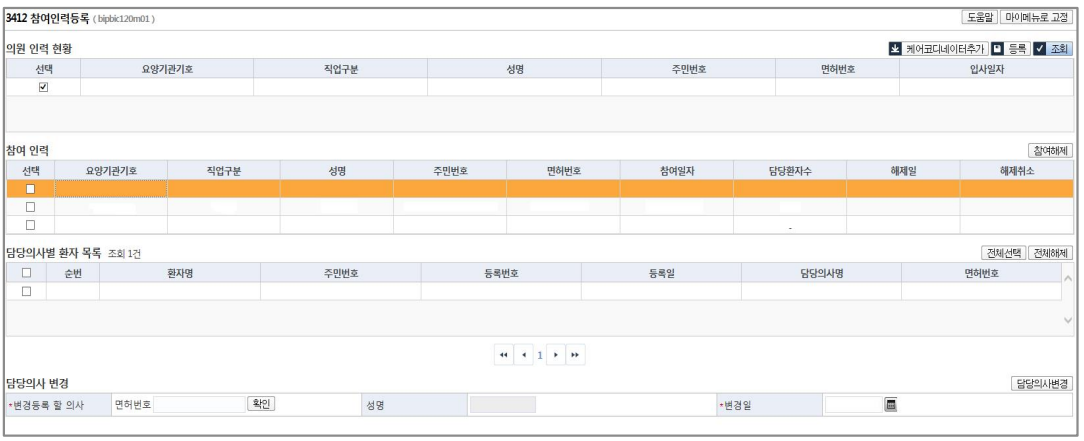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시범사업 참여인력(의사, 케어 코디네이터) 신청 및 변경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기관등록 〉 참여인력 등록
업무설명	1. 의원 인력현황 : 의원에서 기관 신고 시 등록한 의사, 간호사 현황을 조회함 ① 참여인력 등록 : 〈의원 인력현황〉에서 본 사업에 참여할 인력을 선택√한 후 [등록]버튼을 클릭함 ② 케어 코디네이터 추가 : 케어 코디네이터를 참여인력으로 추가함 - [케어 코디네이터추가]를 클릭한 후 성명, 면허번호 등 입력 - [등록] 클릭 2. 참여인력 : 참여인력으로 등록된 명단을 조회/해제함 ① 참여인력으로 등록된 명단을 확인함 ② [참여해제] : 참여인력 중 해제 대상자를 선택☑한 후 [참여해제] 클릭 3. 담당의사별 환자목록 : 의사별로 등록된 환자의 명단을 조회함 ① 〈참여인력〉에서 의사를 클릭 4. 담당의사 변경 ① 〈담당의사별 환자목록〉에서 환자목록 선택√ ② 〈담당의사 변경〉에서 '변경 등록할 의사'의 면허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③ 조회된 의사를 선택√한 후 '변경일' 선택√ ④ [담당의사 변경] 클릭
주의사항	※ 2. 참여인력 > ② [참여해제] - 해제 할 의사에게 등록환자가 있을 경우 해제 불가함

2. 대상자 등록

2.1 대상자 조회(검색)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사업에 등록된 대상자(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명단을 조회함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대상자 등록 〉 대상자 조회
업무설명	1. 대상자조회(검색) : 검색할 조건을 선택함 ① 참여구분, 질병명, 검색일자 선택✓ ② [조회] 클릭 ③ [펼치기] : 추가적인 검색조건 조회 - 환자명, 환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 2. 대상자 상세내역 : 대상자 목록에 마우스를 이동/클릭하면 상세내역이 조회됨 ① 교육 : 해당 항목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대면교육 리스트가 조회됨 ② 혈압/혈당 측정, 문자발송, 전화상담 건수 : 해당 항목을 클릭 하면 실시일자와 내용이 조회됨 ③ 환자명 클릭 : 선택한 대상자의 상세내역이 팝업으로 조회됨 ④ [혈압/혈당기록] : 대상자 선택 후 [혈압/혈당기록]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함 ⑤ [엑셀다운로드] : 조회된 대상자의 명단을 엑셀로 다운로드함
주의사항	※ 대상자 등록 가능 인원 : 300명

2.2 대상자 등록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대상자 등록 및 관리종결 처리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대상자 등록 〉 대상자 등록
업무설명	1. 대상자 등록 : 새로운 대상자를 등록함 ① [조회] : 등록할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조회함 -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 클릭 - 건강보험에 등록된 환자의 기본정보(전화번호, 주소)를 자동으로 조회하고, ‘참여 시작일(오늘 기준)’과 ‘등록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함 - 참여 시작일은 변경할 수 없음 - 전화번호와 주소는 수정할 수 있음 2. 기본정보 : 참여구분, 담당의사, 휴대폰,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함 3. 질병정보 : 질병명, 질병분류를 입력함 4. 의료기기 사용정보 : 자가 혈압/혈당계 사용유무를 입력함 5. 환자관리 종결 ① 종결처리 : 종결 대상자의 경우 체크√ ② 종결사유 및 상세 : 종결사유 체크√ 및 상세내용 입력 ③ [저장] 클릭 : 종결일자 오늘 날짜로 자동생성
주의사항	※ 종결된 대상자는 종결을 취소할 수 없음 ※ 개인정보 동의 수집 시 스마트폰이 있는 환자의 경우 스마트폰(건강iN 앱)에서 바로 서명 가능하며, 없는 환자의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의원에서 보관(시스템 부문 자주하는 질문 06. 참조)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여부는 서면으로만 동의 가능

2.3 바우처 대상자 조회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맞춤형 검진 바우처 대상여부 조회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대상자등록 〉 바우처대상자 조회
업무설명	1. 바우처대상자 조회 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후 [조회] 클릭 2. 바우처 대상자 정보 ① 검진 바우처 대상자의 상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명)가 자동 조회됨 ② 검진바우처 대상이 아닌 경우 : “바우처 대상자가 아닙니다.” 알림창 뜸 ③ 검진바우처 대상이지만 다른 의원에 이미 등록된 경우 : ‘타 의원 기등록’ 표기 ④ 검진바우처 대상이고 해당 의원에 이미 등록된 경우 : ‘기등록’ 표기
주의사항	※ 검진 바우처 대상자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대상자 중 최근 2개년도에 고혈압, 당뇨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고, 해당 치료 약제를 1일 이상 처방받은 자

3. 계획/교육/점검

3.1 케어플랜/교육

3.1.1 포괄평가 및 계획 - 포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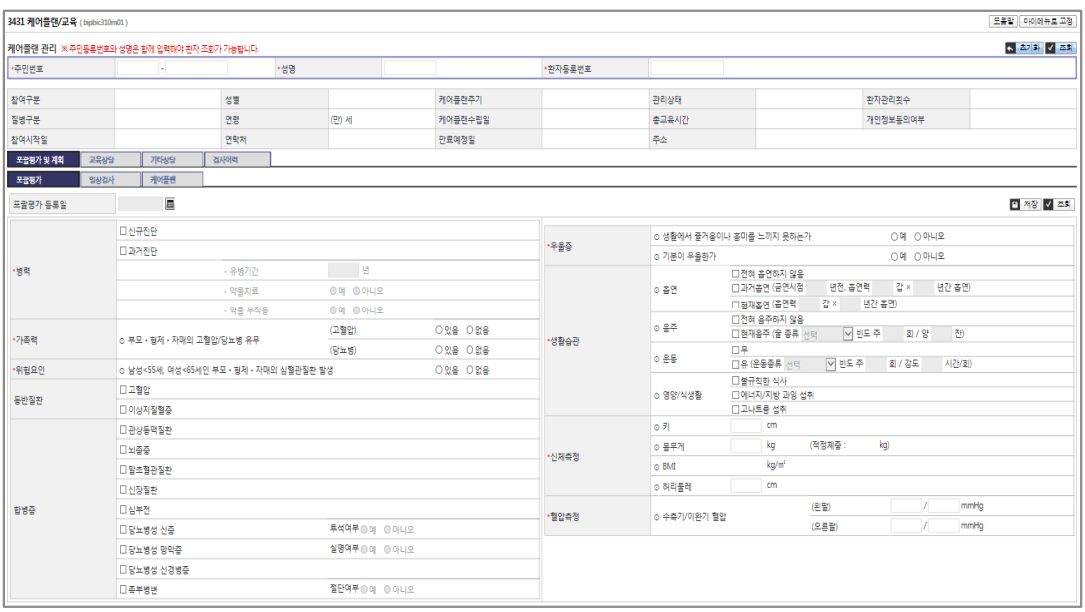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케어플랜 수립을 위한 포괄평가 등록 및 조회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계획/교육/점검 〉 케어플랜/교육 〉 포괄평가 및 계획
업무설명	1. 케어플랜 관리 ① 주민번호, 성명, 환자등록번호로 대상자 [조회] ② 조회된 대상자의 등록·관리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됨 2. 포괄평가 및 계획 〉 포괄평가 ① 포괄평가 등록일 : 오늘 날짜로 자동 선택됨 - 오늘 날짜가 아닐 경우 : 해당되는 과거날짜로 변경 가능함 - 포괄평가가 '저장'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② 포괄평가 입력 - 병력, 가족력, 동반질환, 합병증, 생활습관, 신체측정, 혈압측정 및 입력 ③ [저장] : 모든 포괄평가를 입력한 후 저장함
주의사항	※ 포괄평가를 저장해야만 케어플랜 수립이 가능함

3.1.2 포괄평가 및 계획 - 임상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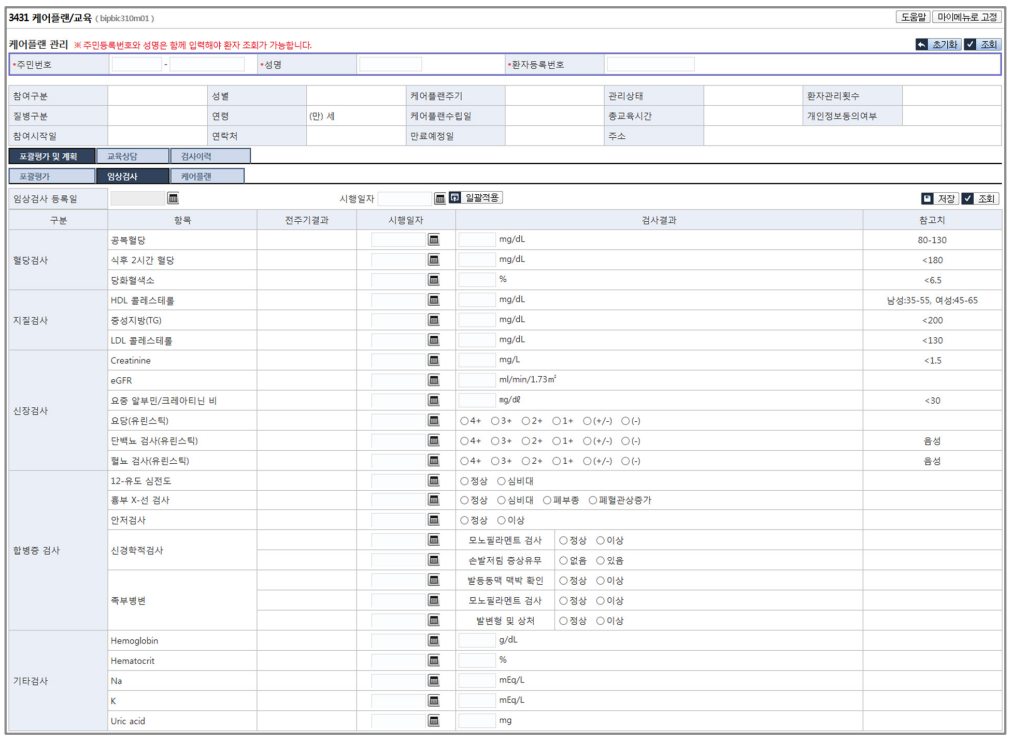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임상검사 등록 및 조회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계획/교육/점검 〉 케어플랜/교육 〉 포괄평가 및 계획
업무설명	1. 케어플랜 관리(상동) ① 주민번호, 성명, 환자등록번호로 대상자 [조회] ② 조회된 대상자의 등록·관리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됨 2. 포괄평가 및 계획 〉 임상검사 ① 임상검사 등록일 : 오늘 날짜로 자동 선택됨 - 오늘 날짜가 아닐 경우 : 해당되는 과거날짜로 변경 가능함 - 임상검사가 '저장'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② 임상검사 입력 : 혈당, 지질, 신장, 심장, 합병증 검사의 일자와 결과를 입력함 ③ 전주기 결과: 이전 주기 임상검사 결과 조회됨 ④ [저장] : 모든 임상검사를 입력한 후 저장함
주의사항	※ 시행일자 : 검사 [항목별]로 선택 혹은 [일괄적용] 가능함 ※ 최근 6개월 이내 관련* 검사결과 : 자동으로 조회되어 활용 가능함 * 건강보험 검진, 이전 시범사업 검사결과

3.1.3 포괄평가 및 계획 - 케어플랜

3431 케어플랜/교육 (bipbic310m01)

도움말 | 마이메뉴로 고정

케어플랜 관리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함께 입력해야 환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초기화 | 조회

*주민번호	-	*성명		*환자등록번호	

참여구분		성별		케어플랜주기		관리상태		환자관리횟수	
질병구분		연령		케어플랜수립일		총교육시간		개인정보동의여부	
참여시작일		연락처		만료예정일		주소			

포괄평가 및 계획 | 교육상담 | 검사이력

포괄평가 | 임상검사 | 케어플랜

케어플랜 수립일

저장 | 계획서출력 | 조회

구분	항목	문제목록	관리목표
*건강목표	당화혈색소	☑(당뇨병) 높은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 6.5 % 이하
			☐당화혈색소 7.0 % 이하
	혈당	☑(당뇨병) 높은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6.5% 이하)
			☑공복혈당 80-110 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 mg/dL 미만
		☑(당뇨병) 높은 식후2시간 혈당	(당화혈색소 7.0% 이하)
			☐공복혈당 80-130 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80 mg/dL 미만
	혈압	☑높은 혈압	☑(고혈압) 혈압 140 / 90 mmHg 이하
			☑(당뇨병) 혈압 140 / 85 mmHg 이하
	혈중 지질	☑높은 L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100 mg/dL 미만
			☑LDL-콜레스테롤 70 mg/dL 미만
*우울증	우울증 가능성	☑우울증 가능성	☑스트레스 관리
			☑서비스 연계 : 정신진단 및 치료
*생활습관개선목표	흡연	☑현재 흡연	☑자가금연
			☑금연 약물치료
			☑서비스 연계 : 보건소 금연클리닉
	음주	☑고위험 음주	☑금주
			☑절주 (주1회 미만, 1~2잔 이내)
			☑서비스 연계 : 중독치료 (주1회 미만, 1~2잔 이내)
	신체활동	☑신체활동 수준 미흡	☑걷기실천
			☑유산소운동 (권고:일주일에 3일이상, 최소 150분 이상 중등도 강도)
			☑근력운동 (권고:일주일 최소 2회 이상 중등도 강도)
			☑서비스 연계 : 운동관련
	영양/식생활	☑불규칙한 식사	☑규칙적 식사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	☑식사량 조절
			☑저지방 식이
		☑고나트륨 섭취	☑저염 식이
			☑서비스 연계 : 식이관련
	비만	☑과체중 (BMI 23 - 24.9)	☑현재 체중 유지
		☑비만 (BMI 25 - 39.9)	☐적정체중 목표 : 66.5 kg
		☑고도비만 (BMI 40 이상)	
*약물 요법	고혈압 약물		☑이뇨제 ☑베타차단제 ☑칼슘차단제 ☑ACEi ☑ARB ☑기타약제
	당뇨병 약물		- 주사용 혈당강하제
			☑인슐린 ☑지속형 ☑초속효성 ☑혼합형 ☑중간형(NPH) ☑GLP-1 수용체 작용제 ☑인슐린/GLP-1 수용체 작용제 복합제
			- 경구용 혈당강하제
			☑메트포르민 ☑설폰요소제 ☑메글리티니드 ☑DPP-4 억제제 ☑TZD ☑SGLT2억제제 ☑알파글루코시다제억제제 ☑기타
*공통	공통	☑질병에 대한 이해 필요 부족	☑질병에 대한 포괄적 교육
		☑혈압/혈당 수치와 측정방법 이해 필요	☑혈압/혈당 수치와 측정방법 교육
		☑약물요법 부작용 및 대처 요령에 관한 이해 부족	☑약물요법 부작용 및 대처 요령 교육
		☑합병증 예방관리 이해 필요	☑합병증 예방관리 교육
		☑생활습관 개선 교육 필요	☑금연 ☑금주 ☑절주 ☑규칙적 식사 ☑식사량 조절 ☑저지방 식이 ☑저염식이 ☑걷기실천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 ☑적정체중 유지

	관련 교육
☐	미정
☑	당뇨병의 이해
☑	심뇌혈관합병증
☑	미세혈관합병증
☑	당뇨병의 동반질환 관리
☑	당뇨병의 약물치료
☑	인슐린 치료
☐	당뇨병과 생활 : 자가혈당 측정
☐	당뇨병과 생활 : 발관리
☐	당뇨병과 생활 : 특별한 상황에서의...
☐	당뇨병과 생활 : 저혈당 관리
☑	당뇨병과 생활 : 생활습관 점검
☑	당뇨병과 생활 : 운동의 효과와 권장...
☑	당뇨병과 생활 : 운동의 계획과 방법
☑	당뇨병과 생활 : 운동 전후 주의사항
☑	당뇨병과 생활 : 합병증 동반 시 운동...
☑	당뇨병과 생활 : 식사요법의 기본원칙
☑	당뇨병과 생활 : 혈당조절을 위한 식...
☑	당뇨병과 생활 : 외식과 기호식품
☑	당뇨병과 생활 : 식품선택의 오해와...
☑	당뇨병과 생활 : 동반질환 식사요법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케어플랜 등록 및 조회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계획/교육/점검 〉 케어플랜/교육 〉 포괄평가 및 계획
업무설명	1. 케어플랜 관리(상동) ① 주민번호, 성명, 환자등록번호로 대상자 [조회] ② 조회된 대상자의 등록·관리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됨 2. 포괄평가 및 계획 〉 케어플랜 ① 케어플랜 수립일 : 오늘 날짜로 자동 선택됨 - 오늘 날짜가 아닐 경우 : 해당되는 과거날짜로 변경 가능함 - 케어플랜이 '저장'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② '문제목록' 선택 :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문제목록을 선택√함 ③ '관리목표' 선택 :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관리목표를 선택√함 ④ '관련교육' 선택 :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관련교육을 선택√함 - 관련교육은 문제목록, 관리목표에 따라 자동 선택됨 - 선택된 관련교육은 수정할 수 있음 ⑤ [저장] : 모든 임상검사를 입력한 후 저장함 ⑥ [계획서 출력] : 수립된 케어플랜을 출력하여 환자에게 교부함
주의사항	※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문제목록이 없을 경우 '공통항목'을 활용함 ※ 계획서 출력방식 3종 : 종이출력, e-mail전송, 건강iN 앱

3.1.4 교육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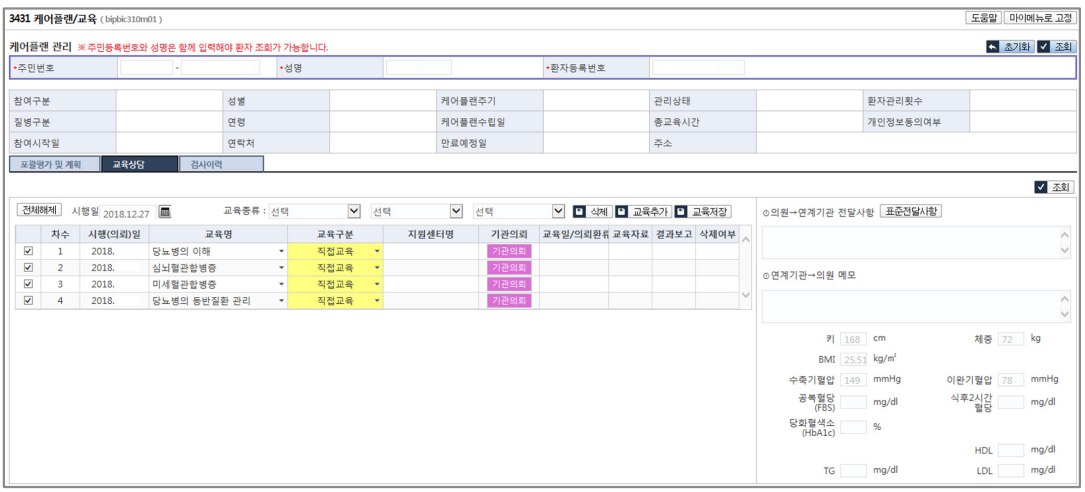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교육 실시 및 연계기관에 교육 의뢰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계획/교육/점검 〉 케어플랜/교육 〉 교육상담
업무설명	1. 케어플랜 교육 조회 ① 케어플랜에서 저장한 교육목록이 자동 표시됨 - 케어플랜에서 저장한 교육 목록이 표시되며, 확인 후 [교육저장] 클릭 2. 교육 추가/삭제 ① 교육추가 - 교육목록 위에 '교육종류'에서 추가할 교육을 선택함 - 해당교육 선택 후 [교육추가] 클릭함 ② 교육삭제 - 교육목록에서 삭제할 교육을 선택√함 - 해당 교육들을 선택한 후 [삭제] 클릭함 - 삭제된 교육은 목록에 삭제여부 'Y'로 표시됨 ③ 변경사항이 완료된 후 [교육저장] 클릭

업무설명	3. 교육실시 ① 교육 항목의 [Play] 클릭 - 교육자료 팝업창에서 교육 실시 ② 교육완료 후 팝업창 닫기 - 안내창 “교육을 저장하시겠습니까?” : “예” 클릭 - 안내창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확인” 클릭 4. 교육 의뢰/회신 ① [기관의뢰] : 교육목록에서 [기관의뢰] 클릭 - 팝업창 : 교육의뢰 구분(지역내/지역외) 선택√ - 팝업창 : 의뢰기관 선택√ ② 의원→연계기관 전달사항 : 연계기관에 전달할 내용 입력 후 [교육저장] 클릭 - 의뢰된 교육과 함께 전달사항 및 임상검사 결과값이 기관에 전송됨 - [표준전달사항] : 자주 쓰는 문구 저장하여 사용가능 ③ 연계기관→의원 메모 : 연계기관에서 교육 완료 후 전달할 메모 자동조회
주의사항	※ 교육 추가/삭제/의뢰 등 모든 사항이 완료되면 [교육저장]을 클릭해야 처리됨

3.1.5 검사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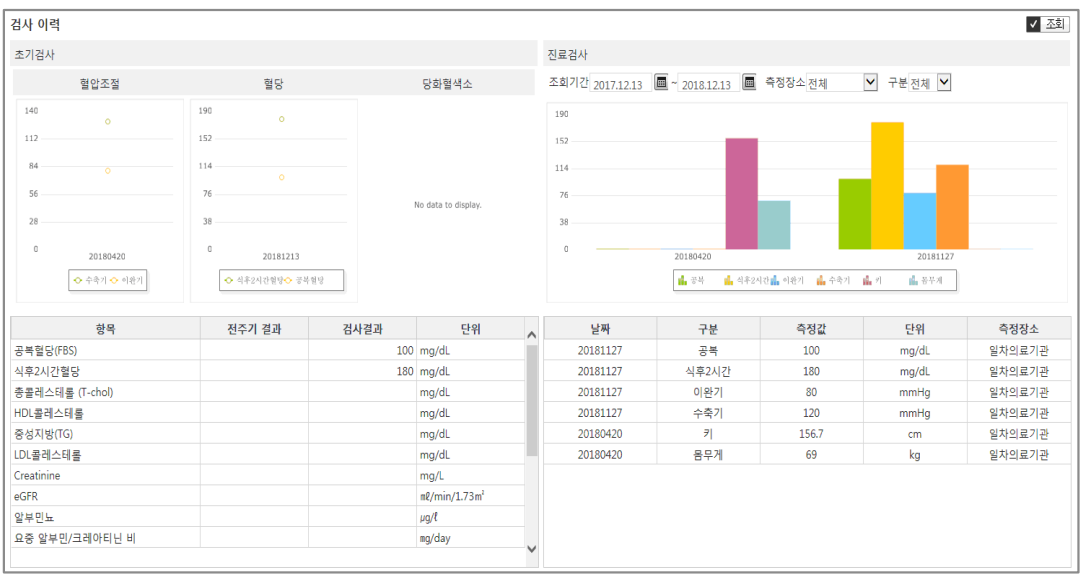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검사이력 통합 조회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계획/교육/점검 〉 케어플랜/교육 〉 검사이력
업무설명	1. 조회 ① 조회조건 : 조회기간, 측정장소(의원, 자가), 구분(혈압, 혈당, 키, 몸무게) ② 조회조건 선택 후 [조회] 클릭 ③ 검사값과 그래프 조회
주의사항	※ 그래프 하단에 범례 클릭 : 해당항목 보이기/감추기

3.2 소그룹 교육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다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계획/교육/점검 〉 소그룹교육
업무설명	1. 조회 ① 조회조건 : 교육구분, 계획수립일, 교육이수여부 ② 조회조건 선택 후 [조회] 클릭 2. 교육실시 ① 소그룹 교육은 조회된 대상자 중 1회 최대 10명까지 가능 ② 교육항목의 [Play] 클릭 - 교육자료 팝업창에서 교육 실시 ③ 교육완료 후 팝업창 닫기 - 안내창 “교육을 저장하시겠습니까?” : “예” 클릭 - 안내창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확인” 클릭
주의사항	※ 소그룹 교육은 동일한 교육명일 때만 가능함

3.3 대상자 점검 및 평가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1. 등록한 대상자의 질병관리 상태를 점검 및 평가함 2. 포괄평가, 케어플랜, 임상검사, 환자관리 등을 통해 관리된 환자의 질병관리 내용을 조회하여 점검·평가하고, 향후 관리계획을 추가함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계획/교육/점검 〉 대상자 점검 및 평가
업무설명	1. 조회 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환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② '기록차수' : 차수별 과거기록 조회 2. 생성 ① 기록차수, 등록일자 선택 ③ 전반적인 병력과 상태 : 신장, 체중, 허리둘레 - '포괄평가'에서 입력한 정보 표시 ④ 질환관리상태: 혈압, 혈당, 임상검사, 합병증 등 - '포괄평가'와 '임상검사'에서 입력한 정보 표시 ⑤ 약물요법 : 약물요법, 약물 순응도, 약물 부작용 - '케어플랜'에서 입력한 정보 표시되며, 약물 순응도/부작용 체크 ⑥ 교육 : 이미 교육한 내용 및 향후 교육할 내용 표기 - '교육상담'에서 입력한 교육 리스트 표시 ⑦ 관리계획 : 비만,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의 생활습관 계획 재점검 - 적정체중은 '포괄평가'에서 입력한 정보 표시되며, 나머지 항목은 체크 3. 청구 ① 모든 점검 및 평가가 완료된 내용은 청구여부와 청구일자 입력
주의사항	※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작성 가능함 ※ 연간 2회 청구가 가능함

3.4 바우처 검사 및 결과 관리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맞춤형 검진바우처 대상자 검사일자와 검사결과 등록 및 조회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계획/교육/점검 〉 바우처 검사 및 결과관리
업무설명	1. 환자조회 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환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클릭 2. 기본정보 ① 검진바우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정보가 조회됨 3. 검사일자 등록 및 결과관리 ① 검사일자 등록 - 검사항목 선택 시 검사일자가 활성화됨(오늘날짜가 기본으로 설정됨) - 검사일자 입력 후 [저장]클릭 - 〈검사결과관리〉 활성화됨 ② 검사결과 관리 - 검사항목별 검사결과 일자, 결과값, 판독결과 입력 후 [저장] 클릭 ③ 청구여부 - '5.2. 바우처 청구의뢰' 화면에서 입력된 청구여부 표기(Y : 청구, N : 미청구)
주의사항	※ 검사 일자 저장 후 수정불가

4. 대상자 관리

4.1 대상자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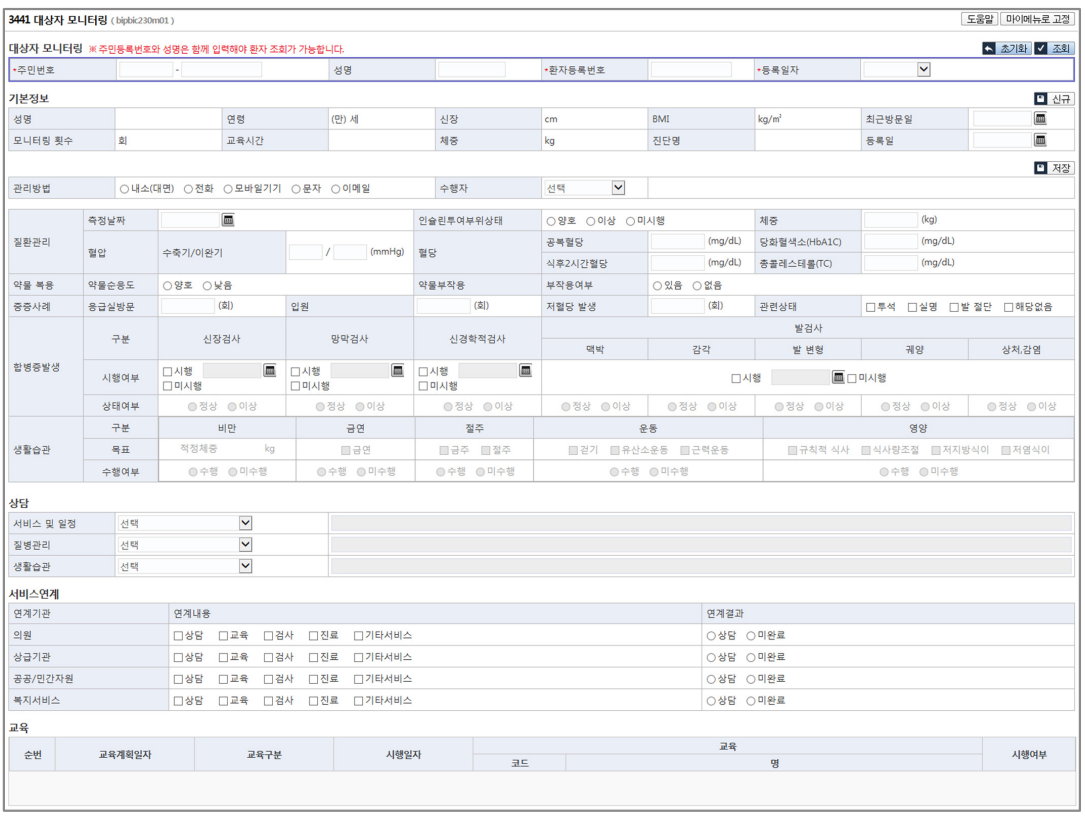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대상자 질환과 자가관리 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대상자관리 〉 대상자 모니터링
업무설명	1. 환자검색 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환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② '등록일자': 등록일자별 과거기록 조회 2. 기본정보 ① 검색한 환자의 성명, 연령 등 기본정보가 조회됨 ② [신규] : 새로운 기본정보 생성을 원할 경우 [신규] 클릭하여 등록함 3. 환자관리 ① 필수입력 : 관리방법, 수행자 ② 선택입력 : 질병관리, 혈압·혈당, 약물복용, 합병증, 생활습관 등 -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함 4. 상담 및 서비스 연계 ① 상담 및 서비스 연계내용을 입력함 5. 교육 ① 교육 진행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조회됨
주의사항	

4.2 문자발송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LMS) 발송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대상자관리 〉 문자발송
업무설명	1. 환자검색 ① 주민등록번호, 성명, 환자등록번호, 등록일자 입력 후 [조회] 클릭 2. 문자발송 대상 ① 검색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조회됨 ② 문자발송 대상자를 선택√함 3. 문제내용 선택 ① [문자내용 관리] : 자주 사용하는 문자를 등록함 ② 발송하고 싶은 문자내용을 입력함 ③ 문자발송 : [발송] 클릭 4. 문자발송 이력조회 ① 〈문자발송대상〉에서 '대상자 성명'을 클릭 - 상세 문자발송 이력이 조회됨 5. 발송 전화번호 : 의원 전화번호가 표기됨
주의사항	※ 최근 2개월 이내 측정수치 전송이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문자발송이 가능함 (최근 2개월 이내에 측정수치 전송이력이 없는 대상자는 [발송]버튼 비활성화) ※ 대상자별로 월 최대 6회까지 발송 가능함

4.3 전화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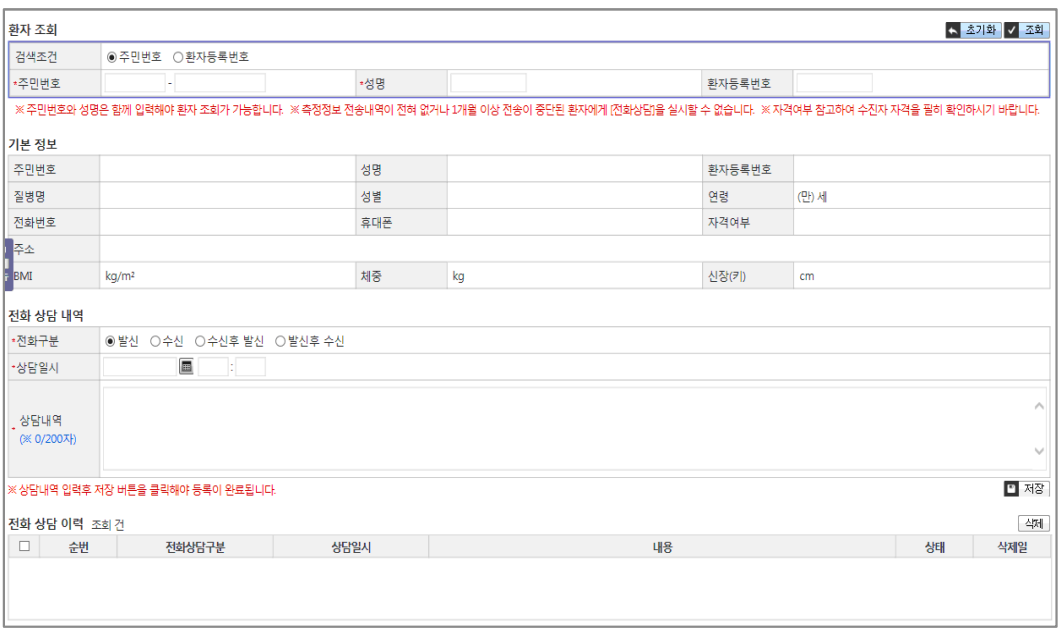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대상자에게 전화상담한 내역 입력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대상자관리 〉 전화상담
업무설명	1. 환자검색 ① 주민등록번호, 성명, 환자등록번호, 등록일자 입력 후 [조회] 클릭 2. 기본정보 ① 검색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기본정보가 조회됨 3. 전화상담내역 ① 전화구분, 상담시작 일시, 상담내역 입력 후 [저장] 4. 전화상담이력 ① 상담이력이 조회되며, 이력 수정 및 삭제 가능함 - 삭제된 이력은 음영처리됨
주의사항	※ 최근 2개월 이내 측정수치 전송이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전화상담 내역 입력이 가능함

4.4 혈압/혈당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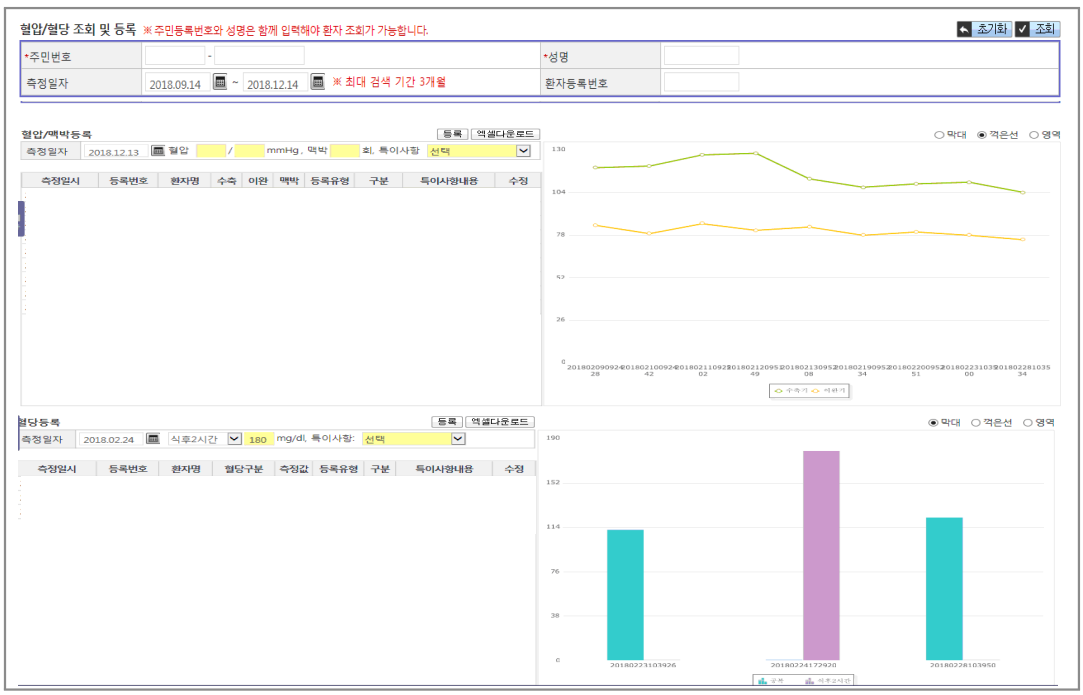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대상자의 혈압/혈당 수치 등록 및 조회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대상자관리 〉 혈압/혈당 기록
업무설명	1. 환자검색 ① 주민등록번호, 성명, 환자등록번호, 측정일자 입력 후 [조회] 클릭 - 검색기간은 최대 3개월임 2. 수치 등록 ① 혈압/맥박 등록 : 측정일자, 혈압, 맥박, 특이사항 입력 후 [등록] 클릭 ② 혈당등록 : 측정일자, 구분(공복/식후2시간), 혈당, 특이사항 입력 후 [등록] 클릭 3. 공통사항 ① 수치 리스트 : 기록한 수치가 조회됨 - 수정 가능, 삭제 불가능 ② 그래프 변경 : 그래프 모양 변경(막대, 꺾은선)이 가능함 ③ [엑셀 다운로드] : 조회한 결과는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함
주의사항	

5. 청구지원

5.1 청구지원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대상자 별 청구가능 내역 조회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청구지원 〉 청구지원
업무설명	1. 조회 ① 월별 조회 2. 조회결과 ① 청구대상 내역이 조회됨 ② [엑셀다운] : 조회내역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함
주의사항	※ 해당 화면에서 서비스 실시내역을 조회하여 의원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청구 프로그램에 서비스일자, 수가코드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청구해야 함. 위 화면에서 조회한 내역과 청구 내역이 상이한 경우 진료비 삭감 사유가 됨.

5.2 바우처 청구의뢰 여부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검진바우처 검사항목에 대한 청구내역 조회/저장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청구지원 〉 바우처 청구의뢰 여부
업무설명	1. 바우처 청구의뢰 조회 ① 주민등록번호, 성명, 환자등록번호, 청구여부 등을 입력 후 [조회] 클릭 2. 바우처 청구의뢰 내역 ① 조회조건에 따른 대상자 내역이 조회됨 3. 바우처 청구 ① 내역에서 해당 건을 선택√후 [저장] : 바우처 청구여부 N → Y로 변경됨 ② [엑셀다운로드] :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함
주의사항	※ 해당 화면에서 대상자별 검사 실시내역(검사명, 검사일자) 및 청구여부를 조회하여, 의원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청구해야함

6. 현황관리

6.1 대상자 관리 현황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의원에서 등록한 대상자의 현황 조회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현황관리 〉 대상자 관리현황
업무설명	1. 질병별 환자현황 조회 ① 질병별 등록된 환자 및 종결환자를 조회함 ② [상세보기] : 좌측 인원수의 환자 리스트 조회 가능 2. 이상수치 발생현황 조회 ① 혈압, 혈당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환자현황을 조회함 ② [상세보기] : 좌측 인원수의 환자 리스트 조회 가능 3. 혈압/혈당 미측정 현황 조회 ① 혈압/혈당수치 전송내역이 없는 환자현황 조회 ② [상세보기] : 좌측 인원수의 환자 리스트 조회 가능 4. 서비스 현황조회 ① 각 서비스별 환자현황 조회 ② [상세보기] : 좌측 인원수의 환자 리스트 조회 가능
주의사항	

7. 게시판

7.1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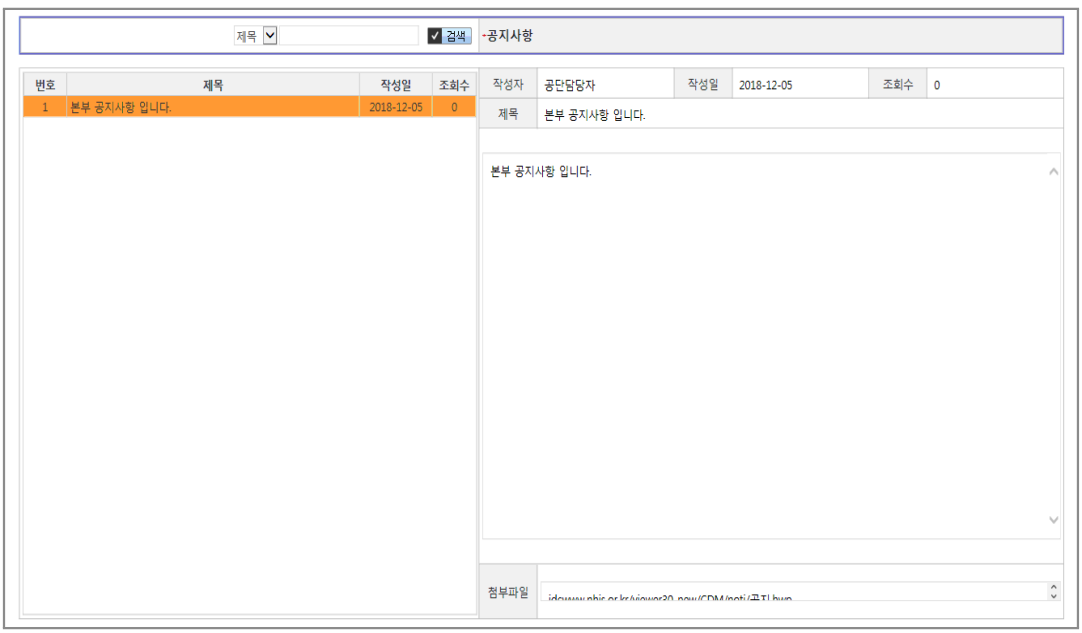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공지사항 조회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게시판 〉 공지사항
업무설명	1. 게시글 목록(왼쪽) ① 작성된 공지사항 목록이 조회됨 2. 상세내용(오른쪽) ① 공지사항 상세내용 및 첨부파일이 조회됨
주의사항	

7.2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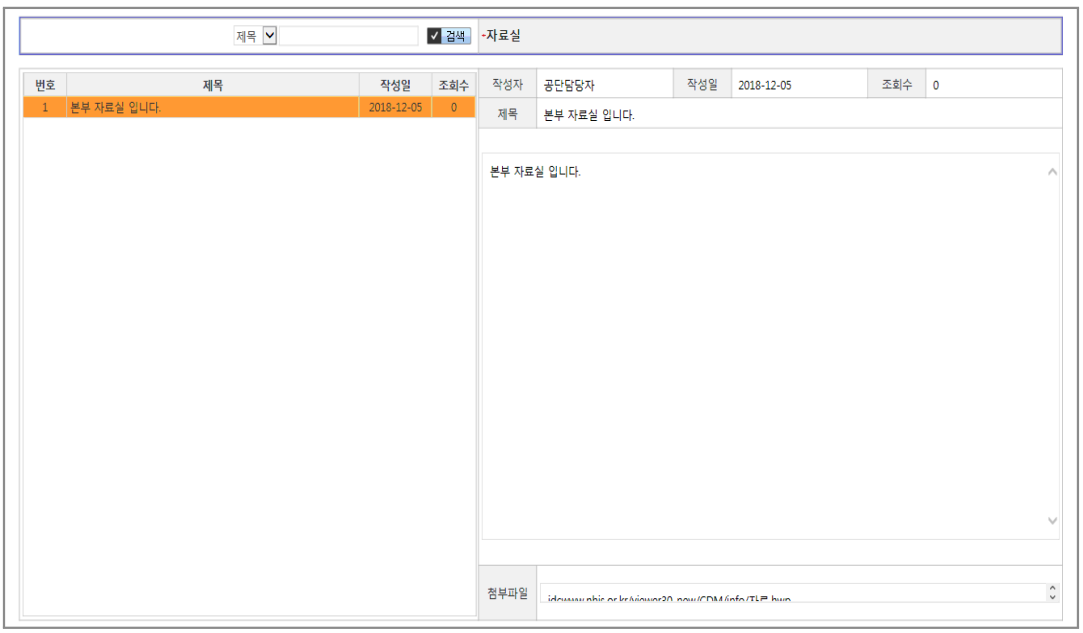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공지된 자료 조회
접근경로	일차만성질환 〉 게시판 〉 자료실
업무설명	1. 게시글 목록(왼쪽) ① 작성된 자료 목록이 조회됨 2. 상세내용(오른쪽) ① 자료내용 상세내용 및 첨부파일이 조회됨
주의사항	

Ⅱ 지역사회 연계기관

요약
*

1) 시스템 명칭 : 지역사회 연계기관
   ※ 접속URL : http://codi.nhis.or.kr/

2) 운영목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함
- 연계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하기 위함
- 의원과 연계기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함

3) 시스템 사용자
- 사업에 참여하는 연계기관(보건소, 건강동행센터, 공단 센터 등)의 전문인력(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4) 시스템 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5) 주요기능
- 연계기관 및 직원신청
- 교육관리
- 기관방문관리
- 기관관리

시스템 메뉴

메뉴명	주요기능
• 연계기관 및 직원 신청	
연계기관 참여신청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계기관의 정보를 입력함 • 연계기관 신청을 완료해야만 이후 시스템 로그인이 가능함
연계기관 직원등록 신청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계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을 등록함
• 교육관리	
대상자 조회	• 의원에서 교육을 의뢰한 대상자를 조회함
예약	• 의뢰받은 교육 시행을 위한 일자와 시간을 예약함
미방문자 관리	• 연계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대상자를 조회함
교육 및 결과전송	• 의뢰받은 교육 시행 후 그 결과를 의원에 전송함
고유사업	• 의뢰받은 교육 외에 기관 고유의 사업을 등록 및 조회함
검사결과	• 의뢰받은 대상자의 검사결과를 조회함
소그룹교육	• 소그룹(다수의 대상자) 교육결과를 기록함
교육콘텐츠 관리	• 기관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콘텐츠를 관리함
• 기관방문관리	
SMS일괄관리	• 다수의 대상자에게 SMS를 일괄 발송함
SMS개별관리	• 한명의 대상자에게 SMS를 개별 발송함
미방문자 통보관리	• 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대상자를 의원에 통보함
• 기관관리	
권한관리	• 기관 사용자의 시스템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함
예약설정	• 예약 가능/불가능, 시간 및 인원수 등을 사전 설정함
물품수불관리	• 기관 물품의 입/출고 내역을 관리함
연계기관행사관리	• 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참여인원을 등록함

1. 연계기관 및 직원신청

1.1 연계기관 참여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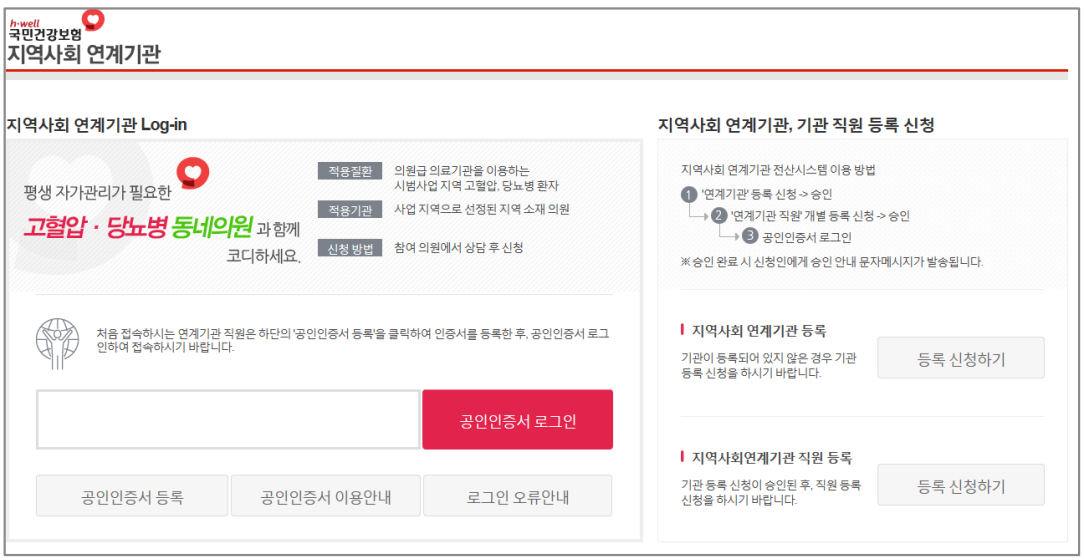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사업에 참여하는 연계기관 정보를 등록함
접근경로	https://codi.nhis.or.kr 접속 〉 연계기관 참여신청
업무설명	1. 연계기관 참여신청 ① 입력항목 : 기관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② [신청] 클릭
주의사항	※ 건강보험공단에서 기관신청 승인이 완료된 후에 직원신청이 가능함

1.2 연계기관 직원 등록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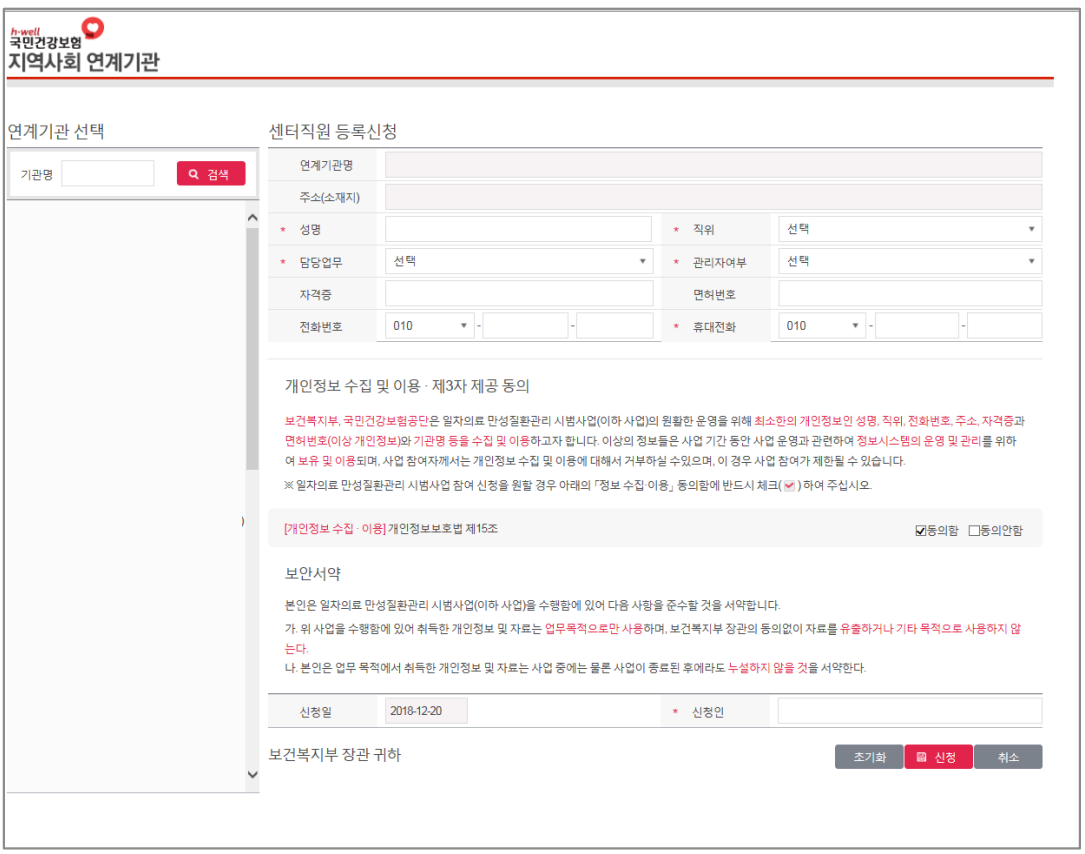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사업에 참여하는 연계기관의 직원을 신청함
접근경로	https://codi.nhis.or.kr 접속 〉 연계기관 직원 등록신청
업무설명	1. 연계기관 직원 등록 신청 ① 입력항목 : 성명, 직위, 담당업무, 관리자여부, 자격증, 면허증 등 ② [신청] 클릭
주의사항	※ 관리자 여부 : 기관 직원의 권한관리 등 기관 내 관리자 지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신청 승인이 완료된 후에 부여된 직원번호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 가능함

2. 교육관리

2.1 대상자 조회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의원에서 교육을 의뢰한 대상자를 조회함
접근경로	교육관리 〉 의뢰교육관리
업무설명	1. 대상자조회 ① 대상자 구분(예약자, 미예약자, 이수자), 이름, 의뢰기관 ② [조회] 클릭 :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조회
	2. 의뢰교육
	① 검색된 대상자 선택√
	② 선택한 대상자의 상세 교육목록 확인
주의사항	

2.2 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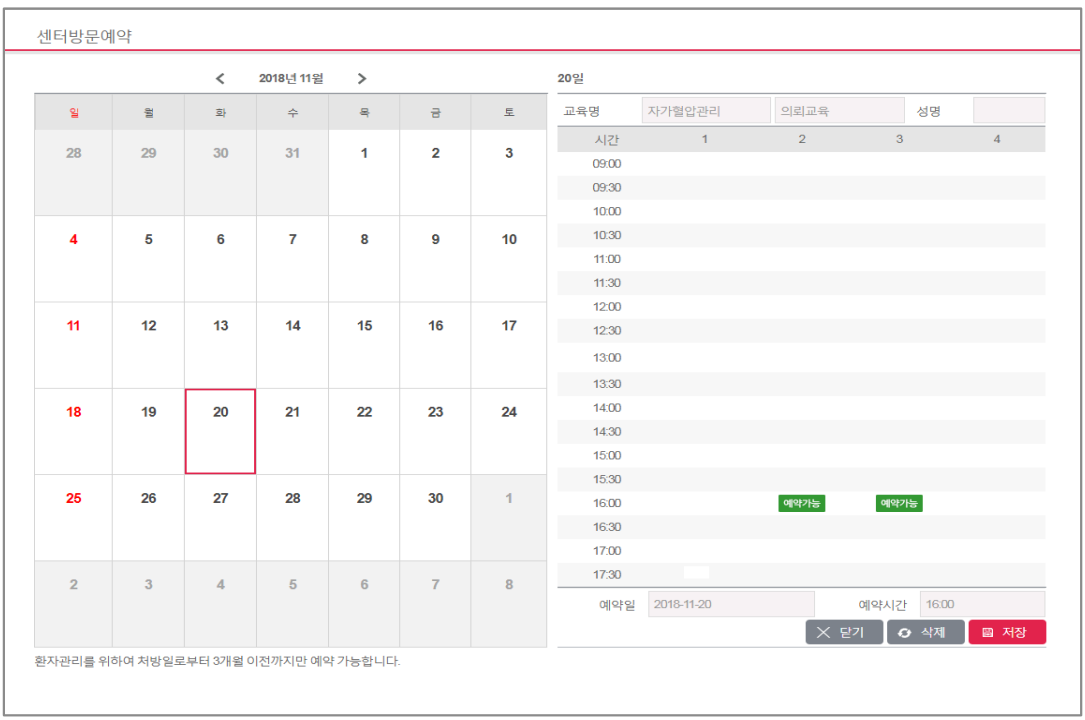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의뢰받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 일자와 시간 예약
접근경로	교육관리 〉 의뢰교육관리 〉 [예약]
업무설명	1. [예약] 클릭 ① 대상자별 예약팝업
	2. 예약설정
	① 좌측 달력에서 예약 가능한 일자 선택√
	② 우측 시간목록에서 [예약가능] 클릭 후 [저장] 클릭 - 클릭한 시간대에 대상자 예약이 지정됨
	3. 예약삭제
	① 날짜 선택 후 [삭제] 클릭
주의사항	※ 교육별 [예약가능] 설정은 '기관관리>예약설정'에서 미리 등록해야함

2.3 미방문자 관리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대상자 처리
접근경로	교육관리 〉 의뢰교육관리 〉 [미방문자관리]
업무설명	1. [미방문자 관리] 클릭 ① 미방문자 팝업 - 사유 선택√, 내용 입력 후 [저장] 클릭 2. 기관방문관리 〉 미방문자통보관리(☞ 메뉴이동) ① [미방문자 관리]에서 처리한 대상자 조회 ② 통보대상자 선택√ 후 [전송]
주의사항	※ 미방문 처리 후 '기관방문관리>미방문자 통보관리' 화면에서 의뢰기관으로 미방문 통보를 완료해야 의원에서 확인 가능함

2.4 교육 및 결과전송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의뢰받은 교육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의원에 전송
접근경로	교육관리 〉 의뢰교육관리 〉 [의뢰교육]탭
업무설명	1. 교육 대상자 선택 ① 조회 - 왼쪽 조회조건에서 교육결과를 전송해야하는 대상자를 선택함 2. 교육실시 ① [의뢰교육]탭의 교육목록에서 [Play] 클릭 ② 교육 팝업창 - 팝업창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③ 교육 종료 후 팝업창 닫기 - 안내창 : “의뢰교육을 저장하시겠습니까? - [확인] 클릭 (확인이 완료되어야 의원에서 교육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3. 연계기관→의원 메모 ① 메시지 작성 ② [미전송] 클릭
주의사항	※ 표준메시지 : 자주 사용하는 문구 저장하여 사용가능 ※ 메모 전송 후에는 수정 및 삭제 불가능

2.5 고유사업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의뢰받은 교육 외에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록 및 조회
접근경로	교육관리 〉 의뢰교육관리 〉 [고유사업] 탭
업무설명	1. 등록 및 작성 ① [초기화] ② 정보입력 : 교육일, 동기단계, 동기강화상담 실행여부 입력 ③ 교육종류, 교육수준, 연계 등 입력 ④ 교육여부 : 지속교육, 교육종료 선택
주의사항	※ '교육종료'를 선택한 경우 해당 내역에 교육을 추가할 수 없음 ※ 입력내역은 수정·삭제 가능

2.6 검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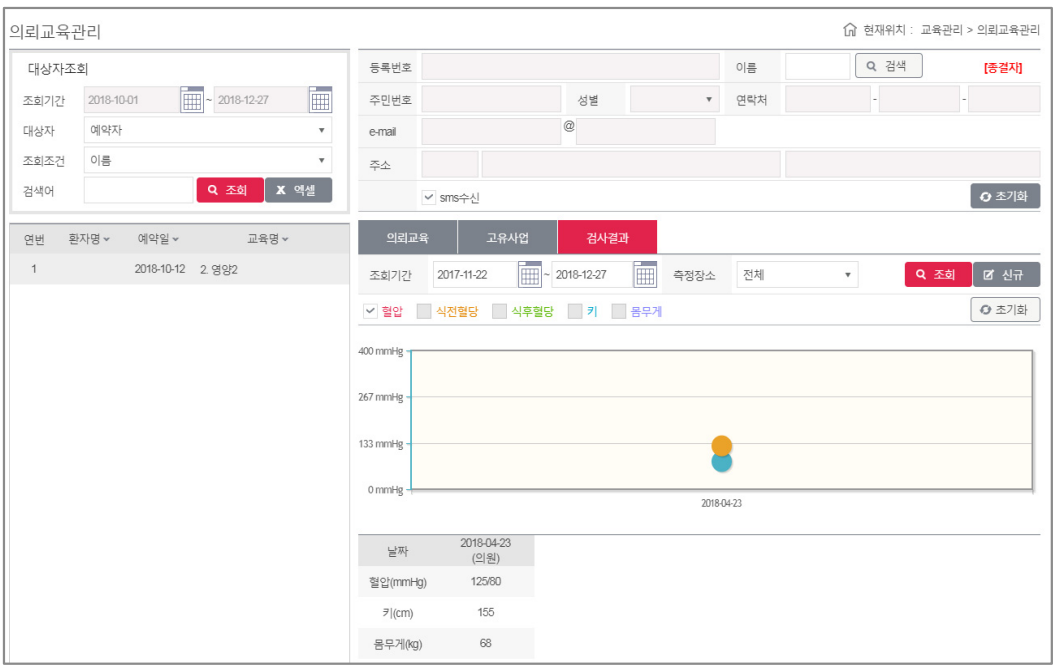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대상자 검사결과 종합조회
접근경로	교육관리 〉 의뢰교육관리 〉 [검사결과]
업무설명	1. 검사결과 조회 ① 조회기간, 측정장소 선택 후 [조회] 클릭 - 하단 그래프에 검사결과가 조회됨 ② 상세내역 확인 및 수정·삭제 - 그래프의 결과값을 더블클릭하면 상세내용 팝업 - 기관에서 입력한 결과는 수정/삭제 가능 2. 검사결과 입력 ① [신규] 클릭 ② 내용입력 : 검사일, 검사명, 검사결과 ③ [등록] 클릭
주의사항	

2.7 소그룹교육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소그룹(다수의 대상자) 교육 시행 및 기록
접근경로	교육관리 〉 소그룹교육관리
업무설명	1. 대상자 조회 ① 교육구분 선택 후 [조회] 클릭 - 해당교육으로 의뢰된 대상자 명단이 조회됨 2. 교육실시 ① 교육대상자 선택√ ② 교육목록에서 [Play] 클릭 ③ 교육팝업창 - 팝업창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④ 교육 종료 후 팝업창 닫기 - 안내창 : “의뢰교육을 저장하시겠습니까? - [확인] 클릭 (확인이 완료되어야 교육결과가 일괄 저장됨)
주의사항	

2.8 교육콘텐츠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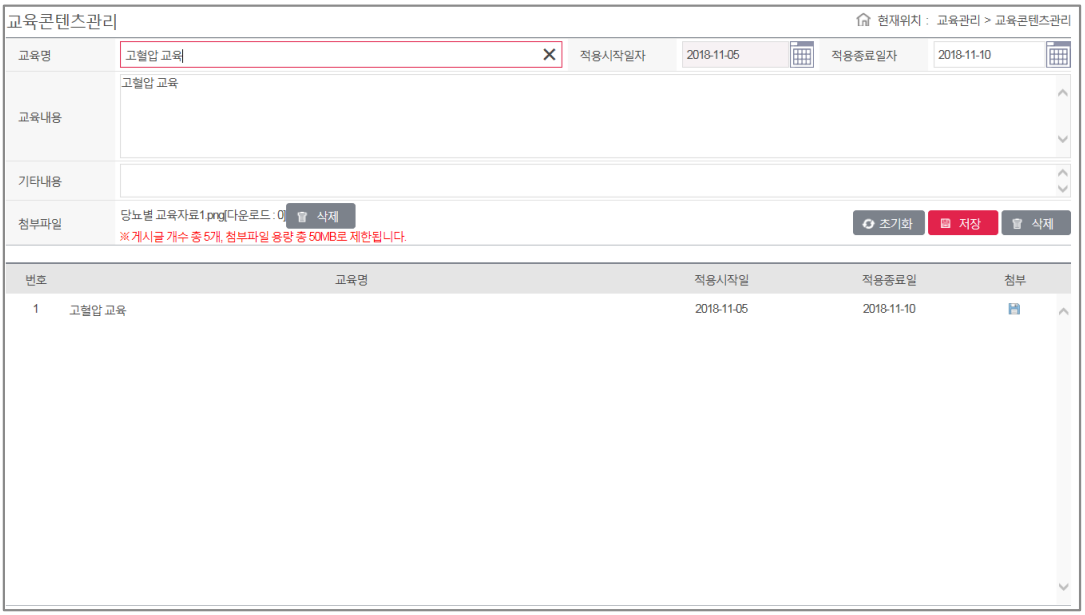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기관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육콘텐츠 관리(저장 및 조회)
접근경로	교육관리 〉 교육콘텐츠 관리
업무설명	1. 교육콘텐츠 등록 ① 교육명, 교육내용, 적용시작/종료일자, 첨부파을 등록 후 [저장] 클릭 2. 교육콘텐츠 조회 ① 하단의 교육콘텐츠 내역 선택√ - 상단에 상세내역 조회됨 ② 상세내역 조회하여 내용 수정·삭제 가능함
주의사항	

3. 기관방문관리

3.1 SMS일괄관리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다수의 대상자에게 SMS 일괄발송
접근경로	기관방문관리 〉 SMS일괄관리
업무설명	조회 ①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② 내역에서 일괄발송 대상 선택√ - 조회조건에서 메시지 문구 선택 ③ [SMS전송] 클릭
주의사항	※ SMS 수신을 거부한 대상자는 조회되지 않음

3.2 SMS개별관리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한명의 대상자에게 SMS 개별발송
접근경로	기관방문관리 〉 SMS개별관리
업무설명	1. 조회 ① 대상지 이름 입력 후 [조회] 클릭 2. 입력 ① 전송구분, 내용 입력 ② [SMS전송] 클릭 3. 과거내역 ① 화면 하단에 기 전송된 SMS 내용 선택√
주의사항	※ SMS 수신을 거부한 대상자는 조회되지 않음

3.3 미방문자통보관리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연계기관에 미방문한 대상자를 의원에 일괄 통보
접근경로	기관방문관리 〉 미방문자통보관리
업무설명	1. 조회 ①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2. 통보 ① 조회된 결과 중 통보대상자 선택√ ② [전송] 클릭
주의사항	

4. 기관관리

4.1 권한관리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기관의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권한관리
접근경로	기관방문관리 〉 권한관리
업무설명	1. 직원명단 조회 2. 권한지정 ① 지정할 직원 선택√ ② 상단에 표기된 직원정보 수정 및 저장
주의사항	※ 3개월 이상 미접속자는 '휴면대상'에 'Y'로 표기됨

4.2 예약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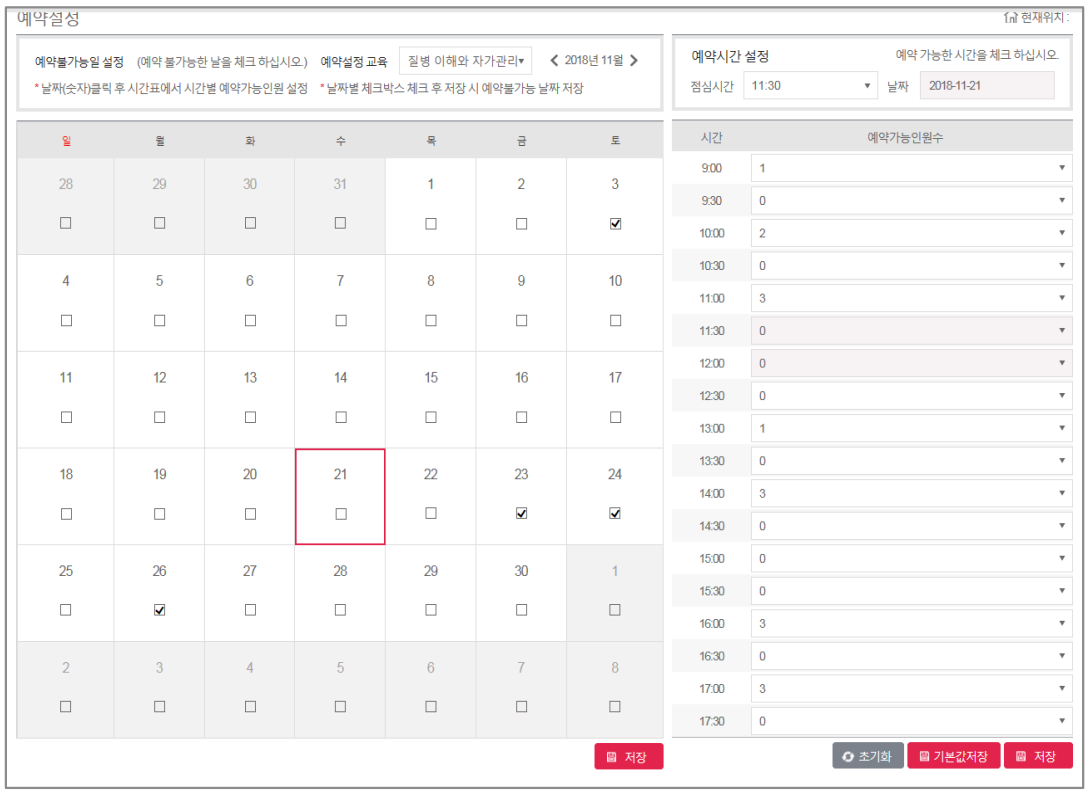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예약 가능/불가능한 교육일정(예약 가능한 시간, 인원)을 미리 설정함
접근경로	기관방문관리 〉 예약설정
업무설명	1. 예약 불가능일 설정 ① 좌측 달력에서 예약 불가능한 날짜 선택√ 후 [저장] 클릭 2. 예약 가능일 설정 ① 좌측 달력에서 예약 가능한 날짜 선택하여 √ 해지 후 [저장] 클릭 ② 시간대별 예약가능 인원 수 설정(시간별 최대 4명) 후 [저장] 클릭
주의사항	※ 기본값 저장 : 해당 월에 시간대별 예약 가능 인원수가 일괄 적용됨

4.3 물품수불관리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연계기관의 물품 입출고 내역관리
접근경로	기관방문관리 〉 물품수불관리
업무설명	1. 물품등록 ① [물품등록] 클릭 ② [+추가] 클릭 ③ 물품명 입력 후 [저장] 클릭 2. 입고등록 ① 입고일, 품목, 수량, 사용구분, 세부내역 입력 후 [저장] 클릭 3. 출고등록 ① 입고일, 품목, 수량, 사용구분, 세부내역 입력 후 [저장] 클릭
주의사항	※ 입고내역 : 입고일자 기준으로 조회됨 ※ 출고내역 : 출고일자 기준으로 조회됨

4.4 연계기관행사관리

〈화면 및 기능설명〉

기능개요	기관에서 실시한 행사 및 참여인력 등록
접근경로	기관방문관리 〉 기관행사관리
업무설명	1. 행사등록 ① 행사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② 참여인원 등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입력 후 [저장] 클릭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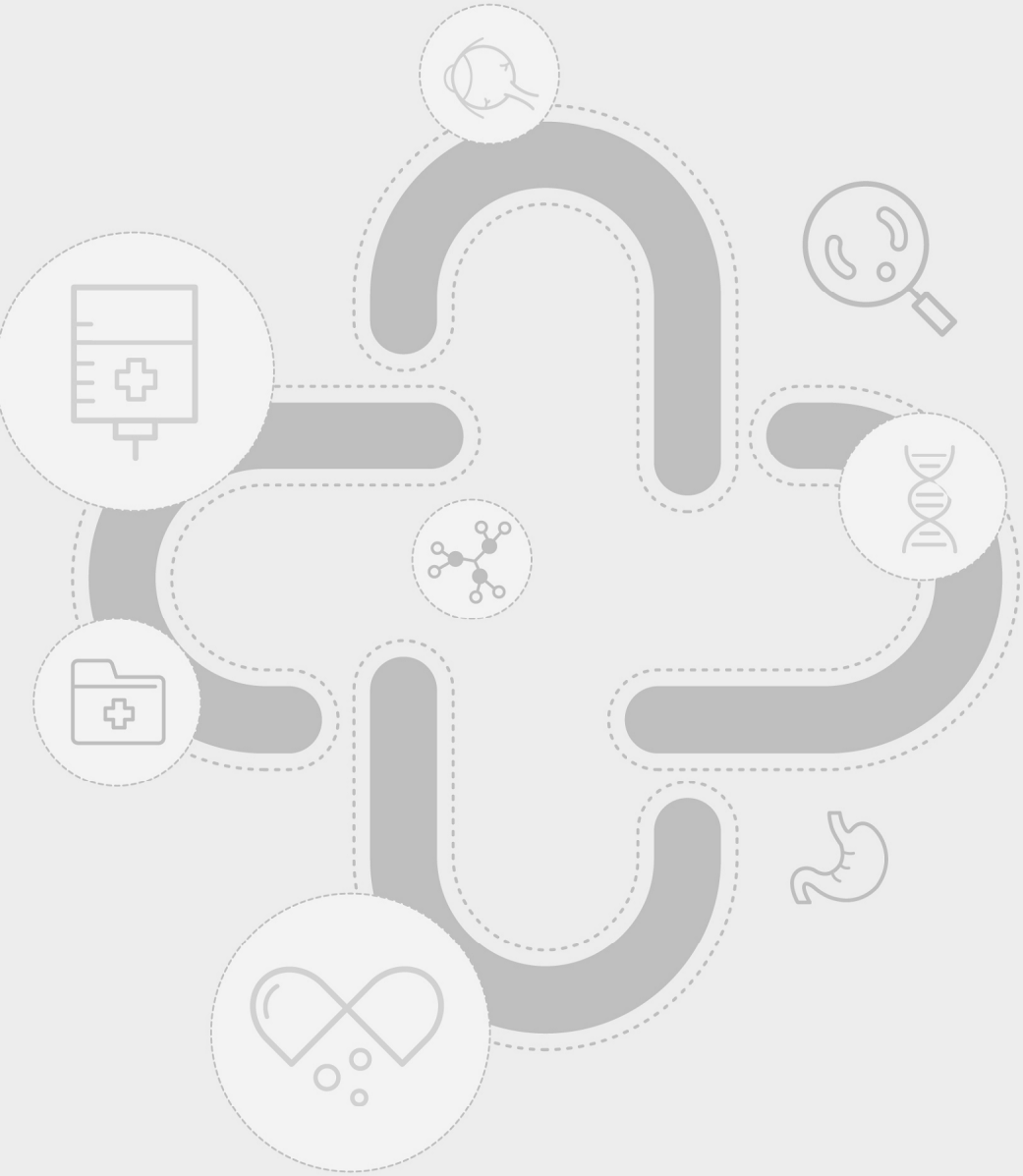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Chapter 06

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Ⅰ. 요양급여 기준
Ⅱ. 산정지침
Ⅲ.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Ⅳ. 청구 원칙
Ⅴ. 명세서 작성요령
Ⅵ. 보완 및 추가청구

Chapter 06

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Ⅰ 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의 대상

(1) 급여의 담당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2) 급여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요양급여를 받고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환자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에 대상자 정보가 입력된 자

  *, ** :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참조

나.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1) 요양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2) 요양급여의 비용부담

- 본 지침 '6장 Ⅲ.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기금이 부담한다.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Ⅱ 산정지침

가.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만성질환 관리 및 개인정보제공 등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등록된 환자에게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를 말한다.

(2)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외래진료 시 산정한다.

(3)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6)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외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나.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1)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최초 등록한 만성질환자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연 1회 이내로 산정한다.

(2) **지속 계획수립료(2주기부터)**는 직전년도 관리계획이 끝나고, 차기년도 계획수립 시 이전 관리결과 평가 등을 반영하여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 후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연 1회 이내로 산정한다.

(3) **점검 및 평가료**는 평가 및 계획수립 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환자의 관리계획 이행정도 및 질환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환자에게 제공한 경우로 환자 상태에 따라 연 2회 이내로 산정한다.

다. 환자관리료

(1) 환자관리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임상검사 측정정보를 확인하고 약물복용 및 합병증 유무 등을 모니터링 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한 질환관리서비스 및 진료예약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또한 환자상태에 따른 생활습관개선 지원 및 지역사회 등으로 의뢰·연계하는 업무 등을 포함한다.

(2) 환자의 혈압·혈당 측정정보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약물복용, 합병증 발생 유무, 생활습관 개선에 관한 모니터링 등 질환관리 서비스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한 경우 연간 4회(분기별) 이내로 산정한다.

라. 교육·상담료

(1) **초기 교육·상담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한 후 의사가 30분 이상, 환자와 1대1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연간 1회 이내로 산정한다.

(2) **지속(2주기부터) 교육·상담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한 후 의사가 20분 이상, 환자와 1대1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연간 1회 이내로 산정한다.

(3) **기본 교육·상담료**는 통합 및 생활습관개선으로 구분되고, 연간 8회 이내로 산정한다.

(4) **통합 교육·상담료**는 의사가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등 만성질환 전반에 대하여 환자와 1대 1 또는 10명이내의 집단으로 1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5)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하여 환자와 1대 1 또는 10명이내의 집단으로 1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6) **집중 교육·상담료**는 기본 교육·상담을 4회 이상 실시한 만성질환자 중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환자와 1대 1 또는 10명이내의 집단으로 3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연 1회 이내로 산정한다.

(7) 초회, 기본 또는 집중 교육·상담을 중복 실시하거나, 연간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상담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Ⅲ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 '19년 의원급 기준 83.4원)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만성질환 통합관리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1.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IB011	(1)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526.38	43,900
	IB012	(2)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293.76	24,500
	IB013	나. 점검 및 평가	293.76	24,500
	IB020	**2. 환자관리료**	335.73	28,000
		3. 교육·상담료		
		가. 초회 교육·상담		
	IB031	(1) 초기	413.67	34,500
	IB032	(2) 지속(2주기부터)	288.97	24,100
		나. 기본 교육·상담		
		(1) 통합		
	IB033	(가) 개인	124.70	10,400
	IB034	(나) 집단	37.17	3,100
		(2) 생활습관개선		
	IB035	(가) 개인	106.71	8,900
	IB036	(나) 집단	31.18	2,600
		다. 집중 교육·상담		
	IB037	(1) 개인	230.22	19,200
	IB038	(2) 집단	68.35	5,700

Ⅳ 청구 원칙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함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나. [청구시기] 시범사업내역(만성질환 통합관리)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한다.

다.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만성질환 통합관리)과 비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라.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본 지침에서 정한 급여목록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다른 요양급여내역과 분리하여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연이어서 각각 작성한다.

마. [특정내역 기재] 시범사업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12'(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를 기재하여 청구한다.

V 명세서 작성요령

가. 일반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요양급여 일수	□ 해당 명세서상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경우에도 "1"을 기재한다.

나. 상병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내원일자	□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의 경우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관리 계획서를 교부한 일자를 기재한다. □ 환자관리료의 경우 월2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질환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청구하는 수가로 청구 시 내원일자는 분기별 마지막 달 2회째 실시·기록한 일자를 기재한다. □ 교육·상담료의 경우 내원한 일자를 기재한다.

다. 진료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가)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특정기호 "S012"를 반드시 기재한다. (예시) 등록한 고혈압 재진환자가 의원에 내원하여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결과를 받을 경우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011	43,900	1	1	43,9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2	

주)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table>
<tr><th>항목</th><th>세부작성요령</th></tr>
<tr><td>나) 환자관리료</td><td>(예시) 등록한 고혈압 재진환자에게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table>
<tr><th>항</th><th>목</th><th>코드 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r>
<tr><td>01</td><td>03</td><td>1</td><td>IB020</td><td>28,000</td><td>1</td><td>1</td><td>28,000</td></tr>
<tr><td colspan="8">특정내역기재란 (예시1)</td></tr>
<tr><td colspan="2">발생단위구분</td><td colspan="2">줄번호</td><td colspan="2">특정내역구분</td><td colspan="2">특정내역</td></tr>
<tr><td colspan="2">1</td><td colspan="2"></td><td colspan="2">MT002</td><td colspan="2">S012</td></tr>
</table>
주)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td></tr>
<tr><td>다) 교육·상담료</td><td>(예시) 등록한 당뇨병 재진환자에게 통합 교육·상담을 일대일로 실시한 경우
<table>
<tr><th>항</th><th>목</th><th>코드 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r>
<tr><td>01</td><td>03</td><td>1</td><td>IB033</td><td>10,400</td><td>1</td><td>1</td><td>10,400</td></tr>
<tr><td colspan="8">특정내역기재란</td></tr>
<tr><td colspan="2">발생단위구분</td><td colspan="2">줄번호</td><td colspan="2">특정내역구분</td><td colspan="2">특정내역</td></tr>
<tr><td colspan="2">1</td><td colspan="2"></td><td colspan="2">MT002</td><td colspan="2">S012</td></tr>
</table>
주)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td></tr>
</table>

라.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2	특정기호 (*)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S012”를 기재 ▸ 기재형식 : X(4) (예시)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MT002 S012

Ⅵ 보완 및 추가청구

가. 보완 청구

-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한 건에 대하여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나. 추가 청구

-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다. 보완·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Chapter 07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지침

Ⅰ. 사업 개요
Ⅱ. 사업 운영
Ⅲ. 시범사업 지역 및 참여기관
Ⅳ. 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

Chapter 07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지침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개인별 위험요인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과 검진 이후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 증가
- 4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맞춤형 검진바우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 (예방적 건강관리) 40세 이상 검진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2. 사업 목적

-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으로 검진 사후관리 강화는 물론, 진료와 연계한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합병증 예방
-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활성화 유인

3. 실시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1항 및 제4항, 제44조 제1항
- 국정과제(44-③) 예방적 건강관리

4. 주요 내용

■ **사업 기간** : 2018. 12월 ~ 2019. 12월

● **'19년 12월까지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 세부방안 확정·시행

■ **사업 대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최근 **2개년(2017년~2018년)도**에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료를 받고, **1일 이상 관련 치료약을 처방**받은 **환자 중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자**

■ **사업 내용**

● **(사업내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질환별 진료지침에서 권장하는 정기검사를 검진바우처로 제공

● **(검사항목)**

구 분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 + 당뇨병
검사항목	심전도, 포타슘(K), 소디움(Na)	미세알부민뇨, 안저검사, 당화혈색소	심전도, 포타슘(K), 소디움(Na), 미세알부민뇨, 안저검사, 당화혈색소

● **(검사방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질환별 해당 검사 실시

※ 단, 안저검사는 시범사업 지역내 안과의원에서 검사 실시

● **(검사횟수)** 시범기간 내 **1회**

● **(본인부담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 적용

- 건강보험대상자 : 10%
- 차상위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면제

● **(검사비용 지원)** 검진바우처 검사비용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10%)을 공단에서 지원

Ⅱ 사업 운영

1.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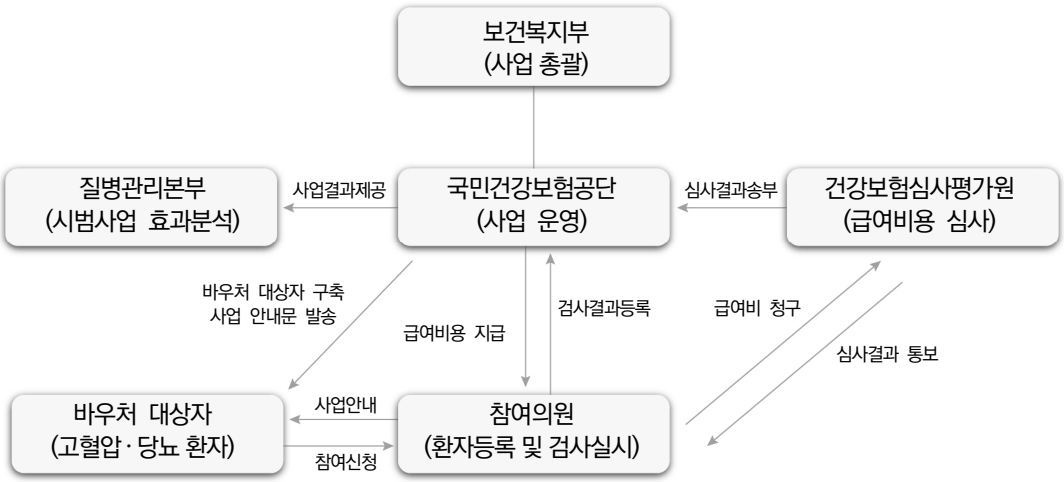

2. 운영 방식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환자 등록단계에서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이력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조정 가능

  ※ 단, 검진바우처 검사 및 검사결과 확인 목적의 내원은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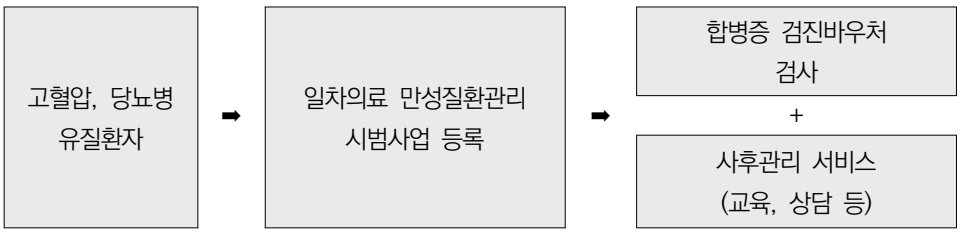

※ 만성질환관리 케어플랜 및 환자관리 교육·상담시 검사결과 활용

3. 운영 주체별 역할

- **보건복지부**
  -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및 시범사업 총괄
  - 향후 사업 확대 실시여부 검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대상자 발췌 및 구축 등)
  -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관리
  - 검사비용 이중지급 등 사후관리
  - 시범사업 현황관리(참여의원 및 환자 현황, 비용 지급현황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 시범사업 관련 청구 방법 마련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참여의원**
  - 시범사업 대상자 확인 및 사업설명, 환자 등록
  - 검진바우처 검사 및 결과등록
  - 요양급여비용 청구
- **질병관리본부**
  -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필요 항목 검토
  - 시범사업 대상자 검사항목 효과성 분석을 통한 결과 도출

4. 운영 프로세스

공단		참여의원		환자		참여의원		심사평가원		공단
대상자 구축	⇒	대상자 확인 및 사업안내	⇒	검진 바우처 참여신청	⇒	대상자 등록, 검사 및 결과등록, 비용청구	⇒	급여비용 심사 및 결과통보	⇒	급여비용 지급

- (대상자 구축) 시범사업 지역 내 40세 이상(1979.12.31.이전 출생자) 고혈압·당뇨병 환자 발췌 및 대상자 구축
  - 최근 2개년(2017년~2018년)도에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료를 받고 관련 치료 약제를 1일 이상 처방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대상자 확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맞춤형 검진 바우처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사업안내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일차만성질환/대상자등록/바우처대상자조회
- (환자 참여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참여의원에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제8호, 제9호) 작성·제출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신청 시 작성
    ※ 모바일(App) 건강iN을 통한 참여 신청도 가능
- (대상자 등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환자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 (검사 실시) 대상자 질환별 검사 실시
  - 고혈압(3종) : 심전도검사, 전해질검사 2종(소디움, 포타슘)
  - 당뇨병(3종) : 미세알부민뇨, 당화혈색소, 안저검사
  - 고혈압·당뇨병 복합(6종) : 각 질환별 검사항목 전체
    ※ 안저검사는 시범사업 지역 내 안과의원에서 실시
- (검사 방법)

검사항목	분류번호 (분류코드)	검 사 방 법
심전도	나-725 (E6541)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며, 사지단극유도 및 흉부유도를 포함하여 최저 12유도를 실시한다.
전해질 (소디움/포타슘)	누-280 (D2800)	진공시험관에 채혈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미세알부민뇨	누-300 (D3001) 누-300 (D3002) 누-300 (D3003)	소변검체를 채집하여 소변 내 Albumin을 측정한다.
당화혈색소 (Hb A1c)	누-306 (D3061) 누-306 (D3062) 누-306 (D3063) 누-306 (D3064) 누-306 (D3065)	정맥혈 또는 모세혈을 채취하여 혈액 내 당화혈색소를 측정한다.

검사항목	분류번호 (분류코드)	검 사 방 법
안저검사(촬영) (양측)	나-666 (E6660) 나-667 (E6670)	안저검사경(Funduscope) 또는 안저카메라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전해질 및 당화혈색소 검사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체검사 위탁 가능

- (검사결과 등록) 검사 실시항목별 검사 결과값 등록
- (급여비용 청구) 검진바우처 검사비용 전액(100%) 공단부담금 청구
  -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검사비용과 진찰료 등 시범사업 외 진료를 별도 분리하여 청구

    ※ 진찰료 등 시범사업 외 진료는 본인부담금 발생

5. 업무처리절차

검진바우처 대상자 발췌	**(공단)**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대상자 업로드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내부업무시스템 등
↓	
참여의원 및 참여환자 모집·등록	**(공단)** 시범사업 지역 내 의원(안과) 모집 **(의원)** 바우처 대상 확인 및 사업설명, 등록
↓	
검진바우처 검사 실시	**(의원)** 질환별 검사항목 검사 실시
↓	
검사결과 등록	**(의원)**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등록
↓	
급여(검사)비용 청구	**(의원)** 검사비용 전액(100%)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 시범사업 외 진료비(진찰료 등)와 분리 청구
↓	
급여(검사)비용 심사	**(심사평가원)** 급여(검사)비용 청구내역 심사 및 결과통보
↓	
급여(검사)비용 지급	**(공단)** 검사비용 전액 공단 지급
↓	
현황 및 통계관리	**(공단)** 신청 현황(의원별, 질환별) 및 검사여부 등
↓	
평가·분석	**(질병관리본부)**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

Ⅲ 시범사업 지역 및 참여기관

1. 시범사업 지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

2. 참여기관

- (대상) 시범사업 지역 내 소재한 의원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원
  - 단, 안과의원은 시범사업 지역 내 모든 의원 참여 가능
- (신청방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참여 신청
  - 참여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별지 서식 제7호)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신청시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포함 신청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일차만성질환/기관등록/참여기관신청 화면에서 신청

3.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안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대상, 본인부담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안내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모바일(App) 건강iN을 통한 참여 신청 시 제외

Ⅳ 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

1. 요양(의료)급여 기준

■ 급여의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자에 한함.

■ 급여의 담당

-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
  - 단, 안저검사는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안과의원에서 담당

■ 급여의 비용부담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된 각 검사항목별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 요양급여비용 전액(100%)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건강보험대상자) 바우처 검사비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10%)은 공단(운영비)에서 지원
  - (차상위대상자 및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따름

2.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 지침

■ 일반원칙

● 검진바우처 검사항목별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및「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일반기준) 참여의원이 검진바우처 검사를 실시하고 행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각 검사항목별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의원급)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 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미만을 4사5입한다.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의원 적용(건강보험 15%, 의료급여 11%)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의 검사료 및 위탁검사관리료는 제외

3.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검사항목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질환명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금액 (2018년)
고혈압	소디움(Na)	누-280	D280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	16.64	1,350
	포타슘(K)	누-280	D280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	16.64	1,350
	심전도	나-725	E6541	심전도 기록 및 판독	74.69	6,080
당뇨병	미세 알부민뇨	누-300	D3001	화학반응-육안검사(정성)	9.99	810
			D3002	정밀면역검사(정량)	194.90	15,860
			D3003	핵의학적방법 검사	153.50	12,490
	당화 혈색소	누-306	D3061	화학반응-장비측정	88.96	7,240
			D3062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88.96	
			D3063	정밀면역검사	88.96	
			D3064	분획분석	88.96	
			D3065	정밀분광-질량분석	88.96	
	안저검사 (양측)	나-666	E6660	정밀안저검사(편측)	47.41	3,860
		나-667	E6670	기본안저촬영(편측)	54.33	4,420

※ 미세알부민뇨 및 당화혈색소, 안저검사는 검사방법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실시

● 검사비용 : 급여목록별 상대가치점수에 의원급 점수당 단가 적용

※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공휴·야간가산 제외)

4.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방법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및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다.

■ 청구원칙

● **(급여비용 청구방법)** 참여의원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다.

● **(청구시기)** 검진바우처 검사비용은 검사 시행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 **(심사청구서)** 시범사업 내역(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비용)과 시범사업 외 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한 명세서는 시범사업 진료내역(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비용)과 시범사업 외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연이어 각각 작성한다.

● **(특정기호)**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S013”을 기재한다.

● **(특정내역 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에 특정기호 “S013”를 기재하여 청구한다.

■ 명세서 작성 요령

● 일반내역

항 목	세부작성요령
요양급여일수	• 해당 명세서상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내원일수	•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 상병내역

항 목	세부작성요령
내원일자	• 검사일자를 기재한다.

● 진료내역

항 목	세부작성요령
검진바우처 검사비용	• 맞춤형 검진바우처 관련 검사를 시행한 경우 아래 항목에 기재 – 항번호: “09항(검사료)” – 목번호: “01목(자체검사)” 또는 “02목(위탁검사)”

(예시1) A의원에서 고혈압 환자에게 전해질(Na, K) 및 심전도검사를 직접 실시한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9	01	1	D2800020	1,350	1	1	1,350
09	01	1	D2800060	1,350	1	1	1,350
09	01	1	E6541	6,080	1	1	6,08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주1)		MT002주2)	S013

주1) 특정내역 발생 단위별 해당 구분자(1 명세서 단위, 2 줄번호단위) 기재

2) MT002(특정기호):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특정기호 구분 코드 “S013”기재

(예시2) A의원에서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한 전해질(Na, K)를 ’18년 12월 3일 B의원(12345678)으로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항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9	02	0001	1	D2800020	1,350	1.1	1	1,485
09	02	0002	1	D2800060	1,350	1.1	1	1,485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주1)		MT002주2)	S013
2주1)	0001	JS005주3)	12345678/20181203
2주1)	0002	JS005주3)	12345678/20181203

주1) 특정내역 발생 단위별 해당 구분자(1 명세서 단위, 2 줄번호단위) 기재

2) MT002(특정기호):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특정기호 구분 코드 “S013” 기재

3) JS005(검체검사 위탁):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의뢰한 경우 수탁기관기호와 검사의뢰일을 기재

● 특정내역기재란

항목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2	특정기호	•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진료내역 명세서는 “S013”을 기재 - 기재형식 : X(4) - (예시)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관련 검사를 시행한 경우 MT002 S013
JS005	검체검사 위탁	• 검체검사를 수탁기관에 의뢰한 경우 ‘수탁기관기호/검사의뢰일(ccyymmdd)’ 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 9(8)/ccyymmdd

■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 **(보완청구)** 참여의원에서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청구한다.

● **(추가청구)** 참여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 보완·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Chapter
08

자주 묻는 질문

Ⅰ. 전산시스템에 대한 내용
Ⅱ. 급여청구 등에 대한 내용
Ⅲ. 검진바우처 이용에 대한 내용
Ⅳ. 기타 사항

Chapter 08

자주 묻는 질문

I 전산시스템에 대한 내용

Q 01 사업 참여 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기관 등록/참여인력 등록/의원 인력 현황에는 의원에서 심평원 등에 신고한 인력 현황이 조회되며, 조회된 인력 중 사업에 참여할 인력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의사는 반드시 심평원 등에 인력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케어 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는 인력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화면에서 의원 인력현황에 추가 가능하나, 심평원 등의 인력 신고 내역과 연계되지 않습니다.

Q 02 저장한 케어플랜을 삭제 가능한가요?

A 저장된 케어플랜의 삭제는 불가능하나, 내용 수정 및 보완은 상시 가능합니다.
※ 진료비 청구는 연 1회 청구 가능합니다.

Q 03 임상검사는 필수 항목인가요?

A 의원에서 실시한 검사가 있는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공단 건강검진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자동 연계 됩니다.

Q 04 계획서 출력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 케어플랜 저장 후 계획서를 출력하지 않아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환자의 지속적인 자가 관리를 위하여 계획서를 환자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계획서는 건강iN 앱(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계획서 출력물보다 간소화된 형태임)

Q 05 케어플랜, 교육 등 실시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 가능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청구지원 화면에서 진료비 청구 가능여부와 서비스 실시일자, 수가 코드 등을 확인하여 의원에서 사용하시는 별도의 청구 프로그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06 **대상자가 모바일(건강iN 앱)을 통해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어떻게 서명하나요?**

A 건강iN 앱 실행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메뉴 접속 → 환자등록번호(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환자 등록하면 자동 생성됨)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 및 비밀번호(숫자 4자리) 설정 → 로그인 →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내용 확인 후 "확인"터치

※ 대상자가 모바일을 통해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서면 신청서는 받지 않음

Q 07 **환자용 참여 신청서는 반드시 모바일 앱으로 받아야 하나요?**

A 모바일(건강iN 앱)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서면으로도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에서 참여 신청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하지 않은 환자는 모바일 서비스(혈압/혈당 기록, 케어플랜 조회 등)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Q 08 **연계기관용 전산시스템을 수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더니 로그인이 되지 않네요?**

A 2개월 이상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휴면계정으로 관리되어 정지 처리됩니다. 해당 연계기관(보건소, 건강동행센터 등)의 관리자 권한이 있는 직원이 휴면을 해지한 이후 다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Q 0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좌측 하단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의원 찾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10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A 사용자(의원용, 연계기관용, 환자용)별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을 담은 교육용 동영상을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급여청구 등에 대한 내용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Q 01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무엇인가요?

A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요양급여 행위로,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가 해당됩니다.

Q 02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나요?

A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시범사업 참여대상 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당일부터 산정지침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03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환자에게도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 환자가 본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우, 산정지침에 따른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 지속적인 관리 의사를 밝힌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하는 제도

Q 04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를 산정하는 환자에게 가-14 만성질환관리료(AH200)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나요?

A 가-14 만성질환관리료 주.항에 따라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14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Q 05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또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기참여 했던 환자도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 후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06 등록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진찰료는 산정할 수 있나요?

A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에 대한 별도의 진찰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가-1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07 포괄평가와 계획수립을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한 경우,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일자를 내원일자로 기재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2019.2.1일에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포괄평가를 시행하고,
2019.2.13일 관리계획 수립 및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 내원일자는 2019.2.13일로 기재하여 수가 산정

Q 08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이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실시된 경우 야간 또는 공휴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A 야간·공휴가산 등 각종 가산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Q 09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위한 검사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있나요?

A 혈액검사 등 검사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10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와 '교육·상담료'를 동일한 날에 산정할 수 있나요?

A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날에 산정 가능하며, 이 후 종합관리계획서에 따라 당일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상담료'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11 점검 및 평가료는 어떤 경우에 산정할 수 있나요?

A 점검 및 평가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환자의 관리계획 이행정도 및 질환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환자에게 제공한 경우 연 2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19.2.1일 포괄평가를 시행하고, 2019.2.13일 관리계획 수립 및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환자

☞ '점검 및 평가료'는 2019.6.13일 이후 환자 질환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하고 기록하여 환자에게 제공한 경우 산정

환자관리료

Q 12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환자관리료'는 문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질환관리 서비스를 월별 2회 이상 실시·기록하는 경우, 분기별로 산정하는 수가입니다.
청구 시 내원일자는 분기별 마지막 달 2회째 실시·기록한 환자관리 일자를 작성합니다.

예시 2019년 2월 3일 케어플랜 수립 후 종합계획서를 제공한 환자의 경우
1분기(3개월) : 2월 3일 ~ 5월 2일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2월 3일 ~ 3월 2일	3월 3일 ~ 4월 2일	4월 3일 ~ 5월 2일
실시 일자	문자	2월 10일 ①	3월 15일 ②	**4월 10일 ②**
	전화	2월 20일 ②	3월 5일 ①	4월 24일 ③
	내소			4월 1일 ①

☞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2019년 4월 10일**로 기재

Q 13 간호사가 환자관리 모니터링을 시행한 경우, '환자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환자관리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관리 모니터링을 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한 질환관리서비스를 월2회 실시·기록한 경우 분기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상담료

Q 14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교육·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교육·상담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담당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환자와 대면하여 개인(1대 1) 또는 10명 이내의 집단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15 환자에게 동일한 날에 초회, 기본, 집중 교육·상담 과정 간 중복하여 실시한 경우, 수가를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A 중복 교육·상담은 가능하나, 초회, 기본, 집중 교육·상담 수가는 중복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시 2019년 2월 3일 케어플랜 수립 후 종합계획서를 제공한 환자의 경우

구분	교육·상담 실시 여부			수가산정	비고
	초회	기본	집중		
2월 10일	o	o		초회	
4월 13일		o		기본 (1회)	
5월 15일		o		기본 (2회)	
6월 10일		o		기본 (3회)	
7월 20일		o	o	기본 (4회)	기본 4회 이상 미충족으로 집중교육 산정불가
8월 20일		o		기본 (5회)	
9월 20일		o		기본 (6회)	
10월 5일		o		기본 (7회)	
10월 20일		o	o	집중	
12월 1일		o		기본 (8회)	

Q 16 교육·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나요?

A 초회, 통합 및 집중 교육·상담료는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습관개선 및 집중 교육·상담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17 환자에게 기본 교육·상담(통합 또는 생활습관개선)을 동일 날 2회 이상 실시한 경우, 수가를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A 동일 날, 의사는 통합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간호사 또는 영양사는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각각 1회 수가산정 가능합니다.

Q 18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 수가는 어떤 경우에 산정할 수 있나요?

A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료는 의원에 소속된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10분 이상 생활습관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19 보건소 영양사 또는 간호사에게 교육·상담을 의뢰하여 생활습관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보건소 등으로 교육·상담을 의뢰하는 경우, 교육·상담 수가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Q 20 집중 교육·상담 수가는 어떤 경우에 산정할 수 있나요?

A 기본 교육·상담을 4회 이상 실시한 만성질환자 중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여 의사, 간호사, 영양사가 30분 이상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연 1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Q 21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A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진찰료, 원외처방전 등 다른 진료비와 반드시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Q 22 분리하여 청구 시 '원청구'인가요, '분리청구'에 해당하나요?

A '원청구'로 구분하여,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청구합니다.
시범사업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12'(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를 기재하여 청구하고, 환자가 특정기호를 2개 이상(V193 등) 가지고 있는 경우 'S012'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Q 2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환자로 확인이 되었으나, 보훈대상자로 지급불능처리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구분자를 삭제하여 보완청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Q 2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만성질환 관리 내용을 입력할 경우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자동으로 청구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은 만성질환관리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며,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료 후 당일 청구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입력내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내역 미연계로 심사불능 또는 심사조정 등이 발생 할 수 있어, 정보시스템 입력 다음날 이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Q 25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해당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환자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이외 진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간호사 인력 신고 관련

Q 26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하여 의원에서 간호사를 고용할 경우, 인력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 관련 간호인력(정규직 또는 계약직) 신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2019년 4월부터 가능합니다.

Ⅲ 검진바우처 이용에 대한 내용

1. 참여 대상 및 시범사업 지역 등

Q 01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면 누구나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1979.12.31.이전 출생자) 고혈압·당뇨병 유질환자로 2017년~2018년도에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료를 받고 1일 이상 관련 치료 약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참여 대상이 됩니다.

Q 02 검진바우처 대상자 발췌는 어떻게 하나요?

A 2019년 1월 사업 시행을 위해 2018. 11. 30.현재 공단 자격을 기준으로 기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1차 발췌하고, 시범사업 지역이 추가 선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추가로 발췌하게 됩니다.

Q 03 검진바우처 대상자로 안내문을 받았으나 시범사업 기간 중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도 참여가 가능하나요?

A 시범사업 기간 중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지역에 소재한 참여 의원에서만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04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던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도 맞춤형 검진바우처 대상이 되나요?

A 기존 시범사업 참여자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시면 검진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Q 05 바우처 대상자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환자 본인이 참여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에 제출하거나, 건강iN(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06 맞춤형 검진바우처 대상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맞춤형 검진바우처 대상으로 확인 된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 후, 본인이 참여를 원할 경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작성한 자에 한함)

Q 07 맞춤형 검진바우처 대상자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요양기관정보마당 / 일차만성질환 / 대상자등록 / 바우처 대상자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08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은 어디인가요?

A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해당 됩니다.

Q 0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바우처 대상자인 당뇨 환자에게 안저검사 안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저검사는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안과의원에서 할 수 있으므로, 공단 건강iN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기관 찾기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iN(http://hi.nhis.or.kr) 좌측하단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참여기관찾기

Q 10 시범사업 지역내 안과의원입니다.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요양기관정보마당 / 일차만성질환 / 기관등록 / 참여기관신청 화면에서 참여신청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검사항목 및 검사비용 청구 등

Q 01 맞춤형 검진바우처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검사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A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는 질환별로 검사항목이 다르게 제공됩니다.
- 고혈압 환자(3종) : 심전도검사, 소디움(Na), 포타슘(K)
- 당뇨병 환자(3종) : 미세알부민뇨, 당화혈색소, 안저검사
- 고혈압·당뇨병 복합 환자(6종) : 각 질환별 검사항목 전체

Q 02 해당 의원에 심전도기기가 없어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다른 의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나요?

A 검진바우처 검사는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의원에서 심전도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 03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는 필요시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는 시범사업 기간 중 1회만 제공됩니다.

Q 04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는 언제 실시할 수 있나요?

A 참여 의원에서 시범사업 대상자 등록 시 검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검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조정 가능합니다.

Q 05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도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의원이 안저검사가 가능한 경우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06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비용은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에 “S013” 기재 후 진찰료 등 다른 진료비와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검사비용 전액(100%)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Q 07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항목에 대한 분류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분류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Q 08 맞춤형 검진바우처 대상자 조회시 바우처 대상자로 확인이 되었으나 급여비용 심사결과 보훈대상자로 지급불능처리 되었는데요?

A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공상 구분자를 삭제하여 보완청구 하시면 됩니다.

Q 09 당뇨병 검사항목인 미세알부민뇨, 당화혈색소, 안저검사는 검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A 검사항목별로 제시된 검사방법 중 해당 의원에서 실시 가능한 검사방법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Q 10 검진바우처 검사는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검체검사 질가산도 적용되나요?

A 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검체검사 질가산 모두 적용됩니다.
(단, 공휴·야간가산 제외)

3. 본인부담

Q 01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은 있나요?

A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10%)은 공단에서 지원하므로 별도 본인부담은 없으며, 검진바우처 검사비용 외 진료(진찰료 등)에 대하여는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Ⅳ 기타 사항

Q 01 초회, 기본 및 집중 교육·상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A 환자 관리를 위하여 초회 및 집중 교육·상담(30분 이상), 기본 교육·상담(10분 이상)이 충분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0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지역은 시범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A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하 고당사업)과 시범사업을 동시에 참여하는 지역의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단, 환자는 두 사업에 중복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고당사업 참여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고당사업에서 불참처리 후 시범사업 참여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고당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의원이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 의원은 고당사업 참여를 중단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신규 환자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참여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 고당사업 참여환자가 고당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고당사업 지침에 따라 고당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고당사업 참여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고당사업 불참 처리를 한 후 시범사업 참여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고당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시범사업을 참여한 경우**

- 환자에게 고당사업 참여여부를 물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환자가 고당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시범사업 참여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환자가 고당사업 참여하는 경우(타의원에서 참여 등), 고당사업에서 불참 처리를 먼저 하고 시범사업에 등록이 가능함을 안내하셔야 합니다.

Q 03 시범사업 선정지역에서 신규의원 추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향후 신규의원 추가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공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할 예정입니다.

Chapter 09

부록

1. 사업 참가 신청서류
2. 사업 관련 서류

Chapter 09

부록

부록 1 사업 참가 신청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

(　　)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　　)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	○○시·도 ○○시·군·구*(예 : 경기도 안양시)*					
지역의사회 현황	주소					
	대표전화		FAX			
총괄 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		M.P.		E-MAIL	
담당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		M.P.		E-MAIL	

참여의원 현황	총 참여의원 수	케어코디 모형	구분			
			내과	가정의학과	기타	소계
	_____개소	케어 코디네이터 직접고용				
		의사 단독 수행				
		계				

본 _____지역의사회는 (　　)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_____의사회　　기관장　　직 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별지2) 시범사업계획서
2. (별지3) 보안서약서(지역의사회)
3. (별지4) 지역연계기관 협약서(보건소 필참)
4. (별지5) 참여의원 현황표

※ 상기내용을 수록한 파일은 신청 홈페이지에 업로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계획서

2019. 00.

○○○ 지역의사회

Ⅰ. 일반현황

1.1. 시범사업의 필요성

※ *만성질환 관련 지역사회 건강현황, 주민 수요 등 다양한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 도출*

1.2. 사업 목표

※ *성과지표는 결과, 산출, 투입 등 지표의 성격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되도록 산출보다는 결과중심으로 제시(예 : 서비스 만족도, 생활습관 개선율, 건강목표 달성률 등)*

성과지표	목표치	정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1.3. 참여의원 현황

(단위 : 개소)

케어코디 모형	구분			소계
	내과	가정의학과	기타	
의원 내 코디 직접고용				
의사 단독 수행				
총 참여의원 수				

※ *케어코디 모형 정의*

- *의원 내 코디 직접 고용 : 의사와 케어 코디네이터가 함께 환자관리·교육 등을 함께 수행*
- *의사 단독 수행 : 의사가 환자관리·교육 등을 단독 수행함*

Ⅱ. 사업 운영 계획

2.1. 지역의사회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총괄	*(예시) ○○지역의사회*	*총무이사*	*김시범*	*010-1111-2222*	*abc@gmail.com*
실무자	*(예시) ○○지역의사회*	*대리*	*박사업*	*010-3333-4444*	*def@hanmail.net*

2.2. 예산, 시설, 장비, 인력 등 활용계획

※ 시범사업에 투입 예정인 지역의사회 예산, 시설, 장비, 인력 등이 있는 경우 작성

2.3. 참여의원 관리 및 지원계획

□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활성화 노력

○ (예시) 지역 간호사회 등과 협력방안 등

□ 교육·세미나

○ 횟수 : (예시) 분기별 1회, 외부강사 초청 세미나

○ 주요 내용

- (예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향후 추진일정 소개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 안내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지역 내 계획 소개, 지역 내 연계기관 소개 및 활용 방법 안내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 및 상담 기술 등

□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 책임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간사	*(예시) ○○내과의원*	*원장*	*김시범*	*010-1111-2222*	*abc@gmail.com*
실무자	*(예시) ○○시 의사회*	*직원*	*박사업*	*010-3333-4444*	*def@hanmail.net*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시 의사회*	*회장*	*김일차*	*공동위원장, ○○내과의원*
2	*○○시 보건소*	*소장*	*박의료*	*공동위원장*
3				
4				
5				
6				

○ 운영 계획

- 발대식 일자(최초 회의 예정일) :
- 개최 주기 : *(예시) 월 1회, 분기별 1회 등*
- 기능 및 역할 : *(예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시범사업 운영 관련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예시) 지역사회 연계기관 자원 파악 및 협업 사항, 당뇨병·고혈압 관리 현황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등*

2.4.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획

※ 지역사회 연계 기관별로 연계목적, 협력내용, 업무담당자, 교육상담 인력지원 현황 반드시 작성

□ 업무협약 체결일자

○ 체결 주체 : *(예시) 지역의사회장 ○○○, 보건소장○○○ 등*

□ 보건소

○ 협력내용: *(예시) 지역 보건사업과 연계방안 등*

○ 업무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총괄	*(예시) ○○시 보건소*	*행정6급*	*안일차*	*010-1111-2222*	*abc@gmail.com*
실무자	*(예시) ○○시 보건소*	*보건7급*	*이의료*	*010-3333-4444*	*def@hanmail.net*

○ 교육상담 인력 지원 현황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자격	비고
1	*(예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보건6급*	*김간호*	*간호사*	*교육총괄*
2	*(예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보건7급*	*박영양*	*영양사*	*영양교육*
3	*(예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보건7급*	*강운동*	*운동처방사*	*운동교육*
4	*(예시) 보건지소*	*보건6급*	*이간호*	*간호사*	*교육총괄*
5	*(예시) 보건지소*	*계약직*	*권영양*	*영양사*	*영양교육*

□ 국민건강보험공단

○ (협력내용)

○ 업무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총괄	*(예시) ○○지사*	*지사장*	*김일차*	*010-1111-2222*	*abc@gmail.com*
실무자	*(예시) ○○지사*	*부장*	*이의료*	*010-3333-4444*	*def@hanmail.net*

○ 교육상담 인력 지원 현황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자격	비고
1	*(예시) ○○ 일차의료지원센터*	*과장*	*김간호*	*간호사*	*교육총괄*
2	*(예시) ○○ 건강지원센터*	*해당없음*	*박영양*	*영양사*	*영양교육*
3	*(예시) ○○ 건강지원센터*	*해당없음*	*강운동*	*운동처방사*	*운동교육*
4					
5					

□ 민간체육시설(해당 시 작성)

□ 기타(해당 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자료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목적에서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자료는 사업 중에는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기관 : *○○지역의사회*

직 위 : *○○지역의사회장*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업무협약서(예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업무협약서

• 협약당사자

(가) : ○○시(군·구) 지역의사회장

(나) : ○○시(군·구) ○○○ 기관장

(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시(군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일차의료 중심의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에 있어 "가"와 "나 및 "다"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제3조(협력사항) "가"와 "나 및 "다"는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 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들을 협의한다.

① "가"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 사업 계획수립 및 연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성실히 운영한다.

② "가"는 사업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등을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정기적 회의체계를 마련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참여기관과 공유한다.

③ "나"는 관할 시군구 주민 대상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지원한다.

④ "나"는 관할 시군구 기타 자원을 파악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안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한다.

⑤ "다"는 지역 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서의 해당 역할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참여의원 및 기관을 최대한

지원한다.

⑥ “다”는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 및 일차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

제4조(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가”와 “나” 및 “다”는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가”와 “나” 및 “다”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업수행 중 타 기관과 협의사항 발생 시 다자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중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서류를 작성하여 다자간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가”와 “나” 및 “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 “가”와 “나” 및 “다”는 정기적으로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관련 사항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금지) “나”와 “다”는 “가”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사업을 타인에게 재책임하는 행위

② 사업이행 중 또는 이행 후에 사업 내용 및 결과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③ 본 사업의 결과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9조(개인정보보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양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협약이행·교류·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한 정보를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 참여 대상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협약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또는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하며, 해지에 따른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가"와 "나" 및 "다"가 협의하여 시행하고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따른다.

제12조(협약서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협약서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가"와 "나" 및 "다"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가) ○○시(군·구) 지역의사회장 (직인)
(나) ○○시(군·구) ○○○장 (직인)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지사장 (직인)

※ 본 업무협약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의사회와 협력 기관 간 업무협약서의 예시(안)으로 지역 여건과 협력 대상 기관에 맞게 상호 협의 하에 모두 변경 가능함. 제3조 또한 협력기관에 따라 다음과 유사한 형태로 변경 가능함

1) 보건소의 경우
③ "가"와 "나"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나"는 지역 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나"에서 진료받는 경우, 본 사업 참여 의사 여부를 타진하고 가까운 동네 의원에 의뢰하는 등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③ "가"와 "나"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나"는 "나"에서 수행 중인 건강관리 및 요양기관 관리 사업의 수행에도 항시 상호 협의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3) 민간기관의 경우
③ "가"와 "나"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나"는 본 사업 참여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의뢰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에 응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의원 현황표

○○○ 지역의사회 참여의원 현황표

구분	의원 기본정보							사업 참여현황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계획 여부
	의원명	요양기관 기호	주소지 (도로명 주소 기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표시과목	케어코디 모형 (1. 코디 직접고용, 2. 의사 단독수행)	바우처 사업 참여여부	
(예시)	000의원	00000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02-0000-0000	000	010-123-4567	내과	1(숫자로만 기입)	여	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6호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접수를 위한 아이디 등 발급 신청서

- 지역의사회 ID/PW 신청·발급 -

○ **발급 신청목적 :** 시범사업 참여접수 시스템(https://withdr1.nhis.or.kr/login.do) 활용

○ **발급대상 :** 시·군·구 지역의사회

* 지역의사회 ID/PW는 1지역 1개 ID만을 발급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접수시스템 ID/PW 신청서〉

지역의사회명			
시도명/시군구명		신청자 성명	
지역의사회 직책		휴대전화번호	
FAX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신청·접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목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신청·접수를 위한 ID/PW 발급
· 수집정보 : 신청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책, 이메일 주소
· 보유기간 : 사업기간 동안
· 제3자 제공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 **접수시스템의 아이디/비밀번호 발급을 원할 경우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함에 반드시 체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해서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접수시스템의 아이디/비밀번호 발급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 동의함 ☐ 동의 안함	**☐ 동의함 ☐ 동의 안함**

본인은 위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접수시스템 활용을 위한 ID/PW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의원용)_온라인 작성용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의원용)

기 관 명		요 양 기 관 기 호	
요 양 기 관 종 별		표 시 과 목	
주 소(소재지)			
요양기관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휴 대 전 화 번 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이상 개인정보)와 기관명, 요양기호 등**을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정보들은 사업수행, 비용 지급**(제3자 제공)** 등을 위하여 사업 기간동안 보유 및 이용되며, 사업 참여자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해서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원할 경우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함에 반드시 체크☑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 동의함 ☐ 동의 안함	**☐ 동의함 ☐ 동의 안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파일(DB)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여부에 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 단, 안저검사만 실시하는 안과의원은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만 해당)

신 청 일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범사업 의료기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안내》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목적

항목	세부내용	목적
본인확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참여 관리를 위한 본인 식별
의료기관 확인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참여 관리를 위한 기관 식별, 사업참여 의료기관 대상자 확인

※ 상기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사업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철회 가능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일차의료만성질환 관리추진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본부 등), 지역의사회, 보건소, 건강동행센터	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성명, 전화번호, 주소(이상 개인정보)와 기관명, 요양기호 등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기간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 바우처 시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자료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목적에서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자료는 사업 중에는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기관 : *○○의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환자용)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환자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자우편주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 -

* 필수 입력사항

※ 아래 시범사업 서비스를 위해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시범사업 서비스 내역

케어플랜 수립	포괄평가(임상검사, 문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검진바우처 검사	질환별 검사 - 고혈압 : 심전도검사, 전해질 검사 2종(소디움, 포타슘) - 당뇨병 : 미세알부민뇨, 당화혈색소, 안저검사
환자관리	질병 및 생활습관 교육
	혈압·혈당 수치 모니터링 등
	맞춤형 건강 상담
점검 및 평가	건강 관리목표 달성여부 등 포괄 평가 및 케어플랜 재수립
안내 서비스	전화 및 SMS서비스 ※ 의료기관 진료예약 일정, 연계기관 의뢰 시 방문 일정 등의 안내를 위한 문자서비스입니다.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검진바우처 검사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만 해당 됩니다.

위와 같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관리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및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의료기관
- 사업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 (필수항목)	개인정보	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외국인 여부, 의원 챠트번호, 등록번호)
	민감정보	**건강정보(의료기관명, 질병명, 질병코드, 검사결과, 합병증, 의료기관 내원일, 급여종류 및 횟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상기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 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본인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호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본인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호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본인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호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총괄 및 운영, 사업 관리 및 평가,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의뢰 의료기관명, 질병명, 검사결과, 의료기관 내원일	5년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소, 건강동행센터	사업 운영 및 평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의뢰 의료기관명, 질병명, 검사결과, 의료기관 내원일	5년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외국인여부, 의료기관명, 질병명, 질병코드, 의료기관 내원일, 급여종류 및 횟수	5년간

※ 귀하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호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포함)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라.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법정 대리인	성명	(인)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 본인은 환자(성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타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동의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철회하실 때에는 참여의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 철회 가능합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여부에 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 의 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고혈압, 당뇨병 환자 문진표(예시)

고혈압, 당뇨병 문진표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관련 문항

1.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중인 경우 아래 상세 병력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고혈압	당뇨병
유병기간	_____ 년	_____ 년
약물 치료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약물 부작용 여부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혈압/혈당 조절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2.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이십니까?

항목	내용
뇌질환	☐ 뇌졸중 ☐ 일과성 허혈 발작 ☐ 혈관성 치매
심장질환	☐ 심근경색 ☐ 협심증 ☐ 심부전
혈관질환	☐ 대동맥질환(대동맥 박리, 협착, 확장) ☐ 말초혈관질환
신장질환	☐ 만성콩팥병(3기 이상) ☐ 신대체요법
대사질환	☐ 이상지질혈증
안과질환	☐ (고혈압성/당뇨병성) 망막증 ☐ 실명
신경질환	☐ 말초신경병증(자율신경병증)
족부병변	☐ 하지절단 ☐ 당뇨병성 족부병변
기타	☐ 기관지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 류마티스 질환 ☐ 암

3.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 고혈압 ☐ 당뇨병

☐ 뇌질환 :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혈관성 치매 (남자 55세 미만, 여자 65세 미만인 경우)

☐ 심장질환 :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남자 55세 미만, 여자 65세 미만인 경우)

4. 최근 2주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면 V표 해주세요.

생활에서 즐거움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가?	기분이 우울한가?

※ 약물복용력

5. 아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체크해주세요

☐ 스테로이드성 약제 ☐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 면역억제제 ☐ 항응고제
☐ 항혈소판제제 ☐ 항우울제 ☐ 항히스타민제 ☐ 피임약 ☐ 여성호르몬
☐ 부신스테로이드호르몬 ☐ 한약제 (감초, 마황)

※ 흡연 관련 문항

6-1. 지금까지 평생 총 5갑(100개비)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7번 문항) ② 예, 지금은 끊었음 (☞ 6-2번 문항) ③ 예, 현재도 흡연 중 (☞ 6-3번 문항)

6-2. 과거에 흡연을 하다가 현재는 끊으셨다면 언제 끊으셨습니까? _____ 년 전 (또는 _____ 년도)

6-3. 과거에 흡연을 하신, 또는 현재에 흡연을 하시는 하루 평균 흡연량과 총 흡연 기간을 기록해주세요

- 하루 평균 흡연량 (갑) - 담배 피우신 총 기간 (총 년)

※ 음주 관련 문항

7-1.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 0 □ 1 □ 2 □ 3 □ 4 □ 5 □ 6 □ 7)

7-2. 술을 마실 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잔)

(※ 술 종류에 관계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식이/영양 관련 문항 (고혈압, 당뇨병 환자 공통)

8-1.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아침식사를 거르십니까? □ 예 □ 아니오

8-2.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식사량이 많은 편이십니까? □ 예 □ 아니오

8-3. 튀김 음식을 주 2회 이상 드시는 편입니까? □ 예 □ 아니오

8-4. 국이나 찌개 섭취 시 국물을 위주로 섭취하십니까? □ 예 □ 아니오

8-5. 음식에 소금을 첨가하여 드시거나 젓갈류를 주 1회 이상 드시는 편입니까? □ 예 □ 아니오

※ 식이/영양 관련 문항 (당뇨병 환자에 해당)

8-6. 설탕 등 단순당 섭취가 많으신 편입니까? □ 예 □ 아니오

8-7. 밥 위주의 식사를 하시거나 또는 감자, 고구마, 면류 등을 주 2회 이상 드십니까? □ 예 □ 아니오

8-8. 육류, 생선류 등 단백질 섭취량이 전체 섭취량의 15% 미만 또는 주4회 미만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체활동(운동) 관련 문항

9-1. 운동여부 : □ 운동하지 않음(☞ 10번 문항) □ 불규칙한 운동 □ 규칙적 운동(주2회 이상)

9-2. 운동종류 : □ 걷기 □ 유산소 운동(조깅, 수영, 빠르게 걷기 등) □ 근력 운동(덤벨 등)

9-3. 운동시간 : □ 150분/주 이하 □ 150분/주 이상 □ 180분/주 이상

※ 수면 관련 문항

10.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V표 해주세요. (□ 수면무호흡증 진단 □ 코골이 □ 주중 졸림 현상)

※ 신체계측

11. 키 _____ cm 12. 몸무게 _____ kg 13. 허리둘레 _____ cm

※ 혈압 및 맥박 측정

구분	왼팔			오른팔		
	수축기	이완기	맥박	수축기	이완기	맥박
1차	mmHg	mmHg	회/분	mmHg	mmHg	회/분
2차	mmHg	mmHg	회/분	mmHg	mmHg	회/분
3차	mmHg	mmHg	회/분	mmHg	mmHg	회/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

주 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

※ 본 안내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